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

정경란 지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

정경란 지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책을 내면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2007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정신의 구현으로서 여성 6자회담을 제안한 이후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4차례 개최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알려 왔다. 2012년 2월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후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다.

평화여성회는 국가행동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1325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현재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소개하고 국가행동계획의 의미와 해외사례를 연구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동안 평화여성회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어온 저자의 연구 자료를 엮어서 연구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이 연구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바라는 회원들의 모금과 사무처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발간하게 되어 그 분들의 평화를 향한 소중한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 11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서문

오직 여성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지속가능한 평화, 발전, 좋은 협치, 인권과 정의를 위한
토대를 쌓을 수 있다.

- 코피 아난 -

한국은 분단국으로서 평화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상태이다. 지난 세월 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에 화해 협력을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 왕래는 물론 팩스조차 자유롭게 보낼 수 없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분쟁 잠재력을 높이고 이 지역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와 같이 분단되고 군사화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한국 여성들은 피식민지 경험, 전쟁, 분단,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고 큰 희생을 겪어 왔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탈북여성의 탈북과정에서의 성매매,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등 수많은 여성인권의 침해를 경험해 왔다.

2013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0.635점을 얻어 전체 136개국에서 111위를 기록하였다. 경제참여

와 기회, 건강과 생존, 교육적 성취,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의 64%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큰 사회이다.

평화, 통일, 국방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영역에서 고위 정책결정자 중에 여성비율이 낮고, 성인지 예산은 적으며,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분쟁과 군사화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여성 및 젠더 문제 (gender issue)를 다루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결의이다.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이하 1325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분쟁 예방·관리·해결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분쟁 및 성폭력의 예방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후속 결의문을 발표해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면 방지 및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뿐 만이 아니라 지역기구, 회원국가, 지방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평화과정에서 1325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1325호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국내적으로 분단국으로서 분쟁 해결 및 평화정착을 추진하면서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유엔 평화유지군 과병국, 공적개발원조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국가로서

해외파병지역과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 2월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한국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소과제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다.

그 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성주류화정책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가 젠더와 사회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행동계획이 1325호의 이행을 보장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함께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이행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분쟁의 희생자를 넘어 분쟁해결의 주체로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1325호의 이행이 가능하다. 여성이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행동계획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부의 계획을 만들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참여만이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성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양식, 과정 및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평화 및 개발협력을 이끌어갈 이해당사자인 정부, 의회, 시민사회단체의 유엔 안

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1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를 살펴보고 유엔·회원국가·시민사회 차원에서 1325호 이행을 검토하였다. 유엔 안보리에서 1325호가 채택된 것은 유엔에서 '인간안보'로의 안보 개념의 확장과 함께 분쟁의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분쟁해결의 주체로서 여성을 인정한 것이다.

제2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을 검토하였다. 1325호와 후속 결의문에 나타난 행위자, 유엔 내 포컬 포인트,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 책임 메커니즘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제에 따라 결의문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역할, 개발 방법, 그리고 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각국의 국가행동계획은 국가적 맥락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국내 평화과정, 국제적인 평화유지와 개발협력 등 그 초점 영역이 다르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방식도 다양했다. 이 장은 유엔의 제안과 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제4장은 한국 사회의 1325호 이행 현황을 검토하였다. 유엔의 지표를 기초로 하여 해외평화유지활동, 통일·외교·국방 영역에서 정책 형성, 여성정책기본계획, 성인지 예산, 남북교류협력 등에서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의회의 1325호 활동을 정리하였다.

제5장은 한국에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원칙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젠더와 사회경제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맥락에 맞는 국가행동계획의 목표와 과제, 지표, 책임주체, 시간표, 이행구조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6장은 1325호 이행을 위한 여성 참여 방안을 제안하였다.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 참여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의미와 여성단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여성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2013년 10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 해결과 평화 노력에서 여성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의 2122호를 채택하였다. 같은 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분쟁 예방, 분쟁,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일반 권고문 30호'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여성평화 리더십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유엔 자료,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국가의 경험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국내에서 1325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1325호에 대한 초기연구로서 의미와 함께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 책이 평화와 안보, 통일, 국제협력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을 향한 활동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3년 11월

정정란

차례

책을 내면서

서문

1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구성과 이행 현황	15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채택 배경	15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구성과 의미	20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 현황	26
2장.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검토	45
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구조	45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주제별 검토	53
3장.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의미와 사례	65
1. 국가행동계획이란?	65
2. 국가행동계획 개발 방법	69
3. 해외 사례	86

4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현황	105
1. 정부의 이행 현황	105
2. 국회의 1325호 활동	130
5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제안	133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한국적 상황	133
2.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원칙과 권고사항	137
6장.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여성 참여	149
1.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접근법	149
2. 1325호 국가행동계획과 여성참여의 의미	152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의 역사	154
4. 1325호 이행과 여성의 활동 방안	163
7장. 맺으며	169
참고문헌	172
부록	180
1. 용어 정의	180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모음	183
3.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활동	247
4. 〈1325호 네트워크〉 활동	251

표·그림 목차

〈표 1-1〉 지표 - 예방 : 효과와 성과	30
〈표 1-2〉 지표- 참여 : 효과와 성과	31
〈표 1-3〉 지표- 보호 : 효과와 성과	33
〈표 1-4〉 지표 - 구호와 회복 : 효과와 성과	34
〈표 1-5〉 SMART' 결과와 지표 만들기	36
〈표 2-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46
〈표 2-2〉 평화형성과 분쟁 예방에서 여성 리더십	47
〈표 2-3〉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49
〈표 2-4〉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평화유지 관련 조항	54
〈표 2-5〉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분쟁예방 관련 조항	55
〈표 2-6〉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보호 관련 조항	57
〈표 2-7〉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참여 관련 조항	57
〈표 2-8〉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평화과정 관련 조항	58
〈표 2-9〉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성폭력 관련 조항	60
〈표 2-10〉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관련 조항	61
〈표 2-11〉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재건과 평화구축 관련 조항	62
〈표 2-12〉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인도적 지원과 강제이주 관련 조항	63
〈표 2-13〉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군축, 동원해제, 재통합 관련 조항	64
〈표 3-1〉 1325호 이행 국가행동계획 개발 모형	70
〈표 3-2〉 1차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2008-2011)의 목차	88

〈표 3-3〉 2차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2008-2011)의 목차	90
〈표 3-4〉 필리핀 국가행동계획의 목차	93
〈표 3-5〉 네팔 국가행동계획 작성 과정	97
〈표 3-6〉 네팔 국가행동계획의 목차	98
〈표 3-7〉 네팔 국가행동계획 - 참여	99
〈표 3-8〉 미국 국가행동계획의 목차	102
〈표 4-1〉 한국의 성격차의 변화 (2006년-2012년)	106
〈표 4-2〉 한국의 분야별 성별 격차 (2012년)	106
〈표 4-3〉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110
〈표 4-4〉 남북회담에서 여성 참여	114
〈표 4-5〉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공무원 비율	115
〈표 4-6〉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16
〈표 4-7〉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평화, 통일, 외교 분야	118
〈표 4-8〉 성인지 예산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비중	121
〈표 4-9〉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총지출액 중 성인지 예산의 비율	122
〈표 4-10〉 통일부와 여성부가 지원한 남북여성공동행사(2002-2013.10)	124
〈표 4-1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127
〈표 6-1〉 1325호와 연관된 주제	164
〈그림 1-1〉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주요 영역	23
〈그림 1-2〉 국가행동계획에서 1325호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의 사용정도	35
〈그림 3-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채택 시기와 지역(2005-2012)	66
〈그림 3-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주무 부처)	77
〈그림 3-3〉 국가행동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이슈	80
〈그림 3-4〉 결과 체인	81

1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구성과 이행 현황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채택 배경¹⁾

1325호는 주요한 국제 조약과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지원활동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여성차별철폐조약(1979), '국제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 참여에 대한 유엔 총회 선언'(1982), 윈드훅 선언(Windhoek Declaration) (2000),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1995)은 1325호에 영향을 미친 국제 조약 또는 선언이다.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은 12개 전략목표의 하나로서 '여성과 무력분쟁'을 규정하였다. 베이징 행동강령에서는 '시민 희생자, 주로 여성과 아이들의 희생은 종종 병사들보다 더 많은 희생'을 보여주고 '갈등 당사자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때때로 전쟁과 테러리즘의 전술로서 체계적인 강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더 나아가 '여성의 권력구조의 동등한 접근 및 완전한

1) 정경란,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 평화를 묻는다』, 백산서당, 2010와 Natalie Florea Hudson, *Gender, Human Security and the United Nations : Security Language as a Political Framework for Women*, Routledge, 2010.

참여와 평화 및 갈등의 금지와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개입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중심영역 E : 여성과 무력분쟁)이라고 강조하였다.

1998년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여성과 무력분쟁의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논의하였다. 1998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여러 분쟁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참가하였고, NGO 네트워크가 비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이 회의 기간에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보리 결의문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 회의 이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NGO 워킹그룹'이 공식적으로 형성되고 두 가지를 합의하였다. 첫째, 평화협정에서 여성 참여를 촉진하고, 둘째,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여성과 전쟁캠페인',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의 '여성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지구적 캠페인', 유네스코의 '여성과 평화의 문화 프로그램', 인터내셔널 어럿(International Alert)의 '총rak에서부터 협상테이블까지 : 여성과 평화형성' 캠페인과 '평화적 갈등해결에서 여성의 참여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결의'(2000) 채택 등이 있었다.

인터내셔널 어럿을 포함해서 세계 80여 개 비정부기구가 추진한 '총rak에서부터 협상테이블까지 : 여성과 평화형성(From the Village to the Peace Table: Women and Peace Making)' 캠페인은 여성들의 요구를 잘 보여 주었다.²⁾ 이 캠페인에서는 ①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이 이 과정에 더욱 참여할 수 있도록 추구하고,

2) 한국에서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2000년 '총rak에서부터 협상테이블까지 : 여성과 평화형성'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② 분쟁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③ 난민, 여성과 소녀를 특별히 배려해야 하며, ④ 화해와 평화수립과정에서 젠더 정의(gender justice)를 수립하여야 하며, ⑤ 여성의 지도력을 강화하며, ⑥ 각국 정부가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정책을 집행하기를 촉구하였다.⁴⁾

여성·평화·안보 NGO네트워크 소속인 인터내셔널 어럿은 이 캠페인을 알리는 국제회의를 조직하여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을 지역에서 여성평화구축 활동을 지지하는 통합적인 파트너로서 참여시켰다. 이후 유엔여성개발기금은 여성·평화·안보 NGO네트워크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여성·평화·안보 NGO워킹그룹이 안보리 결의문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유엔여성개발기금이 안보리 구성원에게 그 이슈를 제기하고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중요한 접근포인트였다.

유엔 기구와 NGO가 여성·평화·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무력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이 남녀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시에라리온, 콩고, 보스니아 전쟁 등에서 수많은 여성과 소녀가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성폭력을 당하였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 분쟁 11년 동안 25만 명의 여성과 소녀가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쟁의 도구로서 '성폭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분쟁으로 여성은 생계 부양자로 가족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상당수의 여성과 아동들은 거주지를 떠나 국내외 난민이 되었다. 또한 무력분쟁 중에 전투원이 된 여성들은 분쟁이 끝난 후 낙인이 찍혀 공동체에 편입할 수 없어서 경제적, 사회

3) 정경란,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활동", 『국제리뷰』, 한국여성개발원, 2006.9.27, 1-2쪽.

적,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또 다른 고통을 겪는다.⁴⁾ 이러한 여성들의 경험과 고통을 목격한 여성단체와 여성 활동가들은 무력분쟁과 여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방글라데시 대사인 안워룰 초두리(Anwarul Chowdhury) 안보리 의장이 한 연설은 주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평화는 남녀평등과 본래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권력구조에 동등한 접근과 여성의 완전한 참여 그리고 분쟁에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 여성의 완전한 개입이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촉진을 위해 필수적이다.”(SC/6816 2000)

이 연설은 여성·평화·안보 NGO네트워크가 효율적인 초국적네트워크로 확대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후 안보리 의장을 맡은 나미비아 대표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공개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자 NGO 워킹그룹은 결의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유엔여성개발기금과 NGO워킹그룹은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 온 여성들이 안보리 관계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리아 포물라 회의(Arria Formula meeting)⁵⁾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유엔 안보리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4) 무력분쟁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경란, “아시아에서 평화 만들기 : 여성의 참여와 관점”, 『아시아저널』, 2013 여름 제7호, 234-238쪽 참조할 것.

5) 아리아 포물라 회의는 유엔 안보리 회원국, 시민사회, 유엔 기구 등이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하여 상호 교류하는 비공식모임이다.

Women, Peace, and Security)’를 2000년 10월 31일에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념비적인 결의문이다.

이 결의문은 유엔에서 안보 개념의 확장을 반영하고 있다. 냉전 이후 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특히 ‘인간안보’ 개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구화가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지방세력과 전지구적인 세력 사이에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안보의 주체는 국가만이 아니라 다른 주체도 가능하며 다루는 의제도 군사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무력분쟁이 국가들 사이의 전쟁보다는 국가 내부 폭력의 양상으로 진행되고,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유린이 발생하면서 안보의 대상은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인간안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인간안보 개념은 사람을 우선 생각하고 사람들의 안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인간안보 개념에서는 관심대상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며,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보다는 개인에 대한 정치·경제·환경적 위협과 개인의 성별에 따른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간안보 논의가 국가안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안보는 4가지 측면에서 국가안보를 보완하고 있다.

- 인간안보의 관심사는 국가보다는 개인과 지역사회이다.
- 민중의 안보(people's security)에 대한 위협은 과거에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조건을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포함한다.
- 행위자의 범위는 국가를 넘어 확대된다.

- 인간안보의 성취는 민중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는 여성과 성평등이 안보 담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국제사회가 안보문제에의 접근방식을 변화시키는 행동틀(a framework for action)을 제공해 주었다.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의 결과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분쟁과 민간인의 보호, 무력분쟁과 어린이를 의제로 다루었다. 이 의제를 이후 젠더문제도 논의하기 시작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쟁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였다. 마침내 인간안보에 대한 논의의 결과 유엔이 안보 대상으로서 '여성'을 인정한 것이다.⁶⁾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구성과 의미

1) 1325호의 구성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서문과 18개 운영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325호와 연관된 유엔 결의문을 언급한다. 그리고 1325호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18개 운영문단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사무총장, 유엔 회원국가, 군사관련자들, 인도주의 기구들, 시민사회, 여성 등 관련 행위자들이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6) Natalie Florea Hudson, *Gender, Human Security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Language as a Political Framework for Women*, Routledge, 2010. 정경란, "아시아에서 평화 만들기: 여성의 참여와 관점", 『아시아저널』, 2013 여름 제7호, 239-240쪽에서 재인용.

7) 일반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서문(Preamble)과 운영문단(Operational Paragraph)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문단 1-4. 평화과정의 모든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다루고 있다.

운영문단 6-7. 평화유지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인과 민간인에게 성인지적 교육, HIV/AIDS 관련 교육을 하며 이에 대한 재정과 프로그램 등을 다룬다.

운영문단 8-12. 여성 인권의 보호와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치유 받을 권리를 표현한다.

운영문단 13.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고 있다.

운영문단 14. 인도주의적 요구를 다룬다.

운영문단 15.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임무에서 지역 여성단체와 협의를 통해 젠더와 여성의 권리를 고려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운영문단 16-17. 유엔 보고에 성주류화를 포함하고 있다.⁸⁾

2) 1325호의 5가지 영역

1325호는 5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갈등 지역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수준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것은 갈등 예방, 관리, 해결 관련 국가적·지역적·국제적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더 많은 여성들이 평화유지활동의 특별 대표,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 군대 참관자, 민간 경찰, 인도적 지원 인력으로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평화형성과정과 평화협

8)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실천 방안”, 신낙균 의원실 주최,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1년7월8일, 5쪽.

정 이행에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선례가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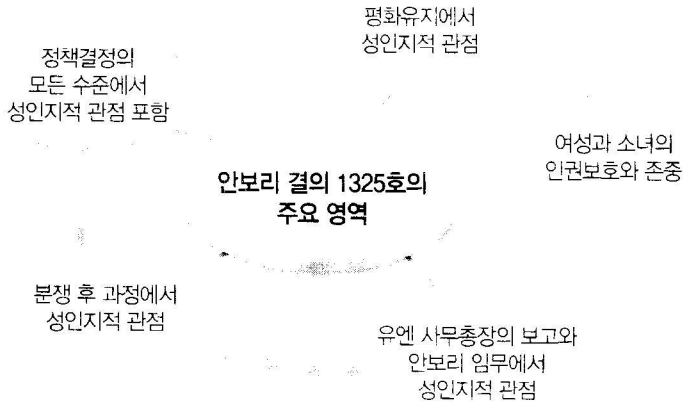
둘째,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존중과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과 소녀에게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존중하며,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과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할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분쟁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non-state actors)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모두가 여성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평화유지 활동과 성인지적 관점을 담고 있다. 평화유지 활동에 고위급 젠더 자문관(senior level gender adviser) 배치와 젠더 부서(gender unit)를 설치해야 하며 평화유지군 배치 전에 성인지적 훈련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지원 작전에 참가한 평화유지군과 민간요원들에게 성인지적 훈련을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분쟁 이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군축, 동원 해제 및 재통합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남성과 여성 퇴역전투원의 다른 요구를 고려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다섯째, 유엔 사무총장 보고와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무력분쟁이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영향, 평화형성에서 여성의 역할, 젠더 차원에서 평화과정과 분쟁해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평화유지활동에서 성주류화의 진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과 여성권리를 고려하여 활동하고, 임무 수행 과정에서 여성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⁹⁾

9) 정경란,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활동,” 2-3쪽.



〈그림 1-1〉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주요 영역

3) 1325호의 의미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 분야에서 전대미문의 유엔 안보리 결의문으로 평가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최초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으로서 여성과 성인지적 관점을 평화과정의 모든 측면에 연결시키는 정치적 틀이다.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을 분쟁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자로서 인식해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 및 평화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둘째, 1325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각각의

모든 활동이 성평등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유엔 헌장 25조에 따라 유엔 구성원이 이 결의를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

셋째, 1325호 채택은 유엔이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평화·안보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구한 여성들의 20년 이상의 요구와 투쟁과 활동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로서 여성운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¹⁰⁾

4) 1325호의 한계

1325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인 문제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1325호는 안보리 결의로서 회원국가가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다른 안보리 결의와 달리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다.

둘째, 국제적 수준에서 1325호는 폭넓게 수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유엔 회원국 차원에서 1325호 이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점차적으로 젠더 이슈가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이슈로 평가받으면서 회원국가들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까지 회원 국가차원에서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한 국가는 43개국이다.

셋째, 여성단체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1325호 채택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성단체들이 각

10) International Aler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Power Point 자료 참조.

국 정부가 1325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많다.¹¹⁾

5) 1325호의 4가지 핵심 범주

1325호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 범주(pillar)는 참여, 보호, 예방,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이다. 첫째, 참여(Participation)이다.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제도에서, 분쟁의 예방·관리·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에서, 평화협정, 평화활동,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시민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대표로서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보호(Protection)이다. 긴급 상황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평화유지인력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통해서 성폭력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한다.

셋째, 예방(Prevention)이다. 여성의 권리 보호, 책임성, 법집행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한다. 이것은 국제법의 위반에 대해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며, 난민캠프에서 여성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사면협정에서 성폭력범죄를 배제하며, 국내법에서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며, 지역에 서 여성들의 평화활동과 갈등해결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성인지관점의 주류화이다. 평화활동에서 성인지관점을 주류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유엔 평화활동에 젠더 자문관을 지명하고 모든 분야의 정책개발과 기획에서 여성과 소녀의 특정한 요구를 고려하고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서 여성의 조직적 관점과 기여를 통합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다.

11) 정경란,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 평화를 묻는다』, 백산서당, 2010, 97쪽.

이 4가지 핵심 범주는 1325호를 관통하고 있으며, 1325호 이행을 평가하는 지표는 참여, 보호, 예방과 '구호와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이행 현황

1) 유엔

(1) 행동계획 작성 및 보고¹²⁾

200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차원에서 1325호 이행에 헌신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1325호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다.¹³⁾ 이 요청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은 1325호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보고하기로 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05년-2007년 유엔행동계획¹⁴⁾과 2007년-2009년 유엔행동계획¹⁵⁾을 작성해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¹⁶⁾하였다. 유엔행동계획은 1325호 이행을 위해 총체적이고 일관된 유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행동계획을 통해 유엔 조직 내부에서 역할을 조정하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했다. 이 행동계획 속에 12개의 활동영역¹⁷⁾을 정해 관련되어

12)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실천방안", 신낙균 의원실 주최, 《평화·안보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토론회 자료집》, 2011.7.8. 7-8쪽 수정 보완.

13) S/PRST/2004/40.

14) S/2005/636.

15) S/2007/567.

16) 2005년-2007년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을 검토하는 회의는 2006년에 열렸다. S/2006/770 참조.

17) 분쟁예방과 조기경보, 평화 형성(peacemaking)과 평화구축(peacebuilding), 평화유지 활동, 인도주의적인 대응, 분쟁 후 재건과 재할, 성균형(gender balance)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있는 유엔 조직이 해야 할 전략과 행동을 규정하고 주요 목표와 시간표를 정하였다. 유엔 산하 조직들은 이 행동계획에 따라 1325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0년 9월 유엔 사무총장은 2008-2009년 유엔 행동계획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행동계획이 1325호 관련 작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구가 아니라 유엔 산하 조직 개별 단위가 수행한 1325호 활동을 모아놓은 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엔 행동계획의 기획, 방향, 목적,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 및 지역 조직과 계획 작성 및 협의를 하고, 향후 10년 동안 수행할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규범적인 측면과 활동적인 측면을 고려해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며, 이행을 평가할 지표와 연계하여 행동계획을 작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유엔 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표와 대상을 가진 프레임워크 작성을 요청하였다¹⁸⁾

2010년 1325호 채택 10주년을 맞아 1325호와 1325호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점이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1325호는 전쟁이 남녀에게 아주 다른 효과를 미친다는 점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여성이 분쟁 이후 지역사회와 국가의 재건에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결의문의 중요 요구는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이슈관련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의 보호, 유엔과 회원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평화형성, 평화구축과 평화협정 이행전략과 행동에 성인지적 관점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유엔은 2010년 6월부터 8월까지 분쟁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 공개의 날(Open Days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정해서 여성평

18) S/2010/498.

화단체 지도자, 지역사회 여성 지도자와 관련 국가담당 유엔의 고위관료들 사이에 직접대화를 추진하였다. 1325호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여성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행사였다. 2010년 10월 21일 여성·평화·안보 글로벌 공개의 날에 27개 지역에서 열린 공개의 날 행사를 소개하고 유엔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한 보고서(Women Count for Peace: The 2010 Open Days on Women, Peace and Security)와 세계 각지에서 서명한 '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안 돼'(Say No to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in Conflict)라는 청원서를 발표하였다.

2010년 10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1325호 채택 10주년을 맞아 1325호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① 사무총장이 2011년 연례보고서에 향후 10년 동안 사용할 유엔의 1325호 이행을 위한 전략프레임워크를 제출하고 ② 회원국가, 지역, 국제조직이 갈등예방·해결·평화형성에서 여성 참여 증진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며 ③ 국가, 지역, 지구적 차원에서 1325호 이행을 평가하며, 각 행위자의 1325호 이행을 촉구하며, 1325호 이행제약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위검토회의를 5년 안에 개최할 의지를 표명하였다.¹⁹⁾

(2) 1325호 이행 추적 지표

1325호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체계의 일부로서 지표는 현재의 평화와 안보 이슈를 이해하는 것을 도우며 현재 상황과 바람직한 목표 사이에 간격을 보여준다.

2010년 4월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89호에 따라 1325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통의 토대로서 지표(indicators)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유엔 조직, 국제단체, 회원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26

19) S/PRST/2010/22.

개 지표로 구성되고,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와 회복(relief & recovery)이라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²⁰⁾

2010년 9월 유엔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초기 지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국가, 지역조직, 안보리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더 포괄적인 지표세트(comprehensive set of indicators)를 발표하였다.²¹⁾ 협의과정에서 회원국들은 분쟁이 없는 경우에 지표의 적용가능성, 지표를 사용하는 회원 국가의 책임성,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 1325호의 모든 측면을 제시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새로운 지표세트는 초기 지표와 범주, 목표, 지표의 숫자는 같으나 지표의 항목이 일부 수정되고 구체화되었다. 이 지표세트는 1325호뿐만 아니라 결의문 1820, 1888, 1889호의 관련 조항을 추가했으며 특정한 상황에 맞는 이슈(Context-specific issues)를 포함했다. 지표를 양적인 지표와 질적인 지표로 분류하고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엔 여성기구가 유엔 조직과 회원국의 1325호 이행과 관련하여 조정하고 보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엔은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들의 권한을 실제로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표세트를 사용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새로운 지표세트는 4가지 핵심 범주인 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 회복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²²⁾

20) S/2010/173.

21) S/2010/498.

22) UN Women, "Tracking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예방에 속한 지표들은 분쟁 예방과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이다. 이 지표들은 갈등예방과 여성과 소녀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1325호의 운영문단 5-12, 14, 17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표 1-1〉 지표 - 예방 : 효과와 성과

효과 (impact)*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구조적·신체적 폭력, 특히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재발을 예방
성과 (outcomes)**	1. 분쟁, 휴전, 평화협상 기간과 분쟁 이후 여성과 소녀의 권리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성별대응(gender-responsive) 체제 2. 국제적 표준에 조응하여 국제적 행위자, 국가행위자, 비국가 안보행위자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고 책임진다. 3. 여성과 소녀의 특별한 요구와 이슈가 조기 정보체제와 분쟁예방 메커니즘에 포함되고 그들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드러내는 규정들

* 효과는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하는 목적.

** 성과는 1325호 이행으로부터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

예방에 속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의 빈도
- 분쟁과 분쟁 이후 상황에서 성폭력의 패턴
- 유엔의 평화유지임무와 특별정치임무가 안보리로 보내는 정례보고서에 여성과 소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
- 인권기구가 보고/언급/조사한 여성과 소녀의 인권 침해 정도
- 국가인권조직의 거버넌스(governance) 조직에 속한 여성의 숫자와 비율
- 성적 착취와 성적유린에 대해 전체 사례 대비 민간평화유지자 또는

-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행했다고 주장되는 보고사례의 비율
- 평화유지 임부에서 군사직 구성요소 대표단과 경찰요소 대표단의 명령서(Directives)에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
- 국가안보정책 프레임워크에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정도
- 안보리가 결의 1325호(2000)와 관련하여 취한 행동의 수와 유형
- 분쟁 예방 관련 지역조직과 하부지역조직의 행정부에서 일하는 여성의 숫자와 비율

2. 평가

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연관된 결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가 인권으로서 가치가 있다. 여성의 참여는 평화와 안보 맥락에서 젠더 이슈가 포함되는 것을 보장한다. 참여에 속한 지표들은 1325호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에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이해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지, 또는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1325호의 운영문단 1-5, 8, 15, 16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표 1-2〉 지표- 참여 : 효과와 성과

효과	분쟁의 예방·관리·해결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소녀의 이해 포함
성과	1. 유엔과 평화와 안보에 관한 국제적인 임부에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의미있는 참여 2. 공식과 비공식 평화협상과 평화형성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의미있는 참여

	3. 전국과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에서 민간인, 선출공무원, 정책결정자로서 여성의 대표성 향상과 의미있는 참여
성과	4. 분쟁 예방·관리·해결과 대응을 위한 활동, 여성과 소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관리·해결과 대응을 위한 활동에서 여성과 여성조직의 증가된 참여

참여에 속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여성과 소녀의 안보와 신분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정한 규정을 가진 평화조약의 비율
- 유엔 현장 임무에서 고위직을 가진 여성의 몫
- 현장임무에서 고위 젠더 전문가가 있는 비율
- 공식적인 평화협상에서 중재자, 협상가, 기술전문가 중에 여성의 대표성
- 공식적인 평화협상의 시작과 후반부에 공식적 참관자로서 여성의 참여
- 의회와 장관 직위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 투표자와 후보로서 여성의 정치 참여
- 안보리 임무에서 위임사항과 임무보고서에서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이슈를 드러내는 정도

3.2 보호

보호에 속한 지표들은 여성과 소녀의 인권, 신체적·정신적 건강, 복지, 경제안보를 보호하며, 여성과 소녀의 권위를 보호하는 노력의 강화와 법률적·제도적 개혁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를 추구한다. 이 지표들은 여성과 소녀의 인권 보호 및 신체적 안전, 건강과 경제적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 지표는 1325호의 운영문단의 6-11, 12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표 1-3〉 지표- 보호 : 효과와 성과

효과	여성과 소녀의 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그들의 경제적 안보가 보증되고 인권이 존중된다.
성과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 법률에 의해 여성과 소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보호되고 시행된다. 2. 여성과 소녀를 위한 신체적 안보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작동메커니즘과 구조의 설치 3. 위협에 처한 여성과 소녀 및 젠더폭력 피해자가 적절한 건강 지원, 심리적·사회적 지원, 생계지원 서비스에 접근한다. 4. 권리가 침해된 여성을 위한 사법부로의 접근 향상

보호에 속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여성과 소녀의 신체적 안보에 대한 지수
-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이 국제적인 표준에 일치하는 정도
- 사법, 안보, 외교서비스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
- 소형무기와 경무기의 전국적인 통제메커니즘의 존재
- 여성과 소녀가 조기 경제회복 프로그램에서 잠재적인 고용으로부터 얻는 이익(화폐, 평가치)의 비율
- 보고된, 조사된, 형량이 결정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과 젠더폭력이 언급된 사례비율
- 안보와 사법 분야 정책결정자들이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해 받는 일인당 훈련시간

구호와 회복

구호와 회복에 대한 지표들은 모든 구호와 회복 활동에서 구호의 분배 메커니즘과 서비스에 여성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 초점이 있다. 구호와 회복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여성과 소녀의 특별한 요구를 나타내기 위해 이 지표가 사용된다. 이 카테고리는 1325호의 운영

문단 7-9, 13, 17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표 1-4〉 지표 - 구조와 회복 : 효과와 성과

효과	여성과 소녀의 특별한 요구는 분쟁과 분쟁 이후 상황에서 충족된다.
성과	1. 여성과 소녀 특히 취약한 그룹(국내강제이주자,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희생자, 구 전투원, 난민, 귀환자)의 요구가 구조, 조기 회복, 경제회복 프로그램에서 다루진다. 2. 분쟁 이후 제도, 전국적인 대화 과정, 과도기적인 사법, 화해와 분쟁 이후 거버넌스의 개혁은 성인지적이다. 3. 군축·동원해제·재통합과 안보부문개혁프로그램이 무장그룹과 연결된 여성 안보행위자, 구 전투원, 여성과 소녀의 특정한 안보와 그 밖에 다른 요구를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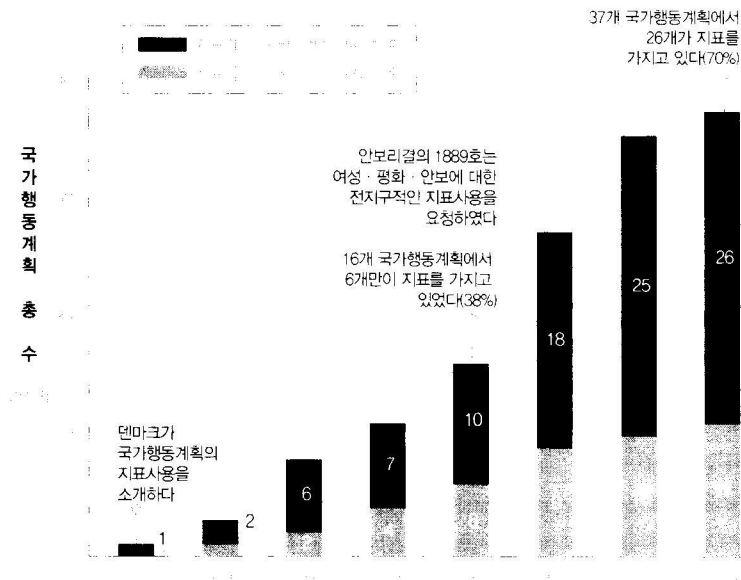
구조와 회복에 속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모성사망률
- 성별에 따른 초등교육, 중등교육 비율
- 분쟁이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전략계획 프레임워크에 성평등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와 관련한 예산 비율
-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일을 하는 데 할당된 예산이 시민사회조직에 지급된 비율
- 시민사회조직에 할당된 예산 중 성평등 문제를 지원하는 데 지급된 총예산 비율
- 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데 사용된 다자원조신탁기금(Multi Donor Trust Funds)의 비율
- 성평등 이슈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유엔체계의 총사용경비 비율
-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참여를 드러내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는 정도

- 여성과 소녀가 받은 회복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이익(화폐환산치, 화폐평가치)의 비율
- 여성과 소녀가 받은 군축, 동원해제, 재통합(DDR)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은 이익(화폐환산치, 화폐평가치)의 비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회원국가가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후속 결의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위의 지표를 고려할 것을 격려했다.²³⁾

안보리 의장의 권고와 함께 지표를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지표를



〈그림 1-2〉 국가행동계획에서 1325호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의 사용정도

자료 : UN Women, "Tracking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21.

23) S/PRST/2010/22.

사용하는 것이 유엔과 회원 국가의 공동의 책임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2012년 중반까지 채택된 37개 국가행동계획 중 26개가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국가의 70%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표가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추적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는 그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1325 지표는 그 지역이나 국가 특유의 평화와 안보 맥락에 맞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유엔에서는 각 국가나 지역에서 지표를 사용할 때 SMART 지표를 추천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이나 지역행동계획에 사용되어야 할 지표는 그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맞아야 하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성취할 수 있는(achievable), 적절한(relevant), 시간이 정해진(time-bound) 것을 추구해야 한다. 지표는 성인지적이고 질적이고 양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평화와 안보영역에서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5〉 ‘SMART’ 결과와 지표 만들기

	결과물(효과, 성과, 산출)	지표
S 특정한	결과물은 변화를 포함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특정한 미래 조건을 묘사해야 한다.	그 지표가 결과를 얻기 위해 진전되었는지를 측정하기에 충분히 그 상황에 맞는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가?
M 측정 가능한	결과가 질적이든 양적이든 그 결과가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가능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표가 결과를 믿을 수 있고 분명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A 성취할 수 있는	결과는 성취할 수 있는 파트너의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만 한다.	지표가 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하고 있는가?
R 적절한	결과가 전국적인 또는 지방적인 개발 프레임워크에 맞춰 우선적인 것을 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지표가 의도한 성과와 산출을 얻기에 적절한가?
T 시간이 정해진	성취가 언제 가능한지 기대하는 날짜가 있어야 한다.	데이터가 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으로 적용 가능한가?

자료 : UN Women, "Tracking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2.

이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중요하고 바람직한 실천을 알 수 있게 하며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조정을 강화할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공식적인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평화협정에서 젠더 내용 같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을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2) 1325호 지원 지역조직(Regional level)²⁴⁾

1325호 이행을 위한 지역적인 노력도 활발하다. 유럽,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1325호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 이행을 위해 여성 참여가 인권향상에 핵심적이며 여성의 특정한 요구와 관심을 드러내는 게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2010년에 1325호 이행지표를 개발하

24) <http://www.peacewomen.org/naps/about-raps>(검색일 2013.8.22),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7 참조.

고 2011년 첫 번째 이행보고서를 발표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2004년 12월 1325호 의무 수행을 포함한 성평등 촉진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06년 5월에 젠더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개발했다. 나토(NATO)는 2011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정책을 채택했다.

아프리카연합(AU)은 2009년 아프리카연합 젠더정책을 채택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포함했다.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2010년에 지역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태평양지역행동계획(Pacific Reg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채택했다.

3) 회원국가

(1) 정부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조직체계 내에서 1325호 관련 결의문들을 채택하고, 1325호 이행을 지원하며 또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여 1325호를 이행하고 있다. 2004년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여 25개 회원국이 1325호 관심국 그룹(Friends of Women and Peace and Security)을 조직하였다. 이 그룹은 비공식 그룹으로 1325호 이행을 위한 정부 간 조정, 자원 할당과 이행 촉구를 주창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²⁵⁾ 한국 정부도 1325호 관심국 그룹의 회원국이다.

또한 개별 국가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정책을 국가적 차원과 지방적 차원에서 통합하고 1325호를 집행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평화·안보분야에서 정부 부처의 성주류화 관점을 강화한다.

25) S/2010/498. 이 그룹은 Friends of 1325라고 불리기도 한다.

둘째, 정책결정과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추구한다. 즉 분쟁의 예방, 관리,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단체는 모든 정책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숫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협상과 평화과정에 있는 모든 행위자들은 배상, 재정착, 재통합, 분쟁 이후 재건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 여성의 평화 제안과 분쟁해결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운영기구에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여성과 소녀를 보호한다.

넷째, 평화유지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유지활동 관계자를 훈련한다.

다섯째,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한다. 국가행동계획에 안보리 결의 1325호 내용을 충분히 포함한다. ① 국내외 정책에 젠더의식을 포함한다. ② 젠더 주류화에 대한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젠더 감시와 조사를 포함한다. ③ 정부 부처 사이에,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작업반(task force)을 조직한다. ④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고 이행을 책임질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⑤ 1325호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한다. ⑥ 1325호 이행을 위해 시간표를 작성하고, 목표를 분명히 하며, 모니터와 보고 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여섯째, 워크숍을 포함해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1325호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2) 의회포럼

1325호 이행을 위한 의회차원에서 활동이 있다. 영국의 '여성·평화와 안보에 대한 준 의회 그룹'(Associate Parliamentary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이 대표적이다.²⁶⁾ 이 그룹은 2006년 7월 여성, 평화,

26) <http://www.gaps-uk.org/APG.php>.

안보에 대한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안보리 결의 1820호에 관련한 토론과 분석을 하기 위해 영국에서 형성된 의회포럼으로 정부 내에서 1325호 이행 촉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그룹 활동을 통해 정치적 스펙트럼, 공무원, 시민사회를 가로질러 전문적인 정보와 견해를 토대로 젠더와 안보에 대한 주제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²⁷⁾

4) 시민사회

정부가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이행하는 데 책임이 있는 반면 시민사회는 이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정부가 책임지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시민사회는 협의, 의견 제출, 전문성 제공 등을 통해서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며 이행위원회에 참석하기도 하며 이행관련 NGO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네덜란드와 네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이행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공식적인 과정과 별개로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로비를 하고 교육, 훈련, 지원활동 등을 통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지방화에도 기여한다.²⁸⁾

(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NGO 워킹그룹²⁹⁾

여성단체들은 1325호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2000년 5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NGO워킹

27) 정경란,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 평화를 묻는다』, 백산서당 2010, 105쪽.

28) <http://www.peacewomen.org/naps/about-naps> (검색일: 2013.8.23).

29) <http://www.womenpeacesecurity.org/>

그룹'(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조직하여 1325호 초안 작성과 채택을 위해 활동했다. 채택이후 관련 결의문의 이행을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며, 분쟁 상황으로 영향을 받는 여성인권 활동가와 유엔의 정책결정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활동이 평화와 인간안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 Ps라는 개념들을 개발하였다. 현재 많은 여성 평화단체들이 이 개념들을 인용하고 있다. 3 Ps는 갈등 예방(Prevention), 여성의 참여(Participation), 민간인의 보호(Protection)를 의미한다.³⁰⁾

회원조직은 2013년 8월 22일 현재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젠더안보인권컨소시엄(Consortium on Gender, Security and Human Rights)', '아프리카여성연대(Femmes Africa Solidarite)', '전쟁예방지구행동(Global Action to Prevent War)', '지구정의센터(Global Justice Center)',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소형무기국제행동네트워크(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 '인터내셔널 어릿',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 '새로운 방향을 위한 여성행동(Women's Action for New Directions)',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합(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여성난민위원회(Women's Refugee Commission)' 등 16개 단체이다.

NGO워킹그룹은 여러 차례 1325호 이행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위한 매월행동초점(the

30)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Checklist of Women's Participation and Gender Perspective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onthly Action Points for the Security Council: MAP)'을 발표해 여성·평화·안보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하고 있다.

(2) 여성·평화·안보관련 국제적인 정보자원 - 평화여성(Peacewomen) 프로젝트

인터넷은 1325호의 내용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를 광범위하고 빠르게 제공하고 여성들이 전략적이며 조율된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하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 연합'은 1325호와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제, 무력분쟁 지역에서 여성의 평화 노력을 알리기 위해 2001년부터 평화여성 프로젝트(Peacewome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평화여성 프로젝트는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자산으로서 웹사이트(<http://www.peacewomen.org/>) 개설과 1325호 평화여성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 유엔, 시민 단체의 활동내용과 성명서 등을 제공하며, 1325호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등 유엔과 시민사회의 1325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³¹⁾

(3) 개별 국가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

유엔 안보리 1325호를 개별 국가에서 이행하면서 각국의 시민사회는 1325호 이행 모니터링, 홍보 및 교육,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능력 함양, 국가행동계획 개발 과정에 참여, 1325호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 정부와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 NGO 워킹그룹 1325, 영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젠더행동'(Gender Action for Peace and Security), 스위스 1325 NGO 플랫폼,

31) 정경란,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 평화를 묻는다』, 백산서당 2010, 106-107쪽.

핀란드 1325 네트워크, 미국 시민사회 1325호 워킹그룹, 필리핀 '1325호 활동을 하는 여성'(WeAct 1325), 조지아의 여성정보센터 등 다양한 단체들이 1325호 교육과 홍보, 국가행동계획 개발과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장.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검토

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구조

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25호 채택이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을 6개 더 채택했다. 결의 1820호(2008), 결의 1888호(2009), 결의 1889호(2009), 결의 1960호(2010), 결의 2106호(2013), 결의 2122호(2013)가 그것이다.

결의 1889호는 1325호 내용을 확인하고 평화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였다. 더 나아가 1889호는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위해 자금, 자원 접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1325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포함하고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요구하였다. 결의 2122호(2013)는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모든 노력의 중심에 여성 지도력을 배치시키고 평화협상을 포함하여 분쟁해결과 복구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하였다. 결의 1820호, 1888호, 1960

호, 2106호는 성폭력 예방과 성범죄에 대한 면책 종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2-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 (2000년)	분쟁에서 여성 경험을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와 연결시킨 최초의 역사적인 결의문
1820호 (2008년)	유엔 안보리가 분쟁과 연결된 성폭력을 전쟁의 전술로, 또 성폭력 예방을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정하고, 평화유지, 사법, 평화협상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 최초의 결의문
1888호 (2009년)	리더십을 규정하고 사법 전문성 및 보고 메커니즘을 만들어 안보리 결의 1820호의 이행을 위한 수단을 강화
1889호 (2009년)	평화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며 1325호 이행을 위한 지표 개발을 요구
1960호 (2010년)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한 책임체계 제공
2106호 (2013년)	무력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처벌 종식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
2122호 (2013년)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모든 노력에 여성을 참여시키고 여성지도력을 강화

자료 :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5. 수정 및 추가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내용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후속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2012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을 검토한다. 1325호와 1889호는 평화형성과 분쟁 예방에서 여성 리더십에, 1820호, 1880호, 1960호는 성폭력과 연관된 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표는 행위자, 유엔 내 리더십, 모니터 및 보고 체계와 책임성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각 결의문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 평화형성과 분쟁 예방에서 여성 리더십

요소 / 결의	1325호(2000)	1889호(2009)
개요	분쟁을 겪는 여성의 경험을 국제 평화, 안보의 유지와 연결시킨 최초의 안보리 결의문. 분쟁해결, 평화협상과 회복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역할을 주장하고, 평화유지 임무에서 젠더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평화와 안보 유지와 연계된 모든 사람에게 젠더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미비아 발표 2000	조기 회복과 평화구축에서 여성 배제, 그리고 여성들의 요구를 위한 적절한 계획과 재정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분쟁해결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숫자를 증가하는 전략을 요구하며, 1325호 이행을 촉진하는 도구-지표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한 제안-를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발표 2009
행위자	<u>유엔 사무총장은</u> -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유엔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숫자를 증가해야 한다. - 평화협상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안보리에 제출하는 국가별 보고서에 여성과 분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u>유엔 사무총장은</u> - 평화형성 및 평화유지 정책결정자중에 여성의 숫자를 증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평화구축에서 여성참여 관련 글로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유엔 기관들이 여성의 분쟁 이후 상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보장해야 한다. - 평화유지 임무에서 젠더 자문관 그리고/또는 여성 보호 자문관을 배치해야 한다. - 1325호 이행에 대한 지구적인 지표세트를 작성해야 한다. - 1325호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안보리의 메커니즘을 제안해야 한다.

행 위 자	<u>회원국가는</u> - 젠더와 분쟁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군축·동원해제·재통합 프로그램에서 젠더를 포함하여야 한다. <u>무력분쟁 당사자는</u> - 성폭력과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 난민, 국내피난민 캠프의 민간적인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의 기소면제와 사면을 방지하도록 한다. <u>안전보장이사회는</u> - 안보리의 행위가 여성과 소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임무와 관련하여 여성단체와 만나야 한다.	<u>회원국가는</u> - 평화구축 초기 단계의 정치와 경제정책 결정에서 여성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 분쟁 이후, 그리고 회복을 계획하면서 여성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추적하고, 여성의 신체적·경제적 안보, 건강, 교육, 사법,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u>안전보장이사회는</u> - 유엔 임무 선회에서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u>평화구축위원회는</u> -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개입을 다루어야 한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는 평화와 안보 관련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을 조율하고 일관성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S/PRST/2010/22)	2010년 평화구축에서 여성 참여에 대한 사무총장보고서(S/2010/466)는 젠더 대응적인 평화구축에 대하여 7가지 초점을 정하였다. 평화구축 지원사무국과 유엔 여성기구는 공동의 코디네이터이다.
모 니 터 링 및 보 고 체 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전략프레임워크 2011-2020 비공식적 검토 : 매년 10월 공개토론(Open Debate). 이 주제에 대한 비공식적인 안보리 모임들. 유엔 여성기구 총재의 안보리 정례브리핑	1325호에 대한 글로벌 지표들은 모니터링의 기초이다.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S/2010/498)

책임 메커 니즘 (결의문 위반시 결과)	없다.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없다. 그러나 안보리가 어떻게 1325호에 대한 정보를 받고, 분석하고 행동할지를 설명하는 제안서를 2010년까지 요구하였다. [OP 18]
출처	www.unwomen.org/1325plus10	

〈표 2-3〉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개요	
1820호 (2008)	분쟁과 관련한 성폭력이 전쟁의 도구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라고 인정한 최초의 유엔 안보리 결의문으로 평화유지, 사법, 서비스와 평화협상에서 성폭력에 대해 대응하기를 요구. -미국 발표 2008
1888호 (2009)	1820호를 이행하기 위한 도구를 강화한다. 고위급 지도자를 지명하고, 사법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규정을 강화하며, 보고 매커니즘을 만든다. 미국 발표 2009
1960호 (2010)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다루는 책임체계를 제공한다. 가해자 명단 작성, 모니터링, 분석과 보고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발표 2010
행위자	
1820호 (2008)	<u>유엔 사무총장은</u> - 분쟁해결과 분쟁 이후 재건 노력에서 성폭력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무력분쟁 당사자와의 대화에서 성폭력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 평화구축기구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 유엔이 지원하는 군축·동원해제·재통합과정과 사법 및 안보 분야 개혁에서 성폭력을 다루도록 보장해야 한다.

1820호
(2008)

무력분쟁 당사자들은

- 성폭력을 중단시키고, 지휘관의 책임성을 강제하고, 무장 세력 중 혐의자를 조사하고 위험에 처한 민간인을 피난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
- 전쟁범죄인 성폭력에 대한 사면을 명확히 금지시켜야 한다.

회원국가는

- 여성평화유지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통하여 성폭력에 대한 인식 고양과 성폭력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성폭력 방지 훈련을 군부대에 제공해야 한다.
- 유엔 평화유지자들이 범한 성적 착취와 유린행위에 대해 불관용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 사법과 건강 체계를 포함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개발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 전쟁에서 성폭력의 불가피성과 예방불가능성에 대한 신화를 폭로하기 위하여 성폭력의 근본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 적절하다면 성폭력을 그 국가에 맞는 재재구조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

평화구축위원회는

- 성폭력을 다루는 방법들을 제언해야 한다.

1888호
(2009)

유엔 사무총장은

- 분쟁에서 성폭력에 관한 유엔 대응을 맡을 사무총장 특별대표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UN Response to Sexual Violence in Conflict: SRSG-SVC)를 지명해야 한다.
- 유엔 평화유지임무에 심각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여성보호자문관을 지명해야 한다.
- 사법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야 한다.
- 평화협상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중재자로서 더 많은 여성을 지명해야 한다.
- 안보리가 분쟁 관련 성폭력의 모니터링과 보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성폭력의 경향과 패턴에 대한 향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 강간을 체계적으로 자행하는 혐의가 있는 무력분쟁 당사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안보리에 제공해야 한다.

1888호
(2009)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항하는 유엔 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은

(13개 유엔기구로 구성된 네트워크)

- 유엔대응에 일관성을 높인다.

회원국가는

- 형사면책을 방지하는 국가적 법률구조와 사법체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 성폭력 생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희생자를 낙인찍는 것을 방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성폭력 중단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전략/유엔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 제재위원회의 지정 기준에 성폭력을 포함시킬 것을 제기해야 한다.

1960호
(2010)

유엔 사무총장은

- 안보리 의제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성폭력 패턴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를 연례보고서 별첨에 명기해야 한다.
-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보를 시기 적절하게 도덕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조율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SRSG-SVC)는

- 안보리에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 제재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에게 간단한 보고를 해야 한다.

회원국가는

- 보호 약속을 보장하고 추적하기 위하여 무력분쟁 당사자와 대화해야 한다.
- 평화작전에 배치된 군인과 경찰 인력에게 성폭력과 성적착취와 유린행위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 평화작전에 더 많은 여성 군인과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무력분쟁 당사자는

- 성폭력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특정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 약속에는 책임져야 할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 명령체제와 행동 지침, 군대야전설명서, 성적 유린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분명한 명령하달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 안보리권한부여와 채산에서 성폭력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당사자에게 제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유엔 내 포컬포인트 / 리더십

1820호 (2008)	- 유엔 평화유지활동국 최고 실천단(best practice unit)은 2009년에 안보리 결의 1820+1 보고서 발행 -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항하는 유엔 행동은 조정을 지원한다.
1888호 (2009)	- 사무총장특별대표가 분쟁관련 성폭력에 대한 유엔의 대응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정함 - 조정을 위해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항하는 유엔 행동과 연계
1960호 (2010)	-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사무실,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항하는 유엔 행동의 지원을 받음

모니터링 및 보고메커니즘

1820호 (2008)	- 연례보고서(모니터하는 것과 보고에 대한 명백한 변수가 없다.) - 민간인 보호에 대한 안보리 전문가 그룹이 하는 월별 고려사항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이 간단하게 보고한다.)
1888호 (2009)	- 모니터 및 보고 매커니즘의 제안을 요청. - 성폭력 패턴과 가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례보고서
1960호 (2010)	- 사무총장에게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과 그 밖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강간을 포함해,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OP 8]

책임성 메커니즘 (결의문 위반시 결과)

1820호 (2008)	- 성폭력에 대한 개별 국가 특유의 제재구조[OP 5] - 사무총장은 무력분쟁 당사자와 대화에서 성폭력을 다루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OP 3] - 성폭력을 사면규정으로부터 범주적으로 배제 [OP 4]*
-----------------	--

1888호 (2009)	- 제재위원회는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 [OP 10] - 성폭력 생존자의 주변화와 낙인화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지도자와 지방 지도자들, 전통적인 지도자와 종교 기관을 포함. [OP 15]
1960호 (2010)	- 분쟁 당사자가 지지르는 성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시간을 규정한 약속을 요구하고 성폭력을 제재위원회가 고려하는 표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 [OP 3,5,7] - 안보리에서 검토하도록 가해자 들의 명단을 보고 [OP 18]
출처	www.stoprapernow.org

** OP는 Operational Paragraph의 준말로 안보리 결의에 있는 운영문단을 의미한다.

자료: http://www.unifem.org/campaigns/1325plus10/wp-content/uploads/2010/05/FourCommitments_Poster_en.pdf (검색일 2013.8.22)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의 주제별 검토¹⁾

2012년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을 주제별로 나누어 검토한다. 이 결의문들을 평화유지, 분쟁예방, 보호, 참여, 평화과정, 성폭력, 성적 착취와 학대, 재건과 평화구축, 인도주의적 지원과 강제이주, 군축·동원해제·재통합 (DDR)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1) 평화유지

- 이 주제는 평화지원활동의 성주류화와 평화유지에서 여성 총원(군,

1) 주제별 접근은 Maria Butler, *Women, Peace and Security Handbook : Compilation and Analysi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nguage 2000-2012*, October 2012.

경찰, 민간)의 증가를 통해서 다차원적인 평화유지 임무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

- 안보리는 평화유지활동에서 여성의 수적 증가를 요구한다. UN 평화
유지국(DPKO)의 목표는 2014년까지 여성을 20%로 올리는 것이다.
- 평화유지와 젠더문제는 평화유지자로서 여성 충원을 확대하는 문제
또는 여성의 군인화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
제적인 인간안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문제다. 여성들이 평화유지
활동에 독특하고 강력한 기여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 평화유지활동에서 성주류화는 임무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 성인지적 관점 없이 지속가능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포괄적인 안보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그리고 사전 배치와 사후 배치에서 젠더교육은 평화유지
인력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게 하는 데 효율적이다. 평화유지임
무에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확대되고 있으며 훈련은 성폭력에 대
한 예방, 인식 및 대응을 증가시키고 있다.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성인지적 접근만이 남, 녀, 소년, 소녀의 서로
다른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표 2-4〉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평화유지 관련 조항

1325호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OP 4,5,6,15,17	OP 6,7,8,9,15	OP 10,11,12, 19,21,25	OP 4,7	OP 10

2) 분쟁예방

- 이 주제는 폭력적인 분쟁의 발생, 확산, 재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 여성을 분쟁예방의 건설적인 참가자로 인정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안보리는 회원국가가 국내, 지역, 국제 기관과 분쟁예방 메커니즘에서, 분쟁예방 대화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모든 행위자가 분쟁 예방을 위해 분쟁 관련 체계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1889호는 안보리가 1325호 이행을 평가할 의미있는 지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수집에 대한 더욱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접근법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 분쟁예방, 인간안보 향상, 평화촉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 개발에 중요한 대상자로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분쟁예방을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이 국제평화와 안보 성취에 중요하다.

〈표 2-5〉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분쟁예방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1	OP 12	OP 1,7,11,21	-	-

3) 보호

- 이 주제는 분쟁 기간과 그 이후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안전을 보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민간인 보호의 규범적인 틀과 메커니즘은 여성·평화·안보의 보호 요소와 중복되고 강화되고 있다. 현재 민간인 사상자 수는 무력분쟁 전투원 사상자보다 많다. 성폭력, 성매매, 성착취는 성별에 따라 남녀가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쟁에서 여성과 여성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여성의 보호는 여성 참여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여성은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프로그램의 기획과 이행에 협의하고 개입하여야 한다. 안보리는 특히 강제이주여성 보호 메커니즘 개발에 여성, 여성조직과 협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안전보장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국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기 위하여 회원국가가 여성보호를 위한 지침과 훈련교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지침과 전략을 요구하고, 회원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동등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표 2-6〉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보호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6,8,9	OP 1,3-5, 8-10	OP 3,6,8- 9,12,25-26	OP 2,6,7,10,12	OP 10

4) 참여

- 이 주제는 평화과정, 선거과정, 유엔 정책결정지위와 더 큰 사회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참여에 초점을 둔다.
- 안보리는 1325호와 1889호를 통해 모든 유엔 임무에서 여성 참여 확대 및 고위직에 지명된 여성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안보리는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의 진전과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원을 동원할 것을 요구하며, 유엔 임무에서 여성참여의 진전사항을 보고하고, 분쟁 이후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의 동등한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치와 경제 정책결정에서 여성 참여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표 2-7〉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참여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1-4,6,8,16	OP 8,12	OP 14,16,18, 19	OP 1,4,6,10- 11,14-15,17-19	-

5) 평화과정

- 이 주제는 공식적인 평화과정 및 비공식적인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증가와 평화협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안보리는 여성의 안보와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에 성인지적 규정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협정에서 여성의 이익에 적절한 이슈와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분쟁 이후 과정, 기관, 메커니즘에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 공식적인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는 여성의 권리와 우려와 관련한 이슈에 대응하고 포함한다는 점에서 협정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점을 인정하면서 안보리는 평화과정에서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참여와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
- 평화과정과 평화협정은 변화를 위한 주요한 기회이며 촉매제를 나타낸다. 여성들이 초기에 완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대응력을 높일 것이다. 여성의 존재가 평화협정에서 성인지적 규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것은 분쟁 이후 정치, 경제, 법률적, 안보 구조에서 성평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표 2-8〉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평화과정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2,8,16	OP 4,12	OP 16,17	OP 1	서문

6) 성폭력

- 이 주제는 분쟁과 분쟁 이후 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률과 확산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 젠더 역할의 양극화, 무기의 확산, 사회의 군사화, 법과 질서의 붕괴 등이 분쟁 동안 성폭력과 젠더폭력을 낳는다.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충격은 분쟁 이후 그 개인과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안보리는 성폭력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성폭력을 사람을 지배하고 모욕을 주며 위협하고 강제이주시키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 안보리는 평화유지 관련 결의문에 성폭력 예방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다루고, 성폭력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 기관과 국가 기관을 강화하고 분쟁 이후 평화구축 과정에서 성폭력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에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를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이 대표가 담당할 의제는 첫째, 형사 처벌 면제를 끝내고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며, 둘째, 여성의 권리를 찾고 치유하기 위해 여성을 세력화하고, 셋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동원하며, 넷째, 강간을 전쟁의 전술로서 인정하도록 하며, 다섯째, '분쟁에서 성폭력에 대항하는 유엔 활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통해서 조율된 대응을 보장하는 것이다.

〈표 2-9〉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성폭력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10,11	OP 1-15	OP 5,17,18, 20,22-26	OP 3,12,16	OP 1-3,5,7- 8,13

7)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 SEA)

- 이 주제는 평화유지활동 군인, 평화유지활동 경찰과 유엔 인력이 범한 성폭력을 다루고 있다.
- 유엔은 성적 착취와 성적 유린 행위를 심각한 악행으로 보고 이에 대해 즉결해고를 포함한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즉 불관용 정책 (Zero Tolerance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 성적 착취와 유린을 막기 위해 안보리는 회원국가들이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 기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파병국가들은 엄격하고 강력한 행동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 활동을 유엔에게 보고해야 한다.
- 해외파병군인과 유엔 인력에게 사전예방차원에서 젠더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 성폭력 가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표 2-10〉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5	OP 7	OP 20, 21	-	OP 11,16

8) 재건과 평화구축

- 이 주제는 평화구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분쟁 예방, 해결과 분쟁으로부터 복구하는 데 완전한 참여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인간안보의 구현에 중요하다.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의 우선성을 고려한 지방, 국가적, 국제적인 체계의 대응은 공동체의 안정성과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평화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여성의 개입은 분쟁 이후 계획에서 젠더 분석을 증가시키고, 여성을 위한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하며, 장기적인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참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권리와 우려는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존재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 작동절차로서 여성을 포함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안보리는 여성 리더십의 향상과 여성조직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평화구축 조치에서 여성의 보호, 권리와 요구에 대한 훈련을 요구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안보리는 사무총장이 평화구축과 회복 노력에서 여성 참여와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만들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표 2-11〉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재건과 평화구축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5,6,8,16,17	OP 6-9,13,15	OP 10- 13,16,18- 19,21,25-26	OP 1,3-4,14- 15,19	서문

9) 인도주의적 지원과 강제이주

- 분쟁 관련한 강제이주 문제를 포함하여 분쟁과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의 권리, 우려와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 인도주의적 행위자들이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과 지원 분배를 하기 위해 여성, 남성, 소녀와 소년이 분쟁에서 다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다.
- 모든 분쟁당사자는 난민과 관련한 법과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국제법을 지지해야만 한다. 사무총장은 여성단체들과 협의하여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안보리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선택하고 집행할 때 여성들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고려해야만 한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에 대한 요구를 인정하고 사무총장이 인도주의 요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 안보리는 인도주의 인력이 성폭력 대항훈련을 받고 평화과정에서 인도주의 관련 협정에서 성폭력문제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분쟁과 분쟁 이후에 성폭력 희생자에게 지속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개발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여성들은 장단기 구호와 회복 노력에 개입하여야만 한다. 이것은 긴급대응 이행과 모니터링에서의 참여를 포함한다. 성인지적 분배 메커니즘을 통하여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표 2-12〉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인도적 지원과 강제이주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4,12	OP 6,13	OP 17	OP 12	-

10) 군축, 동원해제, 재통합 (DDR)

- 군축, 동원해제와 재통합의 계획과 이행에서 성인지적 접근법과 여성의 대표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2-13〉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나타난 군축, 동원해제, 재통합 관련 조항

1325	1820	1888	1889	1960
OP 8,13	OP 10,13	OP 17,13	OP 8-10,13	-

3장.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의미와 사례

1. 국가행동계획이란?¹⁾

1) 국가행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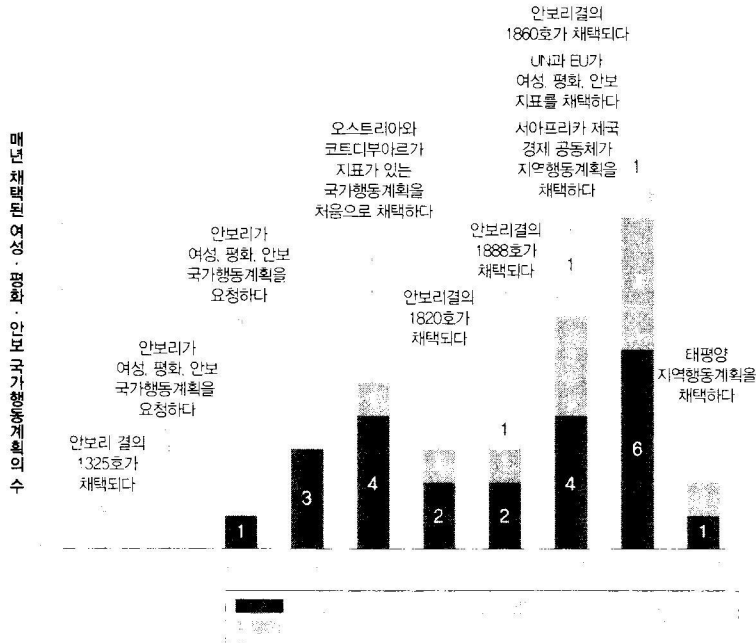
국가행동계획은 유엔 회원국가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성·평화·안보 목표를 안보, 국방, 외교, 사법, 개발, 평화구축에 대한 국가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지정한 기간 안에 정부기관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구상을 상세하게 담은 지침문서이다.

국가행동계획은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우선과제를 규명하고 정부 부처간 활동 중복을 피하고 정부 내에 성주류화와 1325호 이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부 기관을

1) 이 장의 1.2는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1325호 네트워크 주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3.4.10, 36-51 쪽 인용 및 추가.

동원할 수 있고, 국가행동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의 결과로 생산될 수 있다.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²⁾에서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가와 다른 행위자들에게 목표와 시간표를 갖는 분명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할 것'을 격려하고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가 직면하게 되는 특정한 제약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개발할 것'을 격려했다. 2004년과 2005년에 안보리는 의장성명³⁾에서 회원국이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포함하여 1325호 이행을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림 3-1〉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채택 시기와 지역(2005-2012)



자료: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7 수정.

2) S/PRST/2002/32.

3) S/PRST/2004, S/PRST/2005/52.

이러한 유엔 안보리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013년 10월까지 43개국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유럽 24개국, 아프리카 12개국, 아메리카 3개국, 아시아·태평양지역 4개국이다.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덴마크(2005년 채택, 2008년 개정), 영국(2006년 채택, 2010년 개정), 노르웨이(2006), 스웨덴(2006년 채택, 2009년 개정), 코트디부아르(2007), 스페인(2007), 스위스(2007년 채택, 2010년 개정), 오스트리아(2007년 채택, 2012년 개정), 네덜란드(2007년 채택, 2011년 개정), 아이슬란드(2008), 핀란드(2008), 우간다(2008), 라이베리아(2009), 벨기에(2009), 포르투갈(2009), 칠레(2009), 시에라리온(2010), 필리핀(2010), 르완다(2010), 콩고민주공화국(2010), 캐나다(201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10), 에스토니아(2010), 프랑스(2010), 이탈리아(2010), 네팔(2011), 세네갈(2011), 그루지야(2011), 세르비아(2011), 크로아티아(2011), 기니(2011), 기네 비소(2011), 슬로베니아(2011), 브룬디(2011), 아일랜드(2011) 미국(2011), 리투아니아(2011.12), 호주(2012.3), 가나(2012.10), 독일(2012.12),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나이지리아(2013).⁴⁾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의 장단점⁵⁾

(1) 장점

첫째,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가적인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국가행동계획 작성과정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의식교양과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이다. 토론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세미나와 훈련을 하는 공간이 생긴다.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성평등의 이해를 돕고 이와 관련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4) <http://www.peacewomen.org/naps/list-of-naps> (검색일 2012.10.30)과 <http://www.gaps-uk.org/NAP.php> 참고

5)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INSTRAW), *Securing Equality, Engendering Peace: A guide to policy and planning on women, peace and security*(UN SCR 1325), 2006;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 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행동계획은 국가행동계획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의 행동계획, 유럽연합 등 지역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만들 때 사용가능하다.

둘째, 여성·평화·안보 목표를 이행하는 데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높아진다. 성주류화 정책을 모든 부문에 걸쳐 시행하도록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여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정부 활동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된다.

셋째,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은 1325호 관련 평화와 안보에 관계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평화와 안보 관련 권한, 임무, 활동,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이 개발된다.

넷째,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진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행위자(다양한 부처, 시민사회, 의회, 유엔, 국제NGO 등)가 서로 협력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부 부처 간 조율을 할 수 있으며, 중복을 막고 희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높인다.

다섯째, 1325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 행동계획은 기준점과 지표를 제공하고 이행에 대한 연례보고, 모니터링에 책임이 있는 작업반, 이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 등 모니터링과 평가를 촉진한다.

여섯째, 참여적 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여성·평화·안보 이슈를 더욱 잘 이해하고 행동계획 이행에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도와준다.

국가행동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효과적인 이행, 정부 부처 간 조정, 접근법의 일관성,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별 조치들은 정부 내에 여성·평화·안보 목표의 철저한 내재화를 보증할 수 있다.

(2) 단점

첫째, 이미 있는 법과 제도에 통합하는 것에 비해 과정을 시작하고 그

필요를 정당화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요구된다. 둘째, 존재하는 국가젠더계획과 중복될 수 있고 그 계획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별개의 국가행동을 만드는 게 주류화하지 못하는 주변화한 문서를 또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넷째, 명목상 시책으로 상징성만 있고 이행되지 않는 문서가 될 수 있다.

2. 국가행동계획 개발 방법

1) 국가행동계획 개발 모형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그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르다. 국가행동계획 속에는 그 국가의 평화와 갈등의 역동성, 다양한 제도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역할과 상호 작용,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 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의 구성요소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국가 상황 묘사, 수행되어야 할 행위의 개요, 각 행위 이행을 위한 책임자, 활동 이행을 위한 시간표, 각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원, 이행을 측정할 방법(지표와 이정표), 계획의 수정이 발생하는 환경, 얼마나 자주 계획이 수정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표 3-1〉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시한 '1325호 이행 국가행동계획 개발 모형'이다. 아프리카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든 경험이 많다. 그 경험을 평가하고 얻은 교훈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표 3-1〉 1325호 이행 국가행동계획 개발 모형

국가	합리적 근거 : 국가적인 차원에서 1325호 이행을 위한 모든 노력을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
활동 : 1325호 공동 작업반 구성	
목적	국가적 수준에서 1325호 이행을 위한 부문간 협력을 위한 기준 제공
제도 / 이해 관계자	- 국가젠더기제, 의원, 지방정부관료, 전통적인 지배자, 시민사회, 유엔조직, 기부자/기금제공자 - 작업반은 모든 주요행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면 안 된다. - 주요시민사회그룹 - 여성그룹, 연구기관, 미디어를 포함하는 노력 필요. - 지역차원의 평화안보 구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구조가 이 작업반에 연결되는 게 중요. - 국가평화정책과 국가평화기관이 있는 국가의 경우, 이 기관들이 국가작업반에 참여해야 한다.
제안된 구상	- 공동 작업반 구성에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조직. - 모임의 정례화 :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각 정부 부서에서 포괄 포인트를 지명. - 결의문 이행에 대한 의회의 정례적인 업데이트 필요. - 현존하는 협력구조를 사용해서 공동 작업반을 형성할 수 있음. 즉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또는 여성권리에 대한 아프리카연합 합의의 프로토콜 국내화를 위한 작업반. - 분쟁 이후 국가에서 국가행동계획은 군축, 동원해제, 재통합, 재건을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헌신을 포함해야만 한다.
모니터링과 평가 스케줄	- 작업반은 국가행동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해야 함. - 감시위원회 또는 부처는 작업반에게 보고하여야 함.
예산	작업반은 각 활동에 대한 예산을 개발해야 한다.
활동 : 1325호 훈련과 능력 배양	
목적	- 지방과 전국적인 수준에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기술과 능력 배양 - 분쟁예방, 해결, 평화형성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능력 강화

제도 / 이해 관계자	- 공동체 수준 조직 - 전국적인 시민사회행위자 - 1325호 국가공동작업반 -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문가
제안된 구상	- 분쟁예방, 해결, 평화형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에 대한 훈련 - 젠더분석, 성주류화 등에 대한 훈련 - 중재, 협상, 로비와 주장에 대한 기술 훈련 -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아프리카 훈련기술을 확산 - 각 맥락에 맞게 능력을 형성하기 위해 현존하는 기제를 토대로 실시
모니터링과 평가 스케줄	단기, 중기, 장기 기술 및 능력 배양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틀을 기획해야 함.
예산	훈련과 능력배양구상을 위한 예산은 다양한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재정 계획에 통합될 수 있다.

활동 : 1325호 의식 고양

목적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결의문의 존재와 그 적절성을 일반인과 특정인에게 알려줄 것 -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젠더분석과 성주류화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 기관의 인식 제고
제도/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이해관계자
제안된 구상	- 여성인권 보호, 참여, 평화유지, 분쟁 후 재건에 대한 의식 제고를 목표로 활동 조직 - 결의문을 지방어로 번역, 결의문의 기술적인 부분을 해석 - 결의문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위해서 세계여성의 날, 인권의 날, 국경일 등 중요한 날과 기념일을 활용

활동 : 평화와 분쟁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 기록

목적	- 평화형성에 대한 여성의 기록 추적 -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기록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진전 기록
제도/ 이해관계자	연구소, 활동가
제안된 구상	- 위원회: 분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례적인 국가 연구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진전에 대한 통계 수집

모니터링과 평가 스케줄

작업반이 연구 결과물을 정례적으로 검토

목표 정하기

국가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숫자 증가 부분
- 여성과 소녀를 위하여 사법부에 여성의 접근이 향상된 부분
- 분쟁 해결, 분쟁 예방, 평화형성에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여성의 수적 증가
- 비공식·공식 평화 형성에 관여하는 여성의 숫자

자료: OSAG, DESA, ECA,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2000) in Africa: Needs Assessment and Plan for Action*, pp.34-36, 정경란, "평화·통일·외교영역에서 여성 참여 -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실천방안", 평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12. 4. 26 재인용.

즉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기 위한 작업반을 형성하고, 1325호를 이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1325호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평화와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방법론⁶⁾

유엔은 기존 성평등국가행동계획이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증진과 여성권한강화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

6)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NSTRAW), *Securing Equality, Engendering Peace: A guide to policy and planning on women, peace and security*(UN SCR 1325), 2006.

7) 유엔이 제시한 장애물은 다음과 같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자원의 부족 / 젠더 입법·정책·프로그램과 이행 사이에 간극(gap) 및 국가차원의 개발계획과 젠더 정책의 통합에서 간극/ 성별통계 및 지표 등 책임성,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의 부재 / 정책결정자들의 성평등과 성주류화 개념의 몰이해 / 성평등촉진을 위한 책임성을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 작업반, 조정메커니즘으로 떠넘기는 경향 / 성평등 행동계획의 목표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부재이다.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3가지 핵심방법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⁸⁾

(1) 전략적인 계획 세우기 (Strategic Planning)

1980년대 정부와 시민사회가 채택한 기술로 특정한 목적의 이행과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세우기는 무슨 조직이 무엇을 하고 왜 그것을 하는지를 정의하고 그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목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계획하는 것이다.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절차는 ① 내적·외적 조건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② 전체 목표와 세부적 목적을 규정하고 ③ 다양한 접근법과 전략을 조사하고 ④ 현재 내린 결정이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고 ⑤ 구체적인 임무, 시간표, 책임감을 명확히 규정하고 ⑥ 결과를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한다.

(2) 참여적인 계획 세우기(Participatory Planning)

전략적인 계획 세우기는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으로서 계획당국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고 대중들에게 의견을 듣는 방법이다. 반면에 참여적 방법은 다양한 계획단계에서 조직 차원, 전국적 수준과 지방 수준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방법은 권력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불평등이 계획과정의 결과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첫째, 타협을 협상하고 공동의 토대와 상호이익을

8) 유엔은 '1975년 국제여성의 해에 설정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유엔 세계행동계획' 부터 시작해 다양한 행동계획을 작성한 경험이 있다. 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유엔은 유엔체계뿐만 아니라 회원국가들에게 전담행동계획 수립을 권장해 왔다.

찾음으로써 변화에 대한 미래의 저항을 감소시킨다. 둘째, 다른 관점들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어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협력관계를 낳는다. 전국적인 차원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향상시킨다. 셋째, 특정그룹 - 특히 주변화한 그룹들의 요구를 보장하고 세력화나 신뢰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이해당사자들이 향후 행동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참여의지를 높인다. 다섯째, 새로운 행동계획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3) 젠더와 사회·경제적 분석(Gender and Socio-Economic Analysis)

젠더 분석은 젠더 역할과 젠더 간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남성과 비교하여 행동·자원접근·정책결정에서의 차이와 경제적·사회적·정치적·그외 제약으로 발생한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젠더 분석을 통해서 남녀불평등을 이해하고 남녀의 요구와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한 정책, 프로그램, 입법을 개발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요소를 분석에 추가함으로써 그룹으로서 남녀의 불평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젠더 사회·경제적 분석은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는 과정과 함께 국가 행동계획 수립 이후 모니터링과 평가단계에서 적용 가능하다. 젠더 사회·경제적 분석 기술은 성별 통계, 실제적인 요구 평가, 전략적인 요구 평가, 젠더 감수성 지표이다.

성별통계(Disaggregated statistics)는 성별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차별 유형을 규명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요구 평가(Practical needs assessment)는 사회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처한 여성들의 즉각적인 요구를 측정하는 것이다. 생활조건, 건강, 고용 등과 같은 불평등을 포함한다. 전략적인 요구 평가(Strategic needs assessment)는 남성에 비해 종속적인 지위를 극복

하기 위한 여성들의 광범위한 요구를 평가하는 것이다. 법적 권리, 폭력의 피해, 동일임금 문제 등을 포함한다. 젠더 감수성 지표(Gender-sensitive indicators)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젠더관계를 보여주는 측정치, 숫자, 사실, 견해와 인식이다. 성평등이 성취된 정도, 젠더정책과 프로그램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3) 국가행동계획 개발 3단계 : 과정, 구조, 이행⁹⁾

유엔 여성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를 과정, 구조, 이행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1) 과정을 중심으로 본 국가행동계획 수립하기¹⁰⁾

가. 정치적 의지 갖기 : 1325호 지지와 의식 고양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자와 일반대중에게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

나. 조정과 협력

1325호 지지와 의식화를 통해 정치적 의지와 관심이 증대된다면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행동계획을 시작하기 위하여 조직화해야 한다. 다양한

9)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10) UN INSTRAW, Securing Equality, Engendering Peace: A guide to policy and planning on women, peace and security (UN SCR 1325), 2006와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 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단체를 공식적인 네트워크와 비공식 네트워크 등으로 조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부처 간 조정과 함께 정부 부처간 작업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NGO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a. 조정

정부 관료들 사이에 내적 조직 형성 과정으로 광범위한 제도적 지원을 얻기 위하여 계획 과정은 국방, 외교, 사법, 통일부와 같은 고위부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받아야 한다.

정부 부처 간 조정과 함께 정부 부처 간 작업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작업반에서 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책임범위를 규정해야만 한다. 이 단계에서 행동계획의 준비와 이행에 필요한 초기 예산을 개발하고 이 예산을 획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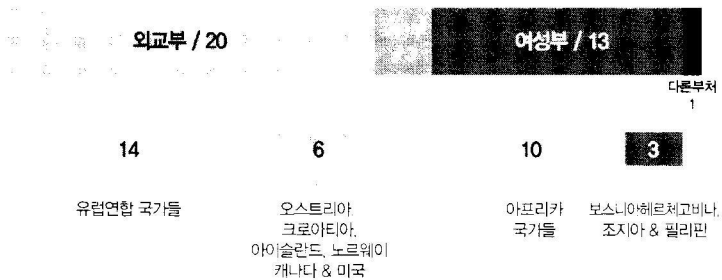
어떤 부처가 조정을 주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주로 국가적인 맥락에 의존한다. 어떤 부처가 과정을 주도하든 책임주체가 충분한 정부의 지원, 인적 재정적 자원, 모든 적절한 행위자들이 지지하고 이행하는 전략적 문서를 만들도록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

현존하는 국가행동계획의 2/3는 여러 부처가 컨소시엄으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였다. 어떤 행위자가 포함될지라도 국가행동계획 개발과정은 국가행동계획 이행 이후 관련될 모든 행위자를 연계시키고 조정하는 것이다. 중요 부처를 포함한 공식적인 위원회, 고위작업반, 조정실무그룹은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향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행동계획 작성과 이행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국제조직, 학계 대표와의 광범위한 연계가 가능하며 여러 관점과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해외원조개발을 중요하게 다루므로 외교부가 주무책임부서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내문제를 주로 다루는 여성부가 맡고 있다. 세르비아는 국방부, 네팔은 평화재건부가 주무부처이다.

〈그림 3-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주무 부처)

* 2012년 초까지 정리한 자료이다.



* 자료: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13.

b. 다른 이해당사자와 협력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위해 타국의 경험, 유엔, 지역단체, NGO와 학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국가행동계획 개발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행위자와 지역(regional), 다자적인 기관과 파트너십을 갖고 작업하는 것이 유용하다.

c. 기구간 공동작업반(Inter-Agency Taskforce)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작업반을 만들기도 한다. 이 작업반은 국가행동계획 개발과정을 시작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반은 이상적으로 정책결정자, 실천가, 비정부단체 등 다양한

대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한 행위자는 소수인종그룹, 여성조직, 이민여성조직, 원주민여성조직, 피난민 여성조직, 연구기관, 학술기관, 유엔조직,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군대와 경찰의 대표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 계획 세우기를 위한 계획

모든 당사자들이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토론하고 동의했던 것을 전달할 수 있다. 자원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기구간 작업반(Inter-Agency Taskforce)은 '계획 세우기를 위한 계획'을 만드는 모임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근거, 목적, 전략, 기대하는 성과, 시간표, 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 ㉠ 근거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행동계획을 개발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배경을 주는 짧은 문장.
- ㉡ 목적 : 행동계획을 만드는 일반적 목적과 특정한 목적(예: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게 1325호에 대한 인식 제고).
- ㉢ 전략 : 행동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특별조치(평가 과정)와 기구 간 작업반, 협의자문관, 조정자 등 관련 모든 행위자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 기대하는 성과 : 행동계획과 더불어 평가 보고, 능력 배양 및 의식 제고 활동, 미디어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 개발과 행사 개최.
- ㉤ 시간표 :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의 완료시점과 행동계획 최종본의 완료 시점을 포함한 시간표.

- ⑭ 예산 : 자문위원비, 평가, 번역, 출판과 여성·평화·안보행동계획의 배포, 추가적인 능력 함양과 의식 제고를 위한 자료의 발간과 분배, 워크숍 및 미팅 비용 등

이 단계에서 자금의 획득과 행동계획의 준비와 이행을 위한 예비 예산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모든 행위자들은 예산의 한계와 결과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예산을 고려하면서 이행활동의 잠재적인 우선성을 토론하고 정해야 할 것이다.

라. 전략적인 우선사항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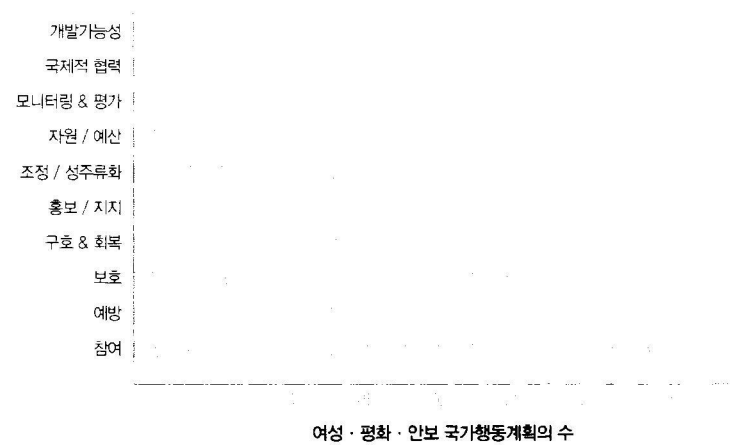
여성·평화·안보 영역에서 전략적인 우선사항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평가 과정은 주어진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국가행동계획의 구성에 적절하고 우선적인 이슈에 대해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결정하고 미래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기준선을 만들기 위하여 행위자들,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에 기여하는 외적인 요인들, 요구를 포함한 맥락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 평가는 분쟁에서 여성의 경험과 분쟁해결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 관한 특정한 지표를 정하고 기획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유엔은 이를 위한 평가의 유형을 두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제도적 감시이다. 여성·평화·안보 이슈를 다루는 정부활동, 현재의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 젠더정책과 법의 존재, 정책 이행의 효율성 문제, 이와 관련한 젠더 훈련의 여부, 관련 부처의 조직문화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통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요구와 현실적인 간극을 규명한다. 둘째, 맥락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맥락 평가의 목적은 특정 국가의 현재 상황을 포괄적으로 개관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서 여성·평화·안보 이슈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 국가의 성별관계의 역동성과 평화와 안보의 개념을 맥락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안보 위협, 차별과 폭력이 남녀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정부가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맥락 평가는 여성단체, 분쟁에 영향을 받은 가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를 포함한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듯이, 각 국가마다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므로 전략적으로 주요하게 다루는 이슈도 다르다.

〈그림 3-3〉 국가행동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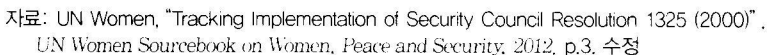


* 자료: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p.14.

마. 이행전략 만들기 : 지표를 가진 모니터링과 평가

- 이행전략은 보통 작업계획, 자원과 예산,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 평가를 포함한다.

- ### 〈그림 3-4〉 결과 체인



-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유엔이 개발한 지표이다(S/2010/498). 유럽연합도 지표를 개발하였다. 독일은 유럽연합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 위의 결과체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325호 이행을 위한 활동을 위해 재정적, 인적, 물질적 자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평화와 안보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의도한 변화를 얻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가행동계획의 구조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는 분석과 강령, 전략과 행동 계획, 기간, 모니터링과 평가를, 예산이다.

가. 분석과 강령(Analysis and Mission Statement) : 1325호 등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하기 위한 그 국가의 실정과 우선영역.

국가행동계획의 개발은 여성·평화·안보 이슈의 분석과 이해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여성·평화·안보 결의문을 그 국가의 위치와 우선적인 고려사항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왜 적용해야 할지를 평가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그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르다. 국가행동계획 속에 그 국가의 평화와 갈등의 역동성, 다양한 제도와 이해당사자 사이의 역할과 상호 작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은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에서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전체적인 관점으로서 성평등, 여성의 권리, 여성 역량 강화라는 원칙을 강화하는 목

적과 강령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행동의 구체적인 서술을 담고 있는 전략과 행동계획

1325호의 중요 목적인 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 회복에 맞는 전략과 구체적인 행동을 규정하고 평화와 안보의 맥락에서 여성의 역할, 요구, 능력, 이익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제안한다. 중장기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적을 포함하여야 전략을 현실화할 수 있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 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을 포함한다.

다. 기간

필요한 자원,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 정례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연동된 기간을 포함한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기간을 명확히 정한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책임설정 및 활동, 필요 자원과 기간이 잘 조율되어야 한다.

라. 모니터링과 평가 틀 : 지표, 기준점, 모니터링 조직, 보고의 빈도를 포함한다.

마. 예산

국가행동계획 안에 개별 활동에 맞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행동계획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부처는 그 예산을 공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구성요소를 토대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국가행동계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입

이다.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소개와 행동계획 개발 과정을 서술한다. 둘째,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안보리 결의 1325호와 같은 국제적인 의무, 여성·평화·안보 이슈의 중요성, 이것이 국가와 연계되어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셋째, 장기 목표 및 단기 목표이다. 국가행동계획의 장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적을 서술한다. 넷째, 특별한 활동(initiative)이다. 국가행동계획의 목표와 1325호로부터 요구되는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이행 책임자, 지표, 기한, 자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간이다. 전 행동계획의 완료 기간, 특정 활동의 완료 기간, 모니터와 평가 기간을 서술한다. 여섯째, 모니터와 평가이다. 모니터 기간, 지표, 연례보고 또는 모니터 기구 등 보고 평가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일곱째 예산이다. 국가행동계획의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이행을 위해 예산 배정이 중요하다.

(3) 이행에 필요한 조건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1325호를 실천하는 첫단계에 불과하다. 여성·평화·안보 계획과 정책이 잘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의지의 부족, 조정 부족, 예산 부족, 능력 부족, 모니터링과 평가부족 등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다음 조건이 유용하다. 첫째, 정부 고위층의 약속이다. 국가행동계획은 주요한 평화와 안보 부처의 최상층을 포함하여 고위수준의 정부 노력과 약속을 담아야 하며 이 정치적 헌신과 결의는 모든 이해당사자와 분명한 소통을 하는 것이다.

둘째, 파트너십 구축이다. 시민사회, 학계, 지역 조직과 같은 주요 이해당사자와 유엔 여성, 유엔인구기금, 유엔개발계획 등 유엔기구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셋째, 효율적인 부처간 조정기구를 구성한다. 국가행동계획의 초안과정

을 조정했던 작업그룹이 이행, 모니터와 평가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전환한다.

넷째, 예산 할당이다. 국가행동계획은 장단기적인 적절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예산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섯째, 책임성이다. 책임체계(accountability procedures)를 수립하고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감사와 검토 스케줄을 잡는다.

여섯째,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국가행동계획을 잘 수행한 경우 보상하여 국가행동계획 이행에 더욱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일곱째, 능력 배양이다.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지식, 모니터링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 등 이해당사자를 위한 능력배양이 이행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시민사회 개입이다. 시민사회의 참여는 중요하다. 국가행동계획 수립이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는 여성·평화·안보의 이해당사자로서 여성들이 이 의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행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행동계획 수립조직이나 국가행동계획 이행조직에 시민사회 대표로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이나 이행과정에서 구조화된 협의를 통해서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

아홉째, 광범위한 협의이다. 분쟁에 직접 영향을 받은 지역과 그 주민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다.

열 번째, 인식 제고이다. 미디어 이용을 포함한 인식 제고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하며 이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반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열한 번째, 좋은 사례를 수집한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잘 이행하는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당사자를 격려하고 그 사례를 이용하여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한다.

3. 해외 사례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그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발전했다. 먼저,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평화와 갈등의 역동성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무력 분쟁 상황에 있는지, 무력 분쟁이 끝난 후 재건 과정에 있는지, 분쟁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초점을 두는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 유엔과 관계 등 이해당사자 사이의 역할과 상호 작용, 그리고 젠더 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경험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 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이 포함되면서 강조점과 내용이 변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네덜란드, 필리핀, 네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1)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은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사회협약'을 토대로 한 협력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졌다.¹¹⁾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행동계획 개발에서 주요한 파트너일 뿐 만 아니라 네덜란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공동 서명자이다. 국가행동계획 개발에 참여한 단체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파트너로서 위상을 갖고 이행에도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진다. 국가행동계획 개발과 이행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광범위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작업으로 1325호 정신을 실현한 것

11)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인도주의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시작되고 이후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다. 네덜란드는 2008년 1차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고 2012년 2차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1) 1차 국가행동계획(2008-2011)¹²⁾

2007년 6월 네덜란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기관, 교회, 조합과 개인들이 쇼크랜드협약(The Pact of Schokland)을 체결하여 새천년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실현과 1325호 이행에 대한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 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¹³⁾ 이 협약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1325호 국가행동계획 개발에 공동의 이해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 협약은 국가행동계획 개발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와 그 역할에 대해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시민사회단체는 1325호 워킹그룹(Working Group on 1325)을 구성하고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1325호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초기 활동목록¹⁴⁾을 제공했다. 정부는 이 문서를 국가행동계획 개발 과정의 주요한 조언으로 보고 환영하였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국가행동계획의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협약에 따라 2007년 네덜란드정부 대표와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외교부에서 정규적인 모임을 열었다. 이 모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여성인권 활동가, 평화활동가 그리고 평화조직과 개발 조직의 젠더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정부 부처, 비정부단체(NGO) 및 학계 등 18개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1325

12) Dutch National Action Plan on Resolution 1325(2008-2011): Women Peacemakers Program의 Isabelle Geuskens의 설명(2013.4.24) 참조

13) 2007년 12월 4일 쇼크랜드 2차 협약을 맺어 6월 협약을 토대로 2차협약의 합의를 통해 파트너들은 1325호 이행을 위한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14) 분홍노트(pink notes)라고 불린다.

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파트너들은 각 파트너의 역할, 임무, 전문성을 존중하고 국가행동계획 작성과 이행을 책임지기로 결정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의 공동서명자로서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에 대해 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¹⁵⁾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325호 이행을 위해 법률적 프레임워크, 분쟁 예방, 조정과 재건, 국제협력, 평화임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3-2〉 1차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2008-2011)의 목차

머리말
서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을 향하여
전쟁 전·중·이후의 여성: 희생자, 전투원, 개발의 동력
네덜란드: 지금까지 이야기
특별한 단계: 2008-2011
1. 법률적 프레임워크
2. 분쟁 예방, 조정과 재건
3. 국제 협력
4. 평화 임무
5. 조화와 조정
결론
행동계획 매트릭스
약어
참고문헌
국가행동계획들
부록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여성·평화·분쟁 작업반의 최종문서에 나온 제안들
쇼클랜드협약 (2007 6월 30일)
쇼클랜드협약 (2007년 12월 4일)

15) 다른 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국가행동계획의 모니터와 평가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협의자 격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민사회와 협력과 별개로,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접근법을 유지하고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노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민사회만의 모임도 지속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 발표 1년 후에 시민사회는 국가행동계획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서 나온 제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차 국가행동계획(2012-2015)¹⁶⁾

네덜란드에서는 1차 국가행동계획을 평가한 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 2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2차 국가행동계획은 1차 국가행동계획과 비교할 때, 공동의 접근법과 공동의 책임성을 규정하고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행동계획에는 정부 부처,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등 39개 파트너가 각 파트너의 역할, 임무와 전문성을 존중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다짐하고, 공동의 접근법을 토대로 공동의 책임성을 갖고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네덜란드에서 파트너 사이의 공동의 접근법은 협력과정의 산물이다.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는 국가행동계획의 공동의 서명자로서 파트너십을 갖고 평화와 재건 과정에서 여성을 지원하는 공동행동을 하고 있다. 공동의 접근법을 토대로 협력하고 조정하며 취약국가를 선정해 이 지역의 여성 및 여성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의 개발과 이행은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의 공동책임이다. 외교부가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제도적 우산을 제공하고 매일 매일의 실제적 조정은 외교부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한다. 국가행동계획 서명자

16) Women: Powerful Agents for Peace and Security Dutch National Action Plan (2012-2015).

들은 취약국가와 분쟁 지역, 분쟁 후 지역의 여성들과 여성조직을 이 과정의 '주체'로서 인식하여 이 여성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서명자들이 초점을 두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남수단, 수단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이다.

〈표 3-3〉 2차 네덜란드 국가행동계획(2008-2011)의 목차

머리말
2012-2015 네덜란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요약
1. 맥락을 이해하기
1.1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1.2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의 역할
1.3 취약국가와 분쟁, 분쟁 이후 국가, 전환기 국가에서 활동하기
2.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토대
2.1 과거 네덜란드 1325호 국가행동계획(2008-2011)
2.2 성취
2.3 배운 교훈
3. 꾸준히 나아가자! 네덜란드 1325호 국가행동계획
3.1 모든 결정과정 수준에서 평화와 재건 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
3.2 네덜란드 정책과 행동으로 젠더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지속적인 통합
3.3 국내적·국제적 지지와 인식 제고
3.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3.5 공동의 접근법
3.5.1 협력
3.5.2 조정
3.5.3 주인의식
3.5.4 지리적 초점 지역
3.6 공동의 책임성
3.6.1 양적인 수준
3.6.2 질적인 수준

4. 자원
5. 약자
6. 정의
7. 유용한 웹사이트
8. 참고문헌
9. 부록
 - 부록 1. 모니터와 평가 매트릭스
 - 부록 2. 안보리 결의 1325호
 - 부록 3. 국가행동계획들

국가행동계획 파트너들은 모니터와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자신의 활동을 매년 모니터한다. 그리고 여러 이행당사자들과 공동행동의 결과는 격년마다 평가한다. 모니터링과 평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매트릭스를 별도로 만들어 국가행동계획 부록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에 1325호 이행을 위해 사용되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2) 필리핀¹⁷⁾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필리

17)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the UNSCRs 1325 and 1820*, <http://www.sulongnetwork.ph/new/resource/philippine-nap-women-peace-and-security>, draft as June 8, 2010 (검색일: 2013.5.4);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Act for Peace,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Carmen Lauzon-Gatmaytan, "Conflict Prevention a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 what's in it for us?", GP-PAC 토론회, 30 October 2012, New York.

핀은 여성들이 정부와 비정부단체의 평화 활동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¹⁸⁾

소수 여성들이 1325호 논의를 시작하였다. 2007년 3명의 여성이 대학교에 모여 1325호의 홍보와 이행을 위해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2007년 12월 처음으로 국제여성단체(International Women's Tribune Center), 필리핀 시민사회단체(Sulong CARHRIHL), 필리핀 정부 기관인 필리핀여성위원회가 1325호 전국 워크숍을 조직했다. 2008년에는 지방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그룹들은 평화과정대통령보좌관실(Office of the Presidential Advisor on the Peace Process)이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정부가 국가행동계획 채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9년 3월 국제여성단체(IWTC), 필리핀시민사회단체(Sulong CARHRIHL), 필리핀여성위원회, 평화과정대통령자문관실이 준비위원회(Preparatory Committee)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준비위원회는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유엔 안보리 결의 1820호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 협의과정을 촉진하였다. 이 그룹은 지역협의회를 지원하고 준비위원회에 소속될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지명하여 이 단체들을 준비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이 준비위원회는 협의기간 동안 사용하는 작업문서로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초기행동계획초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지역차원에서 협의회를 조직하고, 여성·평화·분쟁에 대한 상황적 분석, 평화의 비전, 평화구축과 관련한 여성들의 기획,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제안들을 논

18) 2012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Report 2012)에 따르면 필리핀은 135개국 중 8위이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항상 10위안에 있었다. 2012년 현재 한국은 135개 중 108위이다.

의하였다.

국가행동계획의 작성과정은 지역협의회, 전국확인워크숍, 다시 지역협의회 참가자들의 확인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필리핀 전역을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협의회를 통해 수립한 내용을 포함해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국확인워크숍(national validation workshop)을 개최하여 이 초안을 검토하였다. 이 전국확인워크숍에서 나온 제안을 다시 수립하여 다시 지역협의회 참가자들에게 보내 의견과 제안을 받았다. 2010년 3월 이런 과정을 거친 후 독립적인 자문관의 지원 하에 준비위원회가 국가행동계획을 마지막으로 편집하였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는 2010년 3월 25일 미리암대학에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필리핀 국가행동계획: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 이행하기'(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the UNSCRs 1325 and 1820)를 발표했다. 2010년 6월 베이그노 아키노 3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평화재건부는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수정하였다.¹⁹⁾

〈표 3-4〉 필리핀 국가행동계획의 목차

약어 목록
머리말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배경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진화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평화·안보 규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
필리핀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의 적절성을 필리핀 맥락에 조응하며

19) 국가행동계획 2011년 수정판의 제목은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이다.

필리핀에서 무력분쟁
 무력분쟁의 결과
 여성과 (불)안정
 여성과 평화 활동
 여성인권에 대한 국가적 매커니즘을 만들며

필리핀에서 여성·평화·안보 규범의 국내화: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내
 적인 수준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의 형성
 행정명령 865호: 1325호와 1820호에 대한 국가운영위원회를 조직
 하며
 1325호에 대한 행동에 참여하는 여성

1325호와 1820호 필리핀 국가행동계획

부록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국가행동계획 준비위원회 위원
 협의회 참가자 명단
 행정명령 865호

자료: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2011.

필리핀 국가행동계획은 분쟁 중인 국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주요 내
 용에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배경, 필리핀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의 적절성을 설명하고, 필리핀의 무력분쟁,
 무력분쟁의 결과, 여성과 (불)안정, 여성과 평화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 3월 1일 필리핀 대통령은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유엔 안
 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 이행을 위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련 자금 제공에 대하여' 라는 행정명령 865호²⁰⁾

20) Executive Order No. 865. <http://www.gov.ph/2010/03/01/executive-order-no-865-s-2010/> (검색일 2013. 10.1)

를 제정하였다. 이 행정명령 86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국가운영위원회(National Steering Committee on Women, Peace and Security)'를 만들었다. 국가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은 평화과정대통령보좌관(Presidential Advisor for Peace Process), 부의장은 필리핀여성위원회 의장이며, 위원은 국방부 장관, 사회복지개발부장관, 법무부장관, 내무지방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원주민 국가위원회 위원장, 이슬람실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325호 이행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국가운영위원회는 5백만 페소를 첫해에 제공받고 그 이후에는 평화과정대통령보좌관실의 예산에서 사용하며, 각 정부 부처의 추가적인 예산은 젠더개발예산²¹⁾을 사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준비위원회에 참가하였으나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된 후 국가운영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와 협력관계에 대해 국가운영위원회는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모니터, 평가에서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와 평화단체와 파트너십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11월 17일 국가행동계획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단체와 평화단체는 독자적으로 '1325호 행동에 참여하는 여성'(The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 act 1325)²²⁾을 결성하였다. 국가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협의, 1325호 관련 정책 검토 및 능력함양, 평화협정에 젠더 내용 포함 추진, 전국 또는 지방 수준의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 참여 증가 주창,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1325호와 1820호 국가행동계획이 채택된 이후 평화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되고, 2012년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

21) 필리핀의 젠더개발예산(Gender and Development budget)은 각 부처 예산의 5%로 의무화되어 있다.

22) 홈페이지 <http://www.weact1325.org>

방전선(MILF)이 합의한 방사모로평화프레임워크(Bangsamoro Framework for Peace)에 여성참여 및 여성의 보호와 권리를 포함하였다.²³⁾

3) 네팔

네팔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은 참여적 과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1) 채택과정²⁴⁾

네팔에서는 2006년 10월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내전이 끝난 후 1325호가 여성들을 평화과정에 참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7년 발족한 평화재건부(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의 이행을 감독하는 부처이다. 이 부처는 유엔 조직, 여성조직과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정부 관료, 안보 부문 담당자, 의원, 정당과 시민사회와 대화를 시작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알리는 프로그램과 국가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홍보물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09년 9월 고위운영위원회(High Level Steering Committee)와 정부 부처 간 이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고위운영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조율을 하면서 국가행동계

23) 필리핀 평화협상을 포함해 아시아지역의 평화협상과 여성의 평화활동에 대해서는 정경란, "아시아에서 평화만들기: 여성의 참여와 관점", 아시아저널, 2013 여름 제7호 참조.

24)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UN SCR 1325 & 1820 National Action Plan/ Nepal, *Glimpses of the Process Adopted*, Feb.2011,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언", 국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연구회와 1325호네트워크 주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2013.4.10) 54-55쪽 재인용.

획의 실제적인 작성과정을 시작하였다. 이후 초기 계획모임, 국가행동계획 프레임워크 개발 전국워크숍, 국가행동계획 프레임워크 수정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국을 국가행동계획 협의를 위한 구역으로 나누고, 이후 NGO 네트워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방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 모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국가행동계획을 수정하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고위운영위원회에서 국가행동계획을 지지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1년 네팔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와 1820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표 3-5〉 네팔 국가행동계획 작성 과정

- | |
|---|
| 0. 고위운영위원회 구성 |
| i. 초기 계획모임 2010.3.31 |
| ii. 국가행동계획 프레임워크 개발 전국워크숍 2010.5.16-17 |
| iii. 국가행동계획 프레임워크 수정 워크숍 2010.5.31 |
| iv. 국가행동계획 협의를 위한 구역 지정 2010.6.21 |
| v. NGO 네트워크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2010.7.1-2 |
| vi. 지방 협의 2010.7월-9월 “고위 수준의 지원: 기층 소유권” |
| vii. 국가행동계획 수정 및 사전 승인 2010.9.12-14 |
| viii. 승인 워크숍 2010.9.27 |
| ix. 고위기획위원회 국가행동계획 지지 2010.10.4 |
| x. 정부 부처 간 협의 2010.11-2011.1 |
| xi. 네팔 정부 UNSCR 1325와 1820 국가행동계획 공식적으로 채택 2011.2.1 |

1325호의 네팔 국가행동계획 개발 과정에 대한 여성단체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위원회 성원이었던 반다나 라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제공한 지지공간이 없었다면 네팔의 가부

장구조와 정치적 의지의 부족 속에서 네팔에서 상황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1325호가 정부 결정의 가장 고위수준에서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²⁵⁾ 1325호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통해 네팔 평화구축과정에서 젠더균형적인 접근법을 추구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이 생긴 것을 환영했다.

(2) 국가행동계획의 구성²⁶⁾

네팔 정부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동안 추구할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였다. 이 행동계획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표 3-6〉 네팔 국가행동계획의 목차

머리말
요약
1. 배경
2. 네팔에서 갈등 전환과 평화과정
3. 무력분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
4.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5. 여성, 평화와 안보에 대한 헌법·법률·정책 규정
6. 네팔에서 여성, 평화와 개발에 대한 관련 이슈
7. 국가행동계획
8.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9.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10. 모니터링과 평가
11.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위험 요인
12.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

25) Center for Humanitarian Dialogue, *Peacemaking in Asia and the Pacific: Women's participation, perspectives and priorities*, March 2011, p.99.

26)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National Action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 1820 (2011/2012-2015/16)*, February 1, 2011.

네팔 국가행동계획의 매트릭스에서는 5개의 범주- 참여, 예방과 보호, 향상, 구호와 회복, 자원 관리·모니터링·평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이 범주에 따라 목적을 서술하고, 그 밑에 전략 목표, 특정 행동, 기대하는 결과, 지표, 이행 기관(책임 기관, 지원 기관), 시간표를 포함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네팔 국가행동계획의 ‘참여’ 항목의 일부이다. 네팔의 국가 행동계획에서는 이행기관을 책임기관과 지원기관으로 구분하여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표 3-7〉 네팔 국가행동계획 - 참여

목적 : 갈등 전환과 평화 형성 과정에서 모든 정책결정 단계에서 여성의 동등하고 비례적이며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략 목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공공의 중요한 직책, 특별 작업반, 평화협상팀에서 후보 지명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비례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행동	전략목표와 여성의 참여를 방해하는 현재 정책과 법률의 격차를 규명하고,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구상 또는 개정하는 행동	평화협상, 비공식대화, 토론, 특별작업반, 국내적·국제적 활동과 모든 평화형성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비례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
기대하는 결과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법률을 개발하고 개정한다.	평화협상, 비공식대화, 토론, 특별작업반, 국내적·국제적 활동과 모든 평화형성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비례적이고 의미있는 참여
지표	제정하고 개정된 정책과 법률의 수·이행되는 정책과 법률의 수	평화협상과 특별작업반에서 여성의 숫자·이러한 직책을 가진 여성이 제시한 이슈

이행 기관	책임 기관	평화재건부, 내무부, 국방부, 여 성아동사회복지부	총리실, 장관협의회, 평화재건 부
	지원 기관	외교부, 사법부, 재정부, 국가여 성위원회, NGOs	정당
시간표		시작 첫해부터 5년까지	시작 첫해부터 5년까지

* नेपाल 국가행동계획 매트릭스 7.3.1 참여에서 발췌.

자료: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National Action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 1820 (2011/2012-2015/16)*, February 1, 2011. 로 교체

(3) 국가행동계획 이행구조

네팔의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정부 부처 간 조정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국가행동계획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참여는 시민사회 구성원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이러한 협력과 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이행위원회, 국가행동계획구역 조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운영위원회는 정부 관련 부처와 시민사회, 학계 대표들로 구성되고, 평화재건부가 조정역할을 한다. 운영위원회는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한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외적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정부 부처 사이의 이행을 조정하고 정례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감시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관련 기관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행동계획 내용에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의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며, 각 부처 간 이행을 위한 계획을 조정하며, 이행을 위한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매년 진전 보고서를 준비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지방차원에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국가행동계획구역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4) 미국

미국의 국가행동계획은 미국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4개년외교개발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에 나타난 젠더 통합을 위한 목표위에 수립되었다. 젠더 통합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남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남녀 성별 차이와 불평등을 조사하고 밝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젠더 통합이나 성주류화의 목표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과 정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에 젠더통합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가행동계획에서는 평화협정, 평화형성 활동, 갈등 예방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분쟁과 불안정 상황에서 구호와 지원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제도화하며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과정과 관련하여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은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데 참조할 만하다.

첫째, 여성의 개입과 보호이다. 평화와 안정의 행위자로서 여성의 개입과 보호가 안보를 촉진하고, 여성이 분쟁 예방·대응·해결, 사회의 재건을 위한 노력에 중심이 될 것이다.

둘째,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이다. 미국 국가안보전략과 4개년외교개발보고서에서 나타난 젠더 통합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여성·평

화·안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이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 존중을 보증하고 위기와 갈등환경에서 취약한 계층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보완하고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포괄성의 원칙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남녀, 소년과 소녀, 청년, 종교·인종·성적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의 견해와 참여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넷째, 활동의 조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여성·평화·안보·구호 분야 활동에서 정부의 모든 부처와 기구 사이에 조정을 하며, 미국 외교정책으로 통합되고, 국제파트너의 협조를 촉진할 것이다.

다섯째, 책임성이다. 미국 정부기구는 이 계획을 지지하는 정책과 제안의 이행에 책임을 질 것이다.

미국의 국가행동계획은 국가정책 서술,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 사례, 국가행동계획의 개발 과정, 목적과 행동프레임워크, 조정, 이행, 모니터링, 보고, 파트너십과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8〉 미국 국가행동계획의 목차

국가정책 서술
평화와 안보에서 여성의 사례
분쟁해결에서 동등한 참가자로서 여성
분쟁 중 그리고 분쟁이후 여성 보호
여성과 분쟁 예방 노력
재건을 위한 수단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
국가행동계획의 개발
국가 목적과 행동 프레임워크
국가적 통합과 제도화
평화과정과 정책결정에서 참여
폭력으로부터 보호

분쟁 예방
구호와 회복으로 접근
조정, 이행, 모니터, 보고
파트너십과 협력
행동을 요구하며

2011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미국 국가행동계획의 도입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국가행동계획의 조정, 이행, 모니터링, 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서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제개발처장은 각 부처에 국가행동계획을 조정하고, 이행에 적절하고 책임지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관료를 지명하고, 국가행동계획 발표 후 150일 내에 대통령보좌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각 조직은 그 조직의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이행계획을 시행한 후 대통령보좌관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그 시행을 모니터해서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이행계획에는 이행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을 정하고, 측정가능하며, 자원을 포함하고, 또한 이행을 모니터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통령보좌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은 국가행동계획과 각 부처의 이행계획의 시행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매년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가행동계획과 각 부처의 이행계획의 시행을 보고하기 위한 부처 사이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국가행동계획의 포괄적이고 정례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조정하여야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Staff)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관계 부처 간 정책위원회(Women, Peace and Security Interagency Policy Committee: WPS IPC)'를 만들고 의장을 맡는다. 이 정책위원회는 미국의 국가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행동을 모니터하고 검토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과 전략에서 여성·평화·안보의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이 정책위원회는 보고 과정을 만들고 국가행동계획 이행 현황에 대해 시민사회 대표들과 정례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외국이나 타 지역에 현장임무를 갖는 정부기관이 현지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정례적인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고 유지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각 부처는 이행관련 진전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차관위원회 (NSC Deputies Committee)에 매년 보고하고,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특정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적절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가 국가행동계획의 조정과 업데이트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하고 2015년에 포괄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할 것임을 정하였다.²⁷⁾

2010년 7월 미국평화연구소의 젠더와 평화구축센터(Gender and Peacebuilding Center)가 소집해서 분쟁의 예방과 대응에서 여성의 권리, 안보와 참여를 증진하는데 헌신하는 조직과 개인들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미국시민사회워킹그룹'을 조직하였다. 이 워킹그룹은 미국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위해 미국정부가 할 일을 제안하고 이행을 모니터하고 있다.²⁸⁾

27)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December 2011.

28) U.S. Civil Society Working Group *Expert Statement for the U.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November 28, 2011.

4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현황

1. 정부의 이행현황¹⁾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이행을 보고한 사례가 없다. 이 장은 201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²⁾에서 제시된 지표를 사용해 한국에서 1325호 이행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1325호의 주요한 기준인 예방, 참여, 보호, 구호와 회복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1) 기본사항

(1) 성별 격차

한국에서 남녀 격차는 지극히 크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0.6356이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약64%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는 135개국에서 108위이다. 특히 분야별 젠더격차를 보면 경

1) 정경란, 한국정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 이행 현황 조사보고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2011년 소식지 준비호, 수정 보완.

2) S/2010/498.

제적 참여 및 기회에서 0.5088로 여성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며, 정치적 권한은 0.1015로써 여성은 남성의 10%에 불과하다. 세계경제포럼은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 14개 지표를 측정하여 남녀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지표는 해당 국가의 실질적인 수준보다는 자원과 기회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남녀에 따른 격차(gender-based gaps)를 측정하고 있다. 즉 건강, 교육, 경제적 참여, 정치적 권한과 같은 기본권에서 남녀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권한 강화보다는 성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³⁾

〈표 4-1〉 한국의 성격차의 변화 (2006년-2012년)

년도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순위/국가수	108/135	107/135	104/134	115/134	108/130	97/128	92/115
점수	0.6356	0.6281	0.6342	0.6146	0.6154	0.6409	0.6157

참고: 점수는 남성을 1로 기준했을 때 여성의 점수.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p.9.

〈표 4-2〉 한국의 분야별 성별 격차 (2012년)

한국	전체	경제적 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순위	108	116	99	78	86
점수	0.6356	0.5088	0.9592	0.9730	0.1015

참고: 13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점수는 남성을 1로 기준했을 때 여성의 점수.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p.11.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성격차의 추이를 볼 때 지속적으로 성격차

3)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과 관련하여

2012년 2월 27일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이 통과하였다. 이후 외교통상부 주도로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준비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12월 제4차 여성 정책기본계획 (2013~2017)을 발표하였다. 중과제로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를, 소과제로 5-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와 5-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성평등한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3) 정부 각 부처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 강화에 대하여

○ 국가행동계획 개발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은 외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7개 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이다. 외교부가 주무부처이고 여성가족부가 실무부처이다.

○ 현재 한국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1325호 이행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부의 관련 모든 부처의 1325호 이행활동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고 조정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4) 성평등 현황과 관련하여, UNDP가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12년 0.153으로 148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성평등지수는 완전한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할 때, 2011년 시점 63.5점이다. 여성가족부,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13.8. 21~29쪽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부처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통일, 국방분야 법률에서 젠더 관련 내용이 없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 원칙과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이 없다. 반면에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추구해야할 주요 원칙중 하나로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명문화한 바 있다.⁵⁾

2) 예방

(1)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하여

- 1991년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1993년 최초로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부대단위로 파견한 이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은 외교부의 유엔과와 국방부의 국제평화협력과가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과 협력하고 국방부, 각군, 합동참모본부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파병업무를 담당하며, 국제평화유지군 모병, 훈련, 부대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작전통제권과 부대지휘권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보편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한국은 2011년부터 2012년 기간에 유엔 평화유지 예산의 2.6%를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 평화유지 예산 지원국 중 최상위 10위

5)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젠더문제를 통합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White House, *United State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December 2011, p.1.

에 해당한다.⁶⁾

- 정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과는 별개로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협력의 명목으로 해외에 파병을 하고 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관련하여 작전통제권은 다국적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며 부대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 국방협력 명목으로 아랍 에미레이트에 파병한 아크부대의 작전통제권과 부대지휘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다.

가. 유엔 평화유지군 중 여성 군인의 숫자와 비율은?

- 2013년 8월 7일 현재, 총 15개국 파병된 1,161명 중 여성은 26명이다.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파병된 군인 629명 중 여성은 17명으로 2.7%이다.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군인과 민간인 인력의 10%로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해외파병군인은 UN 평화유지군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파병한 경우가 많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닌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은 해외 파병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⁷⁾ 국토방어와 국제평화유지 기여가 아닌 군사력을 과시하거나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파병은 제한해야 한다. 군사력 동원은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후에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6) DPKO, Background Not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www.un.org/en/peacekeeping/documents/backgroundnote.pdf>, (검색일 2012.7.25).

7)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닌 경우 한국군 해외파병의 메커니즘을 보면 주로 미국이 동맹의 이름으로 호출하고, 정부의 파병이 분쟁지역의 평화정착과 안전보다는 파병에 따른 각종이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부가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은 분쟁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동맹국들에 대한 의료 및 건설지원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승환, 정경란 외,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 민주정책연구원, 2012. 45쪽.

〈표 4-3〉 한국군 해외파견 현황

총 15개국 1,161명 / ('13. 8. 7. 현재)

구 분			현재 인원	여군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17	6	티르	'07. 7월	
		남수단 한빛부대	282	8	보르	'13. 3월	
	개인 단위	인·과 정전감시단(UNMOGIP)	7	2	스리나가	'94. 11월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	2	0	몬로비아	'03. 10월	
		남수단 임무단(UNMISS)	7	1	주바	'11. 7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0	다푸르	'09. 6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0	나쿠라	'07. 1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2	0	아비장	'09. 7월	
		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0	라운	'09. 7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2	0	포르토프랭스	'09. 11월	
소 계		629	17				
다국 적군 평화 활동	부대 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04	9	소말리아해역	'09. 3월	
		아프간 오쉬노부대	67	0	바그람	'10. 7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 장교	4	0	마나마	'08. 1월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 장교	2	0	지부티	'09. 3월
		아프간 치안전환사령부 (CSTC-A)	참모 장교	2	0	카불	'09. 9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0	플로리다	'01. 11월
			참모	1	0		
	소 계		382	9			
국방 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50	0	알 아인	'11. 1월	
	소 계		150	0			
총 계			1,161	26			

※ 개인단위(41명) : UN PKO(30), 다국적군(11)

※ 부대단위(1,120명) : UN PKO(599), 다국적군(371), 국방협력(150)

자료: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에서 확인, 2013.8.14

나.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해외파병에서 평화유지군이나 해외파병군이 성적 착취와 성적유린을 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는가? 보고된 숫자는?

○ 1993년 PKO파병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해외파병군이 성적 착취와 성적유린을 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⁸⁾

다. 평화유지 임무에서 대표단의 명령지침에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평화유지국(DPKO)에서 관리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아닌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현재 국방부 훈령에 여성, 젠더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⁹⁾

라. 국방부 정책이나 국가안보정책에서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국방정책에 여성이나 소녀 인권을 보호하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⁰⁾

마. 안보 분야 정책결정자들이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해 받는 일인당 훈련시간은 얼마인가?

○ 모든 군인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각각 년 1회 1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성희롱은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8)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2013. 8. 26. 확인

9)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2013. 8. 27. 전화인터뷰

10)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2013. 8. 27. 전화인터뷰

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¹¹⁾

- 양성평등교육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부대당 1회 2시간씩 교육한다. 강의는 양성평등원 강사가 맡고 있다.¹²⁾

바. 파병군인이 받는 젠더교육은 무엇인가?

- PKO 파병군인에 대한 젠더 교육은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에서 주관하고 국방대학교 PKO센터와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실제로 교육하고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 및 다국적군, 부대협력으로 파병되는 장병에게 공통으로 실시되는 교과목은 평화유지와 관련된 국제법,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인권보호, 여성 평화와 안정, 아동보호, HIV/AIDS와 UN 평화유지활동, 다양성 존중 등이다. 교육시간은 파병 전 3시간이상이다.

사.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여성

- 유엔 평화유지활동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여성 참여 목표비율을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0%로 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닌 해외파병의 경우 그 파병 목적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과 젠더문제는 평화유지활동 군인의 숫자에 단순히 여성을 늘리거나 여성의 군인화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 예방 등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인간안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다.

11) 국방부 병영정책과 2013.8.27전화인터뷰.

12) 국방부 여성정책과 2013.8.27 전화인터뷰.

(2) 주한미군의 성범죄 예방

- 1966년에 체결되고 1991년과 2001년도에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조항이 없다. 반면에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기지촌 여성을 포함한 일반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2000년 9월 1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새움터는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을 작성하였다. 2000년 9월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9차 SOFA 개정 협상을 앞두고 여성계는 소과 개정에서 여성 인권 보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고 또한 2000년 11월 22일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을 통해 여성 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입법청원을 하면서 일부 조항을 추가 요구하였다. 그러나 2001년 SOFA개정 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¹³⁾ 주한 미군의 성폭력에 대한 불관용정책(Zero Tolerance Policy)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참여

(1)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 수준에 대하여

13)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의 내용은 http://www.peacewomen.or.kr/index.php?mid=wmp_pds_mil&document_srl=22759 (검색일 2013.8.10) 참고하기 바란다.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미국 시민사회워킹그룹'도 SOFA를 포함해 국내외적으로 성폭력과 젠더폭력에 대응하여 불관용정책과 100%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U.S. Civil Society Working Group Expert Statement for the U.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November 28, 2011.

유엔 안보리 결의 1325 채택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협상이 많이 있었다. 또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어 왔다. 이 협상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공식협상이다. 이 협상과정에 공식적인 대표와 참관자로서 여성 참여 비율은 얼마인가?

○ 남북회담은 한반도 평화, 화해, 협력,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이다. 이 협상은 대다수 남성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회담은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남북회담이 활발하고 교류와 지원도 많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 회담 개최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진행된 남북 회담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2000년 0%, 2007년 3%, 2010년 10%이다.

〈표 4-4〉 남북회담에서 여성 참여 (단위:명, %)

	전체	여성	비율
2000년	94	0	0
2005년	118	5	4
2007년	209	6	3
2010년	20	2	10

* 주: 정치, 군사, 경제, 인도,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회담에서 여성이 참여한 비율 정리.

* 자료: 통일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정경란 질의에 대한 답변, 2010.11.5

○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47명 중 여성이 5명 참가하였다. 이중 여성분야를 대표한 사람은 3명이었다. 여성단체들은 1차, 2차 남북정상회담 전 정상회담 수행원에 여성분야를 대표해서

여성의 참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에 여성 1명이 참여했고, 제2차에서 5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성분야를 대표하는 대표단이 꾸려진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2) 국방, 통일, 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에 대하여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직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은?

○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지극히 낮다. 통일, 국방, 외교 분야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장·차관급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2009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방부 11.7%, 통일부 14.2%이고, 2011년 6월 현재 외교통상부 18.3%이다. 그러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 공무원단에는 국방부는 0%, 통일부 4.8%, 외교통상부 1.2%이다.

〈표 4-5〉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명, %)

부처별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장관	1	0	0	1	0	0	1	0	0
차관	1	0	0	3	0	0	1	0	0
고위 공무원	22	0	0	251	3	1.2	21	1	4.8
3급	10	0	0	87	2	2.3	8	1	12.5
4급	93	7	7.5	567	65	11.5	68	4	5.9
5급	241	36	14.9	498	188	37.8	133	27	20.3
소계	368	43	11.7	1407	258	18.3	232	33	14.2

주: 1) 국방부, 통일부 비율은 2009년 통계, 외교통상부 비율은 2011년 6월 통계
2) 계급별 구분이 가능한 직종인 일반직, 별정직, 일반 계약직, 무무공무원 대상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10.5 참조.
외교통상부 인사과 전화인터뷰(2011.6.8)

○ 통일, 국방 관련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낮다. 통일부에 속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은 2006년 20.8%, 2008년 8.0%, 2010년 16.1%, 2012년 18.0%이다. 외교통상부는 2006년에는 정부 위원회가 없었고, 2008년 20.0%, 2010년 16.7%, 2012년 30.0%이다. 국방부는 2006년 28.8%, 2008년 17.7%, 2010년 8.8%, 2012년 12.4%이다. 국방부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은 노무현정부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6〉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2006년	20.8%	-	28.8%
2008년	8.0%	20.0%	17.7%
2010년	16.1%	16.7%	8.8%
2012년	18.0%	30.0%	12.4%

자료: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에 대한 평화여성회 질의에 대한 여성가족부 회신, 2013. 8.
23.

○ 정부차원에서 통일, 평화, 국방, 외교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느 한 성
에 의한 편파적이고 불평등한 흐름을 막고 남성과 여성의 관심과 경
험을 통합하기 위해 모든 정책의 수준과 과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
는 지극히 저조하다.

4) 보호

(1) 국가전략이나 국가계획에서 성인지적 분석, 목표, 지표와 예산 통합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외교, 국방, 통일과 관련하여 국가계획과 전략에 성인지적 예산 시행, 성별데이터 발표, 성인지적 목표 설정, 구체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가?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기본정책서에 젠더문제를 통합하는 규정은 없다.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평화, 통일, 국제협력 분야가 중과제로 채택되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 중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국가계획이다. 그동안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주류화 전략을 도입하여 국가운영과 사회관계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1998년부터 2002년) 6대 기본전략에 '국제협력과 통일에서의 여성역할 증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2-2007)은 성주류화 및 협력체계 구축, 10대 핵심정책과제에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역할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계획(2008-2012)이 수정되기 전에는 성평등관점의 주류화가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소과제에 '남북한 여성협력 활성화'와 '국제협력 강화'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확정된 제3차 계획 수정판은 성평등관점 주류화 전략이 빠지고 통일관련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축소되고 '여성 국제협력 확대'만 소과제로 포함되었다. 제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중과제에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표 4-7〉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와 평화, 통일, 외교 분야

비전	
2차 (2003-2007)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3차* (2008-2012)	성숙한 성 평등 사회
4차 (2013-2017)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전략목표	
2차 (2003-2007)	·남녀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3차* (2008-2012)	·여성의 역량 강화 ·다양성과 차이 존중
4차 (2013-2017)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촉진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가족의 조화
전략	
2차 (2003-2007)	·성주류화 ·협력체계 구축
3차* (2008-2012)	-
4차 (2013-2017)	-

정책 과제

2차 (2003-2007)	1. 정책에 양성 평등 관점 통합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동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5. 사회문화 분야 참여 확대 6. 평화, 통일, 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 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3차* (2008-2012)	1. 여성인력 활용 2. 여성권익 보호 3.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4차 (2013-2017)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중과제

2차 (2003-2007)	6.1 통일대비 여성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 6.2 평화 환경 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활성화
3차* (2008-2012)	3-3. 평등문화확산
4차 (2013-2017)	5-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 도적 참여

소과제

2차 (2003-2007)	6-1-1. 남북한 여성교류 협력지원 6-1-2. 남북교류 협력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추진 6-2-1.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6-2-2.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NGO활동 및 국제협력 지원
---------------------------------	--

2차 (2003-2007)	6-3-1. 여성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이행을 통한 여성정책 선진화 추진
	6-3-2. UN 및 국제기구에 전문여성인력 진출지원
	6-3-3.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여국으로서의 위상강화
	6-3-4. 국내외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
3차* (2008-2012)	3-3-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3-3-4. 여성국제협력확대
4차 (2013-2017)	5-2-1.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5-2-2.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5-2-3.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공조 및 사회적인식 확산
	5-3-1.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5-3-2.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5-3-3.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 강화

*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수정판을 정리한 것이다.

** - 은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 있다.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정책과제, 담당부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에 평화, 통일, 외교 분야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분야에서 정부의 사업 수행이 별로 없었다.

성주류화는 여성이 사회 모든 주류 영역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행태로 사회 시스템 운영전반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정치 경제 사회적 정책을 통합적 차원에서 기획, 실행, 감시 및 평가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즉 성 주류화 과정은 여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평화, 통일, 국방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평화통일관련 분야에 여성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성인지 예산에서 통일, 외교, 국방 분야의 비중은 지극히 낮다. 2013년 성인지 예산은 275개 대상사업으로 12조 9,136억원 규모이다. 외교부 성인지 예산은 총12개 사업, 1,730억원 규모에 대해 작성되었다. 그 비중은 사업에서는 4.3%, 금액에서는 1.3%에 불과하다. 2013년 통일부 성인지 예산은 총 3개 사업, 218억4500만원 규모이다. 그 비중은 사업에서 1.1%, 금액에서 0.17%이다. 국방부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 417억6700만원 규모이다. 그 비중은 사업에서 1.8%, 금액에서 0.3%이다.
- 2012년 예산과 2013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의 규모와 비중에서 큰 변화가 없고 외교, 통일, 국방부에서 성인지 예산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8〉 성인지 예산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비중

기관	2012				2013			
	대상 사업	비중	금액	비중	대상 사업	금액	비중	
전 부처 합계	254	100	11,271,987	100	275	100	12,913,670	100
외교통상부	10	3.9	135,408	1.2	12	4.3	173,099	1.3
통일부	2	0.8	17,599	0.16	3	1.1	21,845	0.17
국방부	3	1.2	11,907	0.1	5	1.8	41,767	0.3

* 외교통상부는 2013년 외교부로 변경되었다. (단위: 개, 백만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2.10)」, 11쪽 수정.

○ 외교부, 통일부의 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특히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은 너무 작다.

2012년도 외교부 예산 총 지출액은 2조81억 1,600만원이다. 성인지 예산 지출액은 총10개 사업, 1,39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다. 외교부 총지출중 성인지 예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수준이다. 외교부의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해외봉사단 사업과 다국가연수 사업이다.

2012년도 통일부 예산 총지출액은 2,876억 3,500만원이다. 성인지 예산 지출액은 총 2개 사업, 266억 7,200만원이다. 통일부 총지출중 성인지 예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3%수준이다. 통일부의 성인지 예산 및 기금 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사업으로 통일부 성인지 사업의 집행액의 86.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9〉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총지출액 중 성인지 예산의 비율

	지출액	성인지예산 지출액	비율
외교부	2,008,116	139,176	6.9
통일부	287,635	26,672	9.3
국방부	24,092,989	10,819	0.0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석』, 2013, 138쪽, 145쪽, 154쪽.
(단위: 백만원, %, 2012년)

2012년도 국방부 예산 총지출액은 24조 930억원이다. 성인지 예산 지출액은 총 3개 사업, 108억 1,900만원이다. 국방부 총지출중 성인지 예산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5%이다. 국방부의 성인지 예

산 및 기금 사업 중 집행액 기준으로 비중이 높은 사업은 기타정책 사업 중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사업과 교육훈련장 획득관리 중 유격장 여군편의시설이다.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집행액은 국방부 성인지 사업의 집행액의 67.8%를 차지하며, 유격장 여군편의시설 설치사업은 26.7%를 차지하고 있다.

- ② 성인지 예산은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교, 통일, 국방 분야에서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미흡하여 성과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대상사업 및 규모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총괄기능 강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능 신설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있어 각 부처의 전문성 확보 등 부처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¹⁴⁾

4) 구호와 회복

(1)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하여

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해외개발원조(ODA)의 사용에서 젠더이슈를 다루는 여성조직과 시민사회조직에 재정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14)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8월7일 보도자료 참조.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여성부는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 여성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부의 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 통일관련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남북교류 협력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하였다. 통일부는 남북여성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하였다.

〈표 4-10〉 통일부와 여성부가 지원한 남북여성공동행사(2002-2013.10)

연도	사업
2002년	- 일본의 과거사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토론회 (2002년 5월 1일~4일, 평양) - 남북여성통일대회 (10월, 금강산)
2004년	- 제2회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2004년 5월 20일~23일, 서울)
2005년	- 8.15 남북해외여성연대 모임 지원(8.16 서울) - 남북여성통일행사 지원 (9.10-16, 평양)
2006년	- 남북여성대표자회의 지원(3.10-11, 금강산) - 이대 통일학연구원 국제회의
2007년	- 제8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5월 19일~21일, 서울) - 남북여성대표자모임 (5월 23일-26일, 평양)

- 2008년 이명박 정부 취임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정(2008년 12월)되면서 정부차원에서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8년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여성부는 여성 남북통일 기반조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수정된 후인 2009년도에는 여성 통일 관련하여 지원한 사업이 없다. 통일부 역시 2008년-2009년 여성관련 지원 사업이 없다. 특히 2008년 5월 14

일~5월 16일 금강산에서 남북여성대표자회의가 열렸으나 통일부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 여성이 합의하여 2009년 4월 『남북여성대표자모임』, 2010 4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여성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의 불허로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또한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가 일본을 통해 북한과 소통하던 팩스 사용을 정부가 불허했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분부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로 보내던 팩스를 보낼 수 없게 되었다.

- 이명박 정부는 남북여성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를 불허하고 정부와 여성NGO들과의 파트너십이 파괴되었다. 남북여성교류는 민간차원의 화해협력과정으로 한반도 분쟁예방과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남북 여성이 만나고, 특히 2005년 이후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분부와 북측위원회의 여성분과위원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여성교류가 중단되었다. 2009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여성대표자회의와 2010년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여성들의 모임 등 남북여성 교류를 불허하였다.

- 박근혜 정부는 남북민간교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 토론회를 승인하였다. 2013년 8월 중국 선양에서 실무회담이 성사되고 11월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2013년 11월 1일 현재 행사 주최측은 토론회를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정부에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가 허용

하지 않아 장소를 베이징으로 옮겨서 추진하고 있다.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주민의 왕래, 남북 민간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협력, 이산가족교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남북 사이에 화해, 협력, 경제공동체로 가기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급격히 떨어졌다. 2012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6.9%이며, 총 사업비 1조60억300만원 가운데 693억7천600만원이 집행됐다.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7.6%, 2010년 7.7%, 2011년 4.2%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¹⁵⁾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대북인도지원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 갖는 특성상 조건 없이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유아사업 일부를 제외하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조차 막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선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2) 공적개발원조

- 한국은 신흥원조 공여국으로서 2011년 13억 2500만 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로 지출하였다.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인 ODA/GNI 비율은 0.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3개 회원국 중 22위다. 현재 UN 권고는 0.7%,

15)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한자릿수”, 2013년 1월 6일자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0.33%이다. 한국은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무상원조는 외국 부가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면서 원조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원조 사업간 연계성이 약화되어 효과성도 낮아지고 있다. 원조 규모의 확대와 함께 원조의 취지와 목표를 살릴 수 있도록 비구속성 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ODA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조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ODA 정책 수립 및 집행체계, 성과와 평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¹⁶⁾

〈표 4-11〉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구분	'06	'07	'08	'09	'10	'11
공적개발 원조(A+B)	455	696	802	816	1,174	1,325
양자간원조 (A=a+b)	376	490	539	581	901	988
-무상원조(a)	259	358	369	367	574	573
-유상원조(b)	117	132	170	214	327	415
다자간원조 (B)	79	206	263	235	273	337
ODA/GNI(%)	0.05	0.07	0.09	0.10	0.12	0.12

(단위: 백만 불)

자료 : OECD DAC

김명진, “한국 ODA와 KOICA 현황”, 《KoFID 젠더분과 제5차 워크숍 자료집》, 2013.9.27 재인용.

○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어 젠더이슈 지원과 관련하여, 2010년 제

16) 이승환 정경란 외,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 2012.9. 민주정책연구원.

정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개발협력이 추구해야할 주요 원칙중 하나로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명문화하였다. 정부는 동 법에 기반을 두어 젠더 관점을 개발협력 과정에 반영코자 두 가지 정책방향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는 여성과 소녀를 고려한 ODA를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연수 프로그램에서 여성 참가자의 비율을 30%로 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사업기획, 예산, 이행, 평가 등 ODA의 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KOICA는 2009년 성주류화 전략의 개발, KOICA 프로젝트에 대한 성별분류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당할 7명의 성인지담당관을 임명하였으며, 사업 발굴, 선정, 기획, 집행, 모니터링 등 사업의 실행 측면에도 젠더 관점을 반영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¹⁷⁾

2010년 KOICA는 KOICA 사업의 성 주류화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KOICA 성평등 중기전략(2011-2015)을 수립하였으며 교육,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한 인지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선과제로 정책결정자, 사업집행자, 현장과전인력 등 관계기관 및 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사업 적용에 있어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이상적인 목표 보다는 단계별 추진을 통한 격차를 해소해야하며,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고 ODA와 젠더를 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¹⁸⁾

17) 한국정부의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한 한 질의서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 2010.11.4.

18) 김명진, "한국 ODA와 KOICA 현황", 《KoFID 젠더분과 제5차 워크숍 자료집》, 2013. 9. 27.

5) 소결

유엔 안보리 1325호 이행현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통일·외교·안보 영역에서 정책결정과 운영에서 여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일·외교·안보문제를 물성적 (gender-blind)으로 보는 한국 사회의 풍토와 이 영역에서 여성을 의제화하지 않음(non-agenda)으로써 여성 지위는 지극히 낮은 것이다.

이 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가 여성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다. 2011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60.7%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반면, 여성은 46.4%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식 격차는 13-14%로 수년간 이러한 패턴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¹⁹⁾

여성의 배제는 잘못된 정책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의 경우 감시나 압력행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생략된 경우 현실에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채택은 성평등을 향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성인지적 관점 채택은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 여성 인권의 보호, 여성폭력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여성의 참여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며 남녀 사이에 실제적인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 실제적인 평등의 성취는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등한 결과를 성취하는게 가능한 환경을 조

19)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8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2012.11.6.

성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²⁰⁾

2. 국회의 1325호 활동

국회는 정부가 여성인권부문은 물론 국방, 통일, 외교 등 제 분야에서 성 인지 관점이 통합된 평화·통일·개발 정책을 추진하도록 관련 입법을 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위원회가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1325호를 채택한 후 국회에서 수년 동안 이와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 2007년 이후 국회의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지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200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부 간에 추진하고 있는 6자회담과 병행해서 여성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을 방문했다. 이경숙 의원은 중국방문단, 이미경 의원은 일본방문단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북한이 불참함에 따라 여성6자회담을 동북아여성평화회의로 바꾸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회의원은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최를 축하하며 환영만찬을 후원하였다. (이미경 의원, 최영희 의원) 2008년에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와 병행해서 한일여성국회의원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 이미경 의원, 최영희 의원, 김상희 의원, 이정희 의원이 참가했다. 2010

20) 실제적 평등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 UN Women, *Do our Laws Promote Gender Equality? Handbook for CEDAW Legal Reviews*, 2012, 3rd Edition.

년과 2012년에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참가자들이 국회를 방문하여 의회와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미경 의원, 원혜영 의원,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2011년부터 국회의원들은 1325호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국제회의를 직접 후원하거나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11년 2월 24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기간 중 미국 뉴욕시에 있는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 피스보트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PISA와 공동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최영희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 워크숍을 후원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네덜란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사례, 미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추진 경과, 1325호 이행을 위한 국제여성단체와 한국 여성단체의 제안을 논의하는 등 1325호 이행을 위한 정부, 의회,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를 모색하였다.

2011년 6월 24일 최영희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32명²¹⁾이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2011년 7월 8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신낙균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의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특히 2012년 2월 17일 국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문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교부 주도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1) 32명 의원은 최영희, 강기정, 박정숙, 김금래, 김동철, 김상희, 김유정, 김재윤, 문화상, 박우순, 박은수, 박주선,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송민순, 신낙균, 양승조, 원혜영, 이낙연, 이미경, 이성남, 이재주, 이찬열, 이춘석, 전현희, 전해숙, 정범구, 조정식, 주승용, 추미애, 최재성 의원이다.

19대 국회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대정부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외교부,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여성단체의 연대도 추진되고 있다. 2013년 4월 10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진성준 의원, 이자스민 의원과 1325호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5장.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제안

1.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한국적 상황¹⁾

유엔에서 각국 정부에게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가 있었다. 유엔 안보리는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고 평화, 통일, 국제협력 과정에서 여성들의 참여, 여성 인권의 보호, 여성폭력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엔의 요청과 함께 한국의 분단 상황, 역사적 경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1325호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은 평화협정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정전국가이며 분단국가이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성취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분단되고 군사화된 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는 한국 남성에 비해 지극히 낮다. 남과 북은 지난 60년 동안 불신과 대결 속에서 살아왔다. 한반도의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의견서, 2012.11.27 수정보완.

분단체제에서는 남북한 인간적·사회적 증오와 적대감이 지속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생활 곳곳에서 군사주의와 전쟁의 위협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현실 속에서 남녀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다. 남북은 화해와 협력을 통해 적대감을 줄이고 긴장을 완화시켜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전상태에서 적대적 대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군사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없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도 조속히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평등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전시 성폭력 피해국으로서 분쟁으로 인한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민지, 전쟁, 분단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 탈북여성의 탈북과정에서의 성매매,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성범죄, 성매매, 가정폭력 등 수많은 여성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분쟁에 따른 성범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 규범과 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과 군사화되고 분단된 상황에서 파생되고 있는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여성인권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불관용정책을 취해야 한다.

셋째, 유엔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한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유엔여성기구는 "평화와 안보"를 6가지 초점영역(focus

areas)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채택했다. 한국은 유엔 여성기구의 집행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원경비 상위 10위국이다. 또한 1325호 친구그룹(Friends of 1325)의 회원국이며 유엔 평화유지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외파병을 한 국가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에서 1325호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지역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소속 해외원조 공여국으로서 해외개발협력에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는 성평등과 젠더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유엔 여성기구는 재건과정에서 개발협력기금의 15%는 여성 관련 분야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수원국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여성역량 강화와 성평등을 추구하는 개발협력사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과정에서 남북화해협력기금의 15%를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앞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여성기구가 권고한 절차와 내용을 포함한다면,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은 한국, 파병지역, 공적개발원조 수원국 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에서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낮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현황을 살펴 볼 때,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 참여는 지극히 낮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국가안보 전략을 비롯한 국방, 외교, 통일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남북 연합, 평화협정 합의, 분쟁 해결·관리·예방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화통일외교영역에서 성인지 예산의 증대를 가져오며, 남북협력기금 사용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여성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정에 참여하면 분쟁 이후 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와 사회문화적 개혁을 위한 한도를 정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성이 이 한도를 정하는데 기여하고 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때, 남성들만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에 비해 평화협정의 범위가 확대되고, 평화협정의 주인의식이 커지며, 평화협정의 이행이 더욱 순조로울 것이다.²⁾

둘째, 국방·외교·통일 분야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여성들은 분단현실과 정전체제하에서 분쟁 해결, 관리, 예방의 주체로서 평화과정에 참여하고, 분쟁으로 인한 성폭력을 예방하며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자로서 활동해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남북여성교류, 기지촌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활동, 갈등해결 교육,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서 공식적인 정책결정 및 협상과정에서 여성의 리더십은 잘 보이지 않는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은 이 분야에서 한국여성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고

2) 평화협상에서 여성참여, 평화협정과 젠더, 평화협정과 성폭력에 대해서는 정경란, "아시아에서 평화만들기: 관점과 행동", 아시아저널, 2013 여름호 참조할 것.

여성들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유엔 평화유지활동 지원국, 평화유지군 파병국과 공적개발원조 지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분쟁 예방과 평화유지, 평화구축, 재건 과정에 여성의 참여와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력분쟁, 평화유지, 평화구축, 재건 과정에서 남녀의 경험은 다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평화유지자, 정치가, 평화활동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평화유지군의 역할, 평화유지활동 비용의 사용 내용,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사용규정에 따라 분쟁지역 여성의 권한강화와 리더십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과 이행은 평화, 통일, 외교 영역에서 점차적으로 남녀 사이에 실제적인 평등(substantive equality)으로 가는 길을 도울 것이다.

2.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원칙과 권고사항³⁾

한국정부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안이 있다. 유럽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럽연합에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원칙과 권고사항을 제안⁴⁾하였다.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여러 국가가 1325

3)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1325호 네트워크 주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발표문, 2013.4.10. 62-69쪽 수정 보완.

4) 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Initiative for Peacebuilding, International Alert, Civil Society Recommend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CR 1325 in Europe, 2009.

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고 이행한 경험을 평가한 후 국가행동계획 모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⁵⁾ 유엔 여성기구는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발표하였다.⁶⁾

유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경험과 제안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실효적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원칙과 권고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행동계획의 핵심 원칙

-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구성요소 : 한국 특색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 목적, 전략적으로 우선해야 할 행동, 기간, 확실한 예산, 지표, 평가 기준(benchmark)과 실행대상(target), 특정한 개인·단위·기능에 대한 분명한 책임선,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에 할당된 재정 체계를 포함한 결과 지향적이고 투명한 보고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 1325호와 후속결의문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들과 전략들은 여성차별철폐조약을 준수해야하며 계획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이 할당되어야 한다.⁷⁾
- 국가행동계획은 여성, 평화와 안보 이슈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5) OSAGI, DESA, ECA,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2000) in Africa: Needs Assessment and Plan for Action*.

6)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INSTRAW), *Securing Equality, Engendering Peace: A guide to policy and planning on women, peace and security*(UN SCR 1325), 2006;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참조.

7) CEDAW Committee,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2013,10,18.

한다. 분쟁 상황, 평화정착, 평화유지, 평화형성, 개발협력, 통일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한다. 여성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행위자이며 평화형성자와 정책결정자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은 분쟁예방, 민간위기관리, 인간안보, 민주주의와 인권에 초점을 맞춰 통합해야 한다.

-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모니터·검토과정에서 자국 뿐만 아니라 분쟁등에 영향을 받는 국가의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은 국가행동계획 만큼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성립된 파트너십, 조정, 협의 메커니즘이 가능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메커니즘이 국가행동계획 이행국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국가행동계획은 통일, 국방, 외교 정책을 포함한 국가전략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며 여성·평화·안보의제를 내재화해 강화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권고사항

(1) 리더십

- 동북아시아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국가가 없다. 정부가 모범적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 이 지역에서 여성·평화·안보 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갖는다.
- 정부가 1325호와 1820호 활동의 좋은 사례를 선정해 여성,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홍보하고 1325호와 1820호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조정

-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해 평화통일외교국방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부처별 1325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에 각각 1325호 담당 포컬 포인트를 지명한다. 담당포컬포인트는 부처 내부의 국가행동계획을 조정하고 이행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담당 포컬포인트로 구성된 1325호 이행을 위한 공동 작업반을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는 국가안전보장이사회도 참가한다. 이 공동작업반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 공동 작업반을 조정하는 주무부처가 필요하다. 어떤 부처가 과정을 주도하든 책임주체가 정부의 충분한 지원, 인력과 재정적 자원, 모든 적절한 행위자들이 지지하고 이행하는 전략적 문서를 만드는 데 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하는 게 중요하다. 공동 작업반을 조정하는 역할은 외교부가 한다.

(3) 책임성

-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이행보고서에 1325호 이행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3년 10월 1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분쟁예방, 분쟁, 분쟁이후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일반권고문 30호'⁸⁾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보리 결의문의 이행을 여성

8) CEDAW Committee,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2013,10,18,

차별철폐조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행이라는 큰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접근법을 강조하고 회원국가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문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조약 회원국인 한국정부는 1325호 이행을 정례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⁹⁾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정부가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1325호, 1820호, 1880호, 1889호, 1960호, 2106호)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을 포함하여야 한다.¹⁰⁾
- 국가 차원에서 대의적인 모니터링 단체와 확실한 보고 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보고, 모니터링, 평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전국적인 여성평화안보 작업반(National Taskforce on Women, Peace and Security)'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작업반은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1325호와 1820호의 이행에서 성과와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유엔의 권고를 따르며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4) 모니터링

- 효과 지향적인(impact-oriented) 모니터링과 평가를 보장하여야 한

9) 여성차별철폐조약 당사국은 여성차별철폐조약, 여성차별조약의 주요원칙(실제적 평등, 차별금지, 국가 의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권고문을 지켜야한다.

10) 네팔의 경우 국가행동계획에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다.¹¹⁾ 활동과 결과에 연계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성취가능하며 적절하고 시기에 맞는 목적, 시간표, 예산, 지표 그리고 공식적인 연례 보고와 검토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모든 계획의 책임 주체를 정해야 한다.

- 정보의 제공자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한국군이 파병한 지역이나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의 시민사회단체를 모니터링 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국가행동계획에 규정해야 하며 책임지는 정부 단위와 부처를 규정함으로써 제도화하여야 한다.
- 1325호와 1820호 이행을 위한 재정을 높이고 재정 분배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 재원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한다.

(5) 파트너십과 협의

- 국가행동계획의 개발, 이행, 모니터링 기간에 모든 차원에서 관련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파병 지역이나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시민사회 행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행동계획에 대해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협의는 행동계획의 적절성을 보장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협의가 실제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와 젠더사회경제적 분석을 공유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11) 이 책 1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의 구성과 이행 현황에서 제시된 1325호 이행 추적 지표를 토대로 효과 지향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가행동계획을 개발, 이행하고 모니터하기 위하여 분쟁에 영향을 받는 국가와 함께 파트너십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군이 파병한 지역,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고 협의하는 파트너십 형성을 고려한다. 이런 파트너십은 참여 당사자가 잠재적인 동료 검토 메커니즘 뿐 만 아니라 공동의 학습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1325호 국가행동계획 개발을 위한 공동작업반을 구성한다.

- 정부, 시민사회, 의회를 포함하는 국가행동계획 개발 1325호 공동작업반을 구성한다.
- 작업반의 역할은 첫째, 1325호 국가행동계획 작성 및 국가행동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각 활동에 대한 예산을 개발한다. 셋째, 적절한 규모: 기능할 수 있는 규모로 조직되어야 한다.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못 미치면 안 된다.
- 정부 부처는 1325호 공동 작업반에 이행 경과를 보고한다.

▷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후 1325호 국가행동계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¹²⁾

- 정부 관련 부처와 평화·안보·통일·개발협력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한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고위급 '민관협의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역할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정책 개

12) 1325호네트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초안)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 2013.10.16.

발, 국제적 교류와 국내적 협력 촉진, 정례적인 모니터와 이행을 감시하고, 국가행동계획 이행 관련 기관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 운영위원회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서 법적인 지위와 예산을 가져야 한다.

(6) 국방, 외교, 통일 전략과 정책의 젠더화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방·통일·외교 전략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 참여 증가와 여성 인권 보호 내용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검토한다.

(7) 1325호 홍보 및 인식 제고

- 한국 사회에서 1325호를 아는 정책결정자, 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많지 않다. 향후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과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결정자, 의회, 시민사회, 일반인에게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중요하다. 이 활동을 통해 정책결정자와 시민사회는 1325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1325호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 정부는 1325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1325호와 후속 결의 1820호, 1888호, 1889호, 1960호, 2106호, 2122호 채택에 동의하였다. 정부는 동의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정부는 평화·안보·통일 영역에 대한 젠더 분석과 성주류화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1325호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교육부 등은 1325호의 내용

을 파악하고 각 부처에 맞게 홍보하고 교육한다.

- 정부는 1325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325호 관련 시민단체의 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 세계여성의 날, 인권의 날, 여성주간 등 관련 기념일을 활용한다.
- 여성인권 보호, 참여, 평화유지, 분쟁 후 재건에 대한 의식 제고를 목표로 활동한다.

(8) 1325호 훈련과 능력 배양

- 정부관계자, 지방 단위 및 전국 단위의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 1325호 공동 작업반, 평화·안보·외교 전문가 등 다양한 부문에서 1325호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 평화·안보·통일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 등 전문성을 제고한다.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전문성이 요청된다.
- 지방과 전국 수준에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능력을 배양한다. 갈등 예방·해결, 평화형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에 대한 훈련, 젠더분석, 성주류화 등에 대한 훈련, 중재·협상·로비와 1325호 옹호에 대한 기술을 훈련한다.
- 단기·중기·장기 기술 및 능력 배양을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틀을 기획해야 한다.
-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은 훈련과 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3) 국회에 대한 권고 사항

(1) 국방, 외교, 통일 분야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 확대

첫째, 국방·통일·외교 관련 법률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의 권리 및 성평등 조항을 포함하는 입법활동을 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여성의 권리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발전법 등은 이러한 항목이 없다. 따라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향후 법률을 제정할 경우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한다. 국회로 보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위원회가 된다.

둘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정부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인권부문은 물론 외교, 통일, 국방 등 제 분야에서 성인지 관점이 통합된 평화·안보·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은 이 분야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인식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혹은 수립 이후 이행에 대한 정책 점검은 국회에 본격적인 새 의정활동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¹³⁾

셋째, 국가행동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국가계획 수립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기본계획,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 국가행동계획의 목적, 사업, 추진체계, 예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1325호 의원네트워크 구성

13) 차인순, “한국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의 의미”,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2012.4.2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 1325호에 관심이 있는 의원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1325호를 지지하는 한국 의원과 외국 의원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한다.

(3) 1325호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정책 포럼 구성

의원, 공무원과 시민사회가 함께 여성·평화·안보 주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조직한다. 영국의 '여성,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준 의회 그룹'이 좋은 사례이다. 의원들이 포럼을 통해 정치적 스펙트럼, 공무원, 시민사회를 뛰어 넘어 전문적인 정보와 견해를 토대로 젠더와 안보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대중과 소통, 입법 활동, 전문성의 결합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6장.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여성 참여

1.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여성참여를 위한 접근법¹⁾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정책결정과 운영에서 한국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과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참여를 통한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 영역에서 여성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무엇인가?²⁾ 규범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개입은 근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고 그 자체가 목표이다. 도구적 관점에서 여성은 특별한 경험과 가치 있는 관점을 가진 인구의 절반으로서, 여성의 참여는 어떤 과정이 성공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는 첫째, 개혁의 한도를 결정한다. 여성의 평

1) 정경란, “평화통일외교영역에서 여성 참여-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실천방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5-7쪽 2012.

2) Initiative on Quiet diplomacy, SCR 1325 and Women's Participation: Operational Guidelines for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Processes, 2010;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e Ayo, *Por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How Women Worldwide are Making and Building Peace*,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ugust 2010) 참조.

화과정 참여는 분쟁 이후 사회에서 정치, 경제, 안보와 사회문화적 개혁을 위한 한도(parameters)를 정하는데 중요하다. 여성이 이 한도를 정하는데 기여하고 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때 남성들만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에 비해 평화협정의 범위, 평화협정의 주인의식 그리고 평화협정의 이행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둘째, 포괄성(inclusiveness)과 주인의식(ownership)을 확대한다. 더 많은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더 큰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킨다. 포괄적인 과정은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속되도록 한다.

셋째, 권한이 강화된 대표성(empowered representation)을 나타낸다. 여성의 수적인 대표성은 중요하다. 조직체 구성원의 1/4 또는 1/3이 여성이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 참여의 의미가 있다. 숫자가 너무 적을 경우 적극적인 조치로서 할당제도 필요하다. 여성은 단일한 그룹이 아니다. 어떤 여성이 참여하는가와 그 여성들이 지원하는 이해가 무엇인지를 물어야만 한다. 참여는 엘리트 여성 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을 위한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통합되는 것이 효과적인 참여이다. 그러나 여성 참여는 단지 여성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참여 증가는 단지 대표성만이 아니라 의미 있고 실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참가만으로는 여성의 영향력이나 실제적인 역할을 보장할 수 없다. 여성의 참가는 과정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반해야 하며 이 과정과 결정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수적인 증가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참여로써 고려할 수 있다. 얼마나 실제적으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성들이 권력구조와 부의 분배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 사회개발우선성을 결정할 수 있는

가, 그리고 그러한 참여가 어떤 차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넷째, 실제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위해 필요하다. 실제적 평등은 사실상 평등(de facto or actual equality, equality in fact) 또는 결과의 평등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평등의 성취는 여성들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등한 결과를 성취하는 게 가능한 환경을 포함한다. 실제적 평등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⁴⁾

다섯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가 결과를 결정한다. 평화과정에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 분쟁 이후 여성의 지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여성은 평화과정의 참여를 통해 분쟁의 희생자를 넘어 변화의 주체로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각기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처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참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성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협치(good governance)를 위해 참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배구조가 남녀에게 비슷한 조건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식과정에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야만 한다.

평화와 안보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위한 일반원칙이 있다.

첫째, 여성의 개입이 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고 대화, 중재, 협상, 정책 결정, 입법 추진, 프로그램의 이행과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지속되어야만 한다.

둘째, 공동체를 대표하는 여성이 공동체에서 선출되어야한다.

셋째, 정책 결정, 협의절차, 대화, 다른 개입은 그룹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해야만 한다.

3) UN Women, *Do our Laws Promote Gender Equality?* Handbook for CEDAW Legal Reviews, 2012 3rd Edition.

넷째, 긴장을 줄이고 대화나 협의를 시작하기 전 신뢰를 쌓기 위해 신뢰형성조치(confidence building)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대화, 중재, 평화 과정에서 효과적인 참여는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다른 정당, 정파, 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확신을 줄 수 있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여성에게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2. 1325호 국가행동계획과 여성 참여의 의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여러 수단중 하나이다. 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여성들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유엔이 제시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방법을 적용한다면, 바람직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⁴⁾

첫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평화·통일·외교분야에서 성인지적 접근법을 통합하고, 관련 분야 정책결정과정과 분쟁예방·해결·관리와 평화과정에서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성폭력과 분쟁 예방을 촉진하며, 남북 분단하의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수 있다.

4) 정경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 1325호 네트워크 주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여성' 토론회 자료집》, 2013.5.22, 27쪽, 일부 내용은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the UNSCRs 1325 and 1820, http://www.sulongnetwork.ph/new/resource/philippine-nap-women-peace-and-security_draft_as_June_8,_2010 (검색일: 2013.5.4)을 참조.

둘째, 여성들의 요구가 국가행동계획에 수용될 수 있게 하고 여성들이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하며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와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국가행동계획이 한반도 분쟁예방, 분쟁 해결,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평화와 통일과정을 젠더화하는 여성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평화협정과 안보개혁 의제에서 성인 지적 관점을 주류화함으로써 평화문화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사람들의 평화에 대한 비전(people's vision of peace)을 갖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행동계획이 남북 갈등 상황 속에서 여성과 소녀의 안보를 보증하고 남북 분쟁 예방,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노력에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를 돕는데 정부가 헌신하고 책임성을 갖게 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행동계획이 과병지역,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곱째, 여성들이 평화구축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향유하고 분쟁과 분쟁이후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인 정당하고 젠더감수성이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행동계획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덟째, 국가행동계획이 평화·외교·통일 분야에 실질적인 성평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아홉째, 국가행동계획이 희생자인 여성의 상황을 각각의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화의 주체이며 구축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단체 활동의 역사

1) 1325호 홍보와 로비활동

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하기 전부터 여성단체들은 정부에게 1325호 이행을 촉구하였다.

2007년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정부의 6자회담과 병행해서 여성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였다. 여성6자회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정신을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공동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여성6자회담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여성단체 지도자, 학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한반도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을 방문하였다.⁵⁾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는 2008년 북한이 불참함에 따라 여성6자회담을 동북아여성평화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2012년까지 서울, 미국 워싱턴DC 등에서 4차례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주관하였다.⁶⁾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는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공동방안을 모색하고, 6자회담 당사국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정부 및 국회의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촉구하고, 여성 글로벌 리더십 향상을 추진하였다.⁷⁾

5)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1325호 관련 활동은 부록을 참조할 것.

6)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2012년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공동주관단체로 참가하였다.

7) 국회의원과의 협력은 이책 4장 3절 국회의 1325호 활동을 참조할 것.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325호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기고하고, 국제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현황과 한국여성단체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분쟁과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일반 권고문을 위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2012년 3월27일-28일, 방콕),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E러닝 훈련과정에 대한 동료워크숍'(2013년 1월 22일-23일, 방콕)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동북아시아 지역 운영위원회(2013년 8월5일, 타이베이) 등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현황과 한국여성단체의 활동을 소개하고 동북아시아 상황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여성평화외교포럼은 2012년 창립선언서에서 1325호 이행을 촉진하는데 적극 활동하며, 정부가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1325호 홍보활동과 유엔의 무기거래조약(Arms Control Treaty) 체결 촉구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YWCA연합회는 서울에서 열린 2012 YWCA 국제훈련기관(International Training Institute)에서 여성폭력 추방을 위한 2012 세계 YWCA 국제지도력 훈련을 개최하였다. 이 훈련에서 여성폭력 추방과 관련한 경험과 향후 활동 방안을 공유하고, 여성차별철폐보고서와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전환과 대통령 후보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였다. 2011년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을 조사하고, 2012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 및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에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에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중과제로 전환하고,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민관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2012년 18대

대선을 맞이하여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를 발표해 대통령후보들에게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1325호 이행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여성참여추진자문단⁸⁾을 구성해 운영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미래캠프 정책자료집 [미래를 여는 문]에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2000년 채택)에 따라 여성의 적극 참여와 역할 제고'를 포함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반면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325호 이행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

2) 네트워크 형성

여성들은 평화, 안보, 통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통치에 개입하고자 했다. 정부의 정책결정과 논의과정이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여성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단체들은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여성의 권한강화와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와 수평적 연대 뿐 만이 아니라 국내와 국경을 넘는 네트워크를 추진해왔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리암 코로넬 페러⁸⁾는 네트워크 형성이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성취하는데 핵심이었다고 증언했다.

8) 필리핀에서 1325호 이행을 주창하며 활동하기로 결정한 최초의 3인 여성 중 1인으로 인권단체인 Sulong CARHRIHL의 창립이사이며 현재 필리핀 정부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과의 평화협상대표이다.

“국가행동계획이 당신의 손안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활동가, 섬 사이에 개인적인 접촉을 넘어서, 평화,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회운동을 가로질러서, 정부와 시민사회조직 사이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앉아서 쓰고 확인하고 종합하고 로비를 통해 국가행동계획을 만들었다.”⁹⁾

따라서 한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여성들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2012년 1월 16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여성평화외교포럼,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6개 단체를 중심으로 1325호 네트워킹을 조직하였다. 이 네트워킹은 여성 단체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여성과 시민을 위한 1325호 교육을 하며,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고, 여론 조성 작업을 하며, 정부·의회·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모색 하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2013년 8월 20일 기준으로 참가단체는 45개 단체이다.¹⁰⁾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1325호 네트워킹’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325호 네트워킹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9)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Act for Peace,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xiii.

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울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 하는사람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연화, 한국여성장애훈련,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45개 단체이다.

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여성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며, 정부·의회·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네트워크이다.¹¹⁾

1325호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회의를 열고 전략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안 내용 검토, 민관협력 추진,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면담, 국회의원 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여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개토론회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필리핀 대사를 초청하여 필리핀의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

3)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한국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면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여성·평화·안보분야에서 정부와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나 복잡한 갈등 상황 속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책결정과 정책이행과정에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은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서 '거버넌스' 또는 '협치'라고도 한다.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단체와 조직이 그들의 이익을 규정하고 법률권리를 행사하며 그들의 의무를 만나고 차이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과정, 제도를 포함한다.

11) 1325호 네트워크의 활동은 부록을 참조할 것.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다. 유엔 개발계획은 좋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¹²⁾

- ① 참여 : 모든 남녀가 직접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표하며 정통성을 가진 중간단체들을 통해 정책결정에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 ② 법의 지배: 법적 준거들이 공정하고 특히 인권에 대해서는 편파적이지 않게 집행되어야 한다.
- ③ 투명성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초하는 것으로 과정, 제도 및 정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또 이것들을 이행하고 모니터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④ 효용성(responsiveness) : 모든 제도와 과정들이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⑤ 합의 지향 : 다양한 갈등속에 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해서 집단적 이해에 최상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곳에서 정책과 절차들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 ⑥ 형평성 : 모든 남녀가 자신의 안녕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⑦ 효과성과 효율성 : 모든 제도와 과정에서 자원을 최상으로 이용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생산하여야 한다.
- ⑧ 책임성 : 정부, 민간부문, 시민단체들의 정책결정층은 제도적 이해당사자들뿐 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책임을 져야한다.
- ⑨ 전략적 비전 : 리더들과 대중들은 좋은 거버넌스와 인간개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인간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

12) <http://mirror.undp.org/magnet/policy/chapter1.htm#b>(검색일 2010.12.11)

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이 기초하는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식은 4가지가 있다. 정보와 분석을 공유하는 소통(communication), 함께 계획을 세우는 조율(coordination), 자원을 공유하지만 각자가 행동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력(cooperation), 공동작업과 행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협동(collaboration)이 있다. 민관협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민사회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정부에 포섭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¹³⁾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외교·통일 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위한 기본 원칙은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동등하고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더 많은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고 더 큰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포괄적인 과정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속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배구조(governing institution)가 남녀에게 비슷한 조건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공식과정에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야만 한다.

1325호 국가행동계획 개발과 이행과정에서 역시 바람직한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동안 여성들은 평화, 안보,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혜, 전문성,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분단현실과 정전체제하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향한 여성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분쟁지역과 취약국가에 대한 구조 및 복구사업에서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를 지원하며, 자원에 평등한

13) Susan Allen Nan & Andrea Strimling, "Track I -Track II Cooperation", *Beyond Intractability*, Colorado, January 2004.

접근을 추진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한국여성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야 한다.¹⁴⁾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능력과 리더십을 수용한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1325호 네트워크>는 2013년 3월 28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준비과정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¹⁵⁾

외교부는 2013년 4월 10일 국회토론회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1325호 실무그룹(Working group)' 구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325호네트워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¹⁶⁾이라는 민관협의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기획단은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재검토하는 실무수준의 민관협의체가 아니라 국가행동계획 준비과정에서 국가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의체로서 국가행동계획의 전체적인 정책방향,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수립까지를 협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상위의 조직으로 제안되었다.

14) 1325호 네트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1325호네트워크 의견서', 2013.9.4.

15) 1325호 네트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1325호네트워크 의견서', 2013.3.28.

16) 1325호 네트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1325호 네트워크> 제안서', 2013. 5.12.

정부는 <1325호 네트워크>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는 실무차원에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기구이다. 민관협의체 회의는 2013년 8월에 시작되었다.

「안보리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 협의체」는 총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기관에서 참여자는 총 8명으로 7개 부처(외교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과장급 실무자 등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 참여자는 총 8명으로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권인숙(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명지대교수), 강윤희(여성평화외교포럼 1325분과 위원장), 신혜수(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현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순향(국방대학 PKO센터 교수), 백영옥(명지대 교수)이다.

2013년 10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2122호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분쟁상황, 분쟁, 분쟁이후 여성에 대한 일반권고문 30호를 채택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회원국가와 여성차별철폐조약 당사국에게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안보리 의제 이행을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⁷⁾ 앞으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7)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2122호 그리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 참고하라. 특히 2013년 10월 18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122호는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시키는 모든 노력의 중심에 여성 지도력을 배치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결의는 분쟁 해결과 복구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강구하였으며 안보리, 유엔, 지역기구들, 회원국들이 책임지고 여성들에게 평화협상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를 막는 장애들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4. 1325호 이행과 여성의 활동 방안

한국 사회에서 1325호 이행과 관련하여 여성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는 활동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의미와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한다. 정부 뿐 만 아니라 여성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1325호의 의미와 국가행동계획을 소개하고 일반 여성, 시민사회, 정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 1325호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지방 단위 및 전국 단위의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평화·안보·외교 전문가들이 국가행동계획을 모니터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여성·평화·안보의제의 젠더분석,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 개발, 갈등 예방·해결과 평화형성에 대한 이론과 개념에 대한 이해, 성주류화 등에 대한 훈련, 중재·협상·로비와 1325호를 지원하는 기술을 훈련한다.
-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결의문들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하여 전략,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미 여성단체들은 평화통일, 성폭력, 개발협력, 일본군 '위안부', 탈북여성, 기지촌여성, 군축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성인지적 관점을 더욱 강화하고 평화협상, 평화유지, 분쟁예방, 보호, 참여, 평화과정, 성폭력,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재건과 평화구축, 인도주의적 지원, 군축 등의 주제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한다.¹⁸⁾ 다음과 같은 주제나

18) 이 글 3장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의 주제별 검토를 참조.

이슈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 1325호와 연관된 주제

- 국방·외교·통일 분야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및 젠더 통합
- 남북교류협력 - 정치, 군사,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에서 여성 참여
- 6자회담 및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여성 참여와 젠더 통합
- 북한 및 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 일본군'위안부'문제
- 기지촌 여성의 인권
- 탈북여성
-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해 해외 파병활동의 역할과 임무, 여성 참여
- 해외파병군인 및 인도지원 관련자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
- 해외파병과 해외파병지역에 사는 여성의 인권
- 재건 및 평화구축 지역에서 해외파병군인 및 인도지원 관련자의 활동
- 공적개발원조와 수원국 지역의 여성의 권리 증진
- 남북협력기금과 북한의 여성 개발
- 한반도평화체제 형성과 평화군축문제

- 1325호 이행에 대한 정부의 활동을 검토, 모니터링, 평가한다. 시민 사회단체는 정부의 1325호 이행 모니터링, 질의서 발송, 정부 담당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부의 1325호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한국 정부가 유엔 여성기구가 제시한 권고를 수용하고 타국의 사례에서 배워 한국적 상황에 맞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국가행동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
-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1325호 관련 법률 제정, 국방·통일·외교 관련 입법의 젠더화를 위해 의원들과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325호 지지 의원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 1325호에 관심이 있는 의원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의원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협력한다. 더 나아가 1325호를 지지하는 한국 의원과 외국 의원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 1325호 지지 여성단체 활동가, 의원, 여성학자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평화안보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1325호를 홍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대중과 소통, 입법 활동, 전문성의 결합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평화와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기록한다.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은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평화안보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등 관련 정보와 통계를 수집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찾을 수 있다.
-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는 군인들에게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훈련을 모색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1820호 등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에 대하여 평화유지군을 훈련시킨다. 미국의 평화단체는 나토군, 필리핀 인권단체¹⁹⁾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되는 군인들을 상대로 1325호 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내 여성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1325호와 젠더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해외 파병되는 군인들에게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훈련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 ACT 1325: INITIAL INITIATIVES AT NAP IMPLEMENTATION November 2010 to mid-2012, 2012, p.11.

-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한 협상,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여성의제가 포함되도록 활동한다. 향후 성인지적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적으로 1325호 채택이후 평화협상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평화·안보를 언급한 평화협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²⁰⁾
- 여성·평화·안보 이슈가 기사화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또한 언론종사자들이 평화, 안보, 통일 이슈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해본다.
- 파병지역의 여성,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여성들과 연대를 모색한다. 한국군의 활동, 성폭력문제, 공적개발원조의 사용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슈에 관한 정보 교환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필리핀, 네팔,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국가의 여성단체 및 의원과 관련 유엔 관계자들과 교류를 모색한다. 이들로부터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경험을 배워 효과적인 국가행동계획 개발에 활용하고 정부의 이행을 상호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 동아시아지역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일본에서도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단체도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촉구하며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의 국가행동계획은 한국의 국가행동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역시 일본의 국가행동계획의 내용과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325호 국가

20) 정경란, “아시아에서 평화 만들기: 여성의 참여와 관점”, 242-246쪽 참조.

행동계획 수립과정 및 수립이후 한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등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여성들과 연대하여 각국에서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도록 정보를 교류하며 공동행동을 추구한다. 그리고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행동의제를 논의하는 여성그룹들과 연대를 모색한다.

7장.

맺으며

“여성의 배제는 여성이 평화과정에 포함되어서
무엇을 얻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풍부한 경험, 창조성, 지식이 배제될 때
평화과정이 무엇을 잃는지의 문제이다.”

- 사남 앤더리니 -

2000년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이후 평화과정과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참여와 젠더이슈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으며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그리고 안보리 1325호 국가 행동계획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정책과 실천에서 점차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통일·외교·안보 영역의 정책결정과 운영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 1325호가 잘 이행된다면, 평화와 안보 관련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 분단 해소와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행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해야만 한다.

한국 정부가 수립중인 1325호 국가행동계획은 1325호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여성들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통

일·국방·외교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고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평화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여성의 풍부한 경험, 창조성, 지식이 평화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한국정부가 만들고 있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이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 화해, 협력, 신뢰형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1325호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 당국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립이 심화될 때, 정부가 '인간안보'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1325호를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엔은 2015년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15주년을 맞아 고위급 검토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행사를 앞두고 국제적으로 1325호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함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여성단체와 함께 '좋은 협치'(good governance)를 추진하고, 한국 사회가 실제적인 성평등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 위상에 맞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 저개발국 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활용해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새로운 사고, 새로운 과정,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촉진하는 평화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여성들은

1325호 이행을 포함해 평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1325호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변화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데이비드 헬드·앤터니 맥그루·데이비드 골드블라트·조너선 패리턴,
『전지구적 변환』, 조효제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2.
- 박건영 외, 『한반도평화보고서』, 한울, 2002.
- 심영희, 김엘리, 『한국여성평화운동사』, 한울, 2004.
- 조효제 편역, 『NGO의 시대』, 창작과비평사, 2000.
- 존 폴 레더라크,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동진 옮김, 후마니타스,
스, 2012.

2) 논문

- 정경란,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국제활동”, 『국제리뷰』, 한국여성개발원, 2006.9.27.
- 정경란, “UN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이행방안”, 시민평화포럼,
『다시 평화를 묻는다』, 백산서당, 2010.
- “아시아에서 평화 만들기 : 여성의 참여와 관점”, 『아시아저널』,
2013 여름 제7호

3) 기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8월7일 보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12.10)』

- 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분석』, 2013.
- 이승환, 정경란 외,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의제 2013』, 민주정책연구원, 2012.
- 김명진, "한국 ODA와 KOICA 현황", 《KoFID 젠더분과 제5차 워크숍 자료집》, 2013.9.27.
- 여성가족부, 『2012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13.8.
- 연합뉴스,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4년 연속 한자릿수", 2013년 1월 6일자.
- 정경란, "한국정부의 유엔안보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 이행 현황 조 사보고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2011년 소식지 준비호.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와 실천 방안", 신낙균 의원 실 주최, 《평화·안보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유엔 안보리 결 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1.7.8.
-, "평화·통일·외교영역에서 여성 참여 -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실 천방안", 평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 최,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이 냐 토론회 자료집》, 2012. 4. 26.
- "통일·외교·안보 영역에서 민간협력체계 구축과 여성", 시민평화 포럼 주최 《시민평화운동가 워크숍 '2013년 이후, 남북관계와 거버넌스' 토론회 자료집》, 2012.12.14.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 한 시민사회의 제언",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와 1325 호 네트워크 주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3.4.10.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8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7대 여성평화통
일 대선의제”, 2012.11.6.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평화를만드는여
성회 의견서, 2012.11.27

차인순, “한국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의 의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
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
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2012.4.26.

행정안전부, 『2009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2010.5.

1325호 네트워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1325호네트워크 의견서’, 2013.3.28.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
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1325호 네트워크> 제안서’, 2013. 5.12.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에 대한
1325호네트워크 의견서’, 2013.9.4.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
동계획(초안)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 2013.10.16.

2. 영문자료

1) 단행본

Center for Humanitarian Dialogue, *Peacemaking in Asia and the
Pacific: Women's participation, perspectives and priorities*,
March 2011.

Charlotte Lindsey, *Women facing War*, ICRC, 2010.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e Ayo, *Por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promoting. How Women Worldwide are Making and Building Peace*,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ugust 2010.

Maria Butler, *Women, Peace and Security Handbook : Compilation and Analysis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Language 2000-2012*, October 2012.

Natalie Florea Hudson, *Gender, Human Security and the United Nations : Security Language as a Political Framework for Women*, Routledge, 2010.

2) 유엔 자료

CEDAW Committee, *General recommendation No. 30 on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2013.10.18.

DPK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Background Note* (검색일 2013.4.1)

OSAGI, DESA, ECA, *National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2000) in Africa: Needs Assessment and Plan for Action*,

UN Women, "Women and Peace and Security: Guideline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 "Women's Participation in Peace Negotiations: Connections between Presence & Influence",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October, 2012

..... "Tracking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2000)", *UN Women Sourcebook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2.

..... *Do our Laws Promote Gender Equality? Handbook for CEDAW Legal Reviews*, 2012, 3rd Edition.

United INSTRAW, *Securing Equality, Engendering Peace: A guide to policy and planning on women, peace and security*(UN SCR 1325), 2006.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S/RES/1325)

유엔 안보리 결의 1820호 (S/RES/1820)

유엔 안보리 결의 1888호 (S/RES/1888)

유엔 안보리 결의 1889호 (S/RES/1889)

유엔 안보리 결의 1960호 (S/RES/1960)

유엔 안보리 결의 2106호 (S/RES/2106)

유엔 안보리 결의 2122호 (S/RES/2122)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

S/2005/636

S/2006/770

S/2007/567

S/2010/173

S/2010/498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S/PRST/2002/32

S/PRST/2004/40.

S/PRST/2005/52.

S/PRST/2010/22.

유엔 보도자료 SC/6816

3) 국가행동계획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UN
*SCR 1325 & 1820 National Action Plan/ Nepal, Glimpses of the
Process Adopted*, Feb.2011,

Government of Nepal Ministry of Peace and Reconstruction,
*National Action Plan On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
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 1820 [2011/2012-
2015/16]* , February 1, 201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Dutch National Ac-
tion Plan on Resolution 1325*, December 20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 *Women: Power-
ful Agents for Peace and Security Dutch National Action Plan
(2012-2015)*, 2012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December 2011,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mplementing the UNSCRs 1325 and 1820, <http://www.sulongnetwork.ph/new/resource/philippine-nap-women-peace-and-security>, draft as June 8, 2010 (검색일: 2013.5.)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Act for Peace, *The Philippine National Action Plan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325 and 1820*.

4) 기타 자료 - - - - -

European Peacebuilding Liaison Office, Initiative for Peacebuilding, International Alert, *Civil Society Recommendat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UN SCR 1325 in Europe*, 2009.

International Aler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Power Point 자료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Checklist of Women's Participation and Gender Perspective i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usan Allen Nan & Andrea Strimling, "Track I -Track II Cooperation", *Beyond Intractability*, Colorado, January 2004.

U.S. Civil Society Working Group *Expert Statement for the U.S. National Action Plan on Women, Peace and Security*, November 28, 2011.

World Economic Forum,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men Engaged in Action on 1325, *WE ACT 1325: INITIAL INITIATIVES AT NAP IMPLEMENTATION* November 2010 to

mid-2012, 2012.

5) 인터넷 자료

<http://www.peacewomen.org/naps/list-of-naps> (검색일 2012.10.4)

<http://www.gaps-uk.org/APG.php>. (검색일 2011.6.30).

<http://www.peacewomen.org/naps/about-raps>(검색일 2013.8.22),

<http://www.peacewomen.org/naps/about-naps> (검색일: 2013.8.23).

<http://www.womenpeacesecurity.org/> (검색일: 2013.8.22).

http://www.unifem.org/campaigns/1325plus10/wp-content/uploads/2010/05/FourCommitments_Poster_en.pdf (검색일 2013.8.22)

http://www.peacewomen.or.kr/index.php?mid=wmp_pds_mil&document_srl=22759 (검색일 2013.8.10)

<http://mirror.undp.org/magnet/policy/chapter1.htm#b>(검색일 2010.12.11)

부록

1. 용어 정의

젠더(gender) : 사회적 성을 의미한다. 여성과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본래의 특성 이외에도 사회규범이나 제도, 문화와 관습 등에 의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키워진다. 사회적 성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및 관계, 여성과 남성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일련의 특질과 행동을 뜻한다. 사회적 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권한 강화 (empowerment) : 세력화라고도 한다. 남녀의 삶을 통제하는 과정과 결과로서 그들 자신의 의제를 설정하고, 기술을 익히고, 자기 확신을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권한 강화는 과거에 여성들의 능력을 부정한 곳이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략적인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성 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의 권한 강화는 노동과 사회 분업의 전환을 요구한다.

성평등(gender equality) : 양성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참여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르면, 분쟁 예방·해결과 평

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축진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완전한 개입, 그리고 분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여성의 역할 향상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따르면,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 입법,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어떤 계획된 행동이 남녀에게 미치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모든 정치·경제·사회영역에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이익을 얻고 불평등이 행해지지 못하도록 남성의 우려(관심사항)와 경험 뿐만 아니라 여성의 우려와 경험을 통합하는 전략으로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추구한다.

- 성주류화의 세 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여성의 주류화 :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
- ②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 :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정책의 내용과 과정, 결과가 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주류의 전환 : 조직의 성별 구성이 균형을 이루고, 성 인지적 관점이 통합됨으로써 조직구조와 문화,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평화 과정 (peace process) : 안보리 결의 1889호와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평화과정은 예방외교, 분쟁예방, 평화형성과 평화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쟁해결, 평화협상, 화해, 사회 기반시설의 재건, 인도주의적 지원의 제공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평화형성 (peace making) : 2008년에 채택된 유엔 평화유지법령교리 (UN Peacekeeping Capstone Doctrine)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보통 적대적인 당사자들을 협상을 통한 합의로 이끄는 외교적인 행동과 연관된다. 평화형성자들은 특사, 정부, 군대, 지역조직, 유엔 등이 있다. 평화형성 노력은 비공식인 비정부 그룹이 수행할 수 있고 유명인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평화구축(peace building) : 유엔 평화유지법령교리에 따르면, 분쟁 관리의 모든 수준에서 국가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발생과 재발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토대를 세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와 연관된다. 좁은 의미로 정의할 경우, 분쟁직후 조기평화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즉 분쟁직후 기본적인 안전, 안보를 지원하며, 지뢰 활동, 민간인 보호, 군축·군인동원해제·사회재통합을 지원하며, 법의 지배를 강화하며 안보부문 개혁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거과정을 포함해 정치과정을 지원하고 포괄적인 대화와 화해를 촉진하며 국가적 수준과 하부 국가적 수준에서 분쟁관리능력의 개발을 포함하는 정치적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료: Kavitha Suthanthiraraj and Cristine Ayo, *Promoting Women's Participation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How Women Worldwide are Making and Building Peace, Global Action to Prevent War, NGO Working Group on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August 2010)*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모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안전보장이사회

2000년 10월31일

결의문 제1325호(2000)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4213차 회의에서 본 결의문을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 관련 성명과 더불어 1999년 8월 25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261호(1999년), 1999년 9월 17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265호(1999년) 및 2000년 4월 20일자 1296호(2000년), 2000년 8월 11일자 1314호(2000년)를 상기하면서

또한 2000년 3월8일 여성 인권 및 국제 평화를 위한 유엔의 날 행사(United Nations Day for Women's Rights and International Peace(국제 여성의 날))에서 언론에 발표한 의장 성명(SC/6816)을 상기하면서

또한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에서 정한 이행 조항뿐만 아니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性)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23차 특별 회기 중,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결과 문건들을 상기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유엔 헌장에 준거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유엔 안보리의 주요한 책임임을 유념하면서

무력분쟁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의 대다수가 국내외 난민을 포함한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상당수이며 전투대원 및 무장 대원들이 점차 이들을 희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또한 이로 인해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분쟁 방지와 해결 및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촉진하려는 모든 노력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분쟁 기간 및 분쟁 종결 후에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제적 인도주의와 인권법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지뢰제거와 지뢰 인식(대중교육)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특별히 고려하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 유지 활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가 긴박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 점에서 빈트후크 선언(Windhoek Declaration)과 다각적 평화지원 작전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주류화에 대한 나미비아 행동 강령(Namibia Plan of Action on Mainstreaming a Gender Perspective in Multidimensional Peace Support Operations)(S/2000/693)을 주목하면서

또한 2000년 3월 8일 대(對) 언론 의장성명에서 수록한 분쟁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 보호, 이들의 특별 요구사항 및 인권을 위해 일하는 모든 평화유지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에 대한 권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받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보완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급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해지는 영향력에 대한 자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1. 국가, 지역 및 기관 차원의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여성 대표의 증원과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 메커니즘을 회원국이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2. 분쟁해결 및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여성 참여 증대를 요청한 전략적 행동 강령(A/49/587)을 사무총장이 이행할 것을 권장한다.
3.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을 대표하여 외교적 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특별 대표단과 사절로 더 많은 여성을 지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에게 정기적으로 주요 후보자 명단을 업데이트하여 추천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4. 여성들이 유엔 현장기반 작전(United Nations field-based operations)에서, 특히 군 감시단, 민간 경찰, 인권 및 구호 인력으로 참여하여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이 모색할 것을 더불어 촉구한다.
5. 평화 유지 작전에 성인지적(性認知的) 관점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기꺼이 표명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야전 작전에 성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을 유엔 사무총장이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모든 평화 유지 및 평화구축 조치에 여성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자료와 더불어 여성의 보호와 이들의 권리 및 특히 여성 특유의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지침 및 자료를 유엔사무총장이 회원국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자국의 군대와 민간 경찰 인력 배치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즈 바이러스 및 에이즈(HIV/AIDS)에 대한 교육을 통합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화유지 작전에 참여하는 민간 인력이 유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7. 적절한 기금과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유엔 여성 기금(United Nations Fund for Women)과 유엔 아동 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과 유엔난민 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other relevant bodies)을 통해 수행하는 훈련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자국의 성인지적 교육 노력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지원과 기술 및 수송 지원을 증대할 것을 촉구한다.

8. 모든 관련 행위주체들이 평화 협정을 협상하고 이행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 (a) 송환 및 재정착 기간 동안 재화와 복구(reintegration) 및 분쟁 후(後) 재건을 위해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특별요구사항
- (b) 현지 지역 여성들의 평화 방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현지의 특정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조치 및 평화협정을 이행하는 모든 메커니즘에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
- (c)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헌법, 선거 제도, 경찰 및 사법부와 연계되었을 때 이들의 인권이 반드시 보호받고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9.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민간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적용 가능한 의무조항들은 다음에 근거한다. 1994년의 제네바 협정(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77년의 부가 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hereto of 1977), 1951년의 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 of 1951)과 1967년의 의정서(Protocol thereto of 1967), 1979년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f 1979)과 1999년의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of 1999), 1989년의 유엔 아동 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89)과 2000년 5월 25일자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s thereto of 25 May 2000) 두 건이며 또한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이 국제 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관련 조항을 유념할 것을 요청한다.

10.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성 관련 폭력, 특히 강간 및 또 다른 형태의 성적 착취 그리고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는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11.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impunity)을 종식하고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 및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 책임을 모든 국가가 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및 그 이외의 범죄들이 해당된다. 그

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면(敍免) 조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런 범죄들은 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함을 강조한다.

12.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난민촌과 정착시설의 설계문제를 포함하여, 이런 시설들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특성과 인도주의적인 면을 존중하고 또한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특별한 요구사항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며, 1998년 11월 19일자 유엔 안보리 결의 1208호(1998년)와 2000년 4월 19일자 결의 1296호(2000년)를 상기할 것을 요청한다.

13.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복구 계획에 관여하는 모든 인력들은 여성과 남성 전직 전투 대원들이 원하는 상이한 요구사항과 더불어 이들의 부양가족이 원하는 요구사항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14. 유엔 안보리는 유엔 현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조치들이 채택될 경우에는 여성과 소녀들이 원하는 특별 요구사항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해당 조치들이 민간인들에게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감안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는 적절한 인도적 면책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15. 안전보장이사회는 지역 및 국제 여성 단체의 자문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성문제를 고려하고 여성의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 임무임을 기꺼이 표명한다.

16.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받은 영향력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들의 역할,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와 분쟁 해결에 대한 성 관점(gender dimensions)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더 나아가서 수행한 해당 연구 결과를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고 이를 유엔 전체 회원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보고할 때 적절한 경우라면 평화 유지 임무를 통한 성 주류화에 대한 진척상황과 더불어 여성 및 소녀들과 관련된 모든 다른 측면들도 포함시켜 줄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18.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20호

안전보장이사회

2008년 6월 19일

결의 1820호(2008)

2008년 6월 1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5916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1년 10월 31자(Security Council/PRSY/2001/31), 2002년 10월 31자(Security Council/PRST/2002/32), 2004년 10월 28일자(Security Council/PRST/2004/40), 2005년 10월 27일자(Security Council/PRST/2005/52), 2006년 11월 8일자(Security Council/PRST/2006/42), 2007년 3월 7일자(Security Council/PRST/2007/40)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를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따라,

또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하에 국가들이 약속한 의무대로, 범 죄 묵인 행위(impunity)를 종식하며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에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확실히 보호함으로써 2005년 세

계 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로 표명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 for Action)(A/52/231)의 노력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 중에서, 특히 여성과 무력 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회원국가들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재촉해 위 협정의 내용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무력분쟁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의 대다수가 민간인들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며, 또한 특히 공동체의 민간인들이나 특정 인종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배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전쟁전략의 일환으로서 여성과 아동들을 겨냥해 성폭력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저질러진 성폭력은 일부 경우 분쟁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을 유념하며,

안보리가 무력 분쟁 도중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모든 성폭력 및 기타 폭력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던 것을 상기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조직적으로 확대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국제형사법정의 규정들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분쟁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확인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는 여성들의 동등한 참여와 완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과, 분쟁 방지와 해결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분쟁이 끝난 뒤 공직 생활에 종사하는 여성의 능력과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폭력, 협박, 차별로 인해 분쟁 방지와 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한 이것이 분쟁 후 평화구축을 포함한 장기적인 평화, 안보, 화합에 가져다 줄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며,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부처 간 협력 제안인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이 보여 주듯이, 무력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현재 유엔 시스템 내부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 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에는 특히, 적절한 군 징계조치를 집행하고, 지휘책임의 원칙을 유지하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금지조치에 관한 부대 내 교육을 실시하며,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과거의 강간 및 기타 성폭력 행위를 참작하기위해 군 및 안보 병력을 면밀히 심사하며, 그리고 성폭력의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유엔 관리들과 분쟁당사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장려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특히 분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지역 공동체 여성들의 의견을 고려한다.

4.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은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및 집단 학살을 구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분쟁 해결 과정의 사면 조항에서 성폭력 범죄를 제외시켜야 할 필요성

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기소하고, 또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의 공평한 보호와 동등한 사법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따를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청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평화, 사법, 진실, 국가 재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범죄 목인 행위를 종식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

5. 특정국 대상 조치나 제도를 만들거나 갱신할 때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이나 소녀들에게 강간 혹은 기타 성폭력을 저지른 무력분쟁 당사자들을 겨냥하여 등급별로 분류한 조치를 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한다.
6. 안전보장이사회, 유엔평화유지작전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와 관련 실무그룹 및 관련국들과의 협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성폭력 및 기타 폭력을 보다 잘 예방하고, 인식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리가 명령한대로 유엔이 파견한 모든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구호 인력에게 제공할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유엔 평화유지작전 중 일어나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쏟고 있는 노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인·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을 촉구해 적절한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파견전과 파견 현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도 훈련과 그러한 사건에 군·경찰인력이

연루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된다.

8.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유엔 평화유지작전에 참여하는 자국 인력의 인식과 즉각적인 대응을 기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능할 경우 보다 많은 여성 평화유지군이나 경찰을 파견하는 것 포함)를 고안하도록 군인·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에게 장려한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와 분쟁 도중 및 분쟁 이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한다.
9. 평화유지군의 법규에 맞추어, 관련 유엔 평화유지군이 보다 강화된 능력으로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길잡이와 전략을 개발하며, 또한 안보리에 제출하는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여성과 소녀의 보호에 관한 사무총장의 견해와 그에 따른 조언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 여성 및 여성단체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특히 유엔이 관리하는 대피소 및 난민 수용소 내부와 그 주변, 그리고 모든 무장 해제 및 사회재통합과정(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process) 및 유엔이 도움을 제공하는 사법 및 안보 분야 개혁(justice and security sector reform) 내에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기관에 요

청한다.

11.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가 제공하는 분쟁 후 평화구축 전략 조언 중 적절한 곳에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에 일어나는 성폭력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또한 젠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 중 일부로서 국가별 배체에 여성의 효과적인 시민사회 참여와 자문을 보장하도록 하는 평화구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12. 분쟁 예방과 해결, 평화와 안보유지, 분쟁 후 평화구축에 관련된 토론에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며, 모든 참가자들을 장려해 여성이 보다 쉽게 정책결정 위치에 동등하고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사무총장과 그의 특사들에게 촉구한다.
13.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성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게 장기적인 도움을 제공하기위해, 특히 사법·의료체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과 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 금융 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단체들에게 촉구한다.
14.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에 영향을 받은 여성과 소녀들의 혜택을 위한 정책, 활동 지원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노력하도록 관련 지역기구들에게 촉구한다.
15. 또한 안보리의 의제에서 다루어진 여러 상황 속에서 이 결의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2009년 6월 30일까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 팀, 평화유지 작전 및 다른 유엔 인력을 포함한 모든 유엔 자원의 정보를 이용한다. 특히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이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일반인에게 가해졌던 상황에 대한 정보,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 및 경향 분석, 성폭력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취약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제안, 성폭력 예방과 대응의 진척상황을 가늠하는 지표, 유엔의 현지 파트너들의 적절한 도움제공, 유엔 본부와 현지 활동 간의 조율을 통해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해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 수집을 촉진하는 사무총장의 계획서, 그리고 특히 모든 성폭력 행위를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지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이 결의의 내용대로,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16.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88호

안전보장이사회

2009년 9월 30일

결의 제 1888호

2009년 9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6195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호(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2009년 7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362)를 환영하며, 그렇지만, 무력분쟁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아이들, 그 중에서도 소녀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성 폭력 문제에 관해 진척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나왔듯이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력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체계적이며 더 널리 퍼지게 되기까지 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과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 중에서, 특히 여성과 무력 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성에게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아직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재촉해 위 협정의 내용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무력분쟁 도중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민간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를 여성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점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impunity)을 종식함과 동시에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및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기타 지독한 범죄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며, 이런 점에서, 소수의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한편으로는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국가 사법제도가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무력분쟁 동안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과거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슷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현재 겪고 있는 사회와 분쟁에서 회복중인사회가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며, 국가, 국제, '혼합' 형사 법원 및 법정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포함한 사법 재통합 메커니즘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진실, 화해, 그리고 희생자의 인권까지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a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 국제형사법정의 규정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와 비국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 금지조항들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를 의무를 강조하며,

민간과 군 지도자들이 지휘 책임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을 방지하고,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또한 그들이 성폭력에 대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도중에는 성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위험에 처한 인명을 보호하고 완벽한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평화 과정과 중재노력의 초기부터, 특히 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인도적 지원 접근과 인권 협정, 휴전과 정과 휴전 모니터링, 무장 해제, 동원 해제와 사회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안보분야 재건 활동(Security Sector Reform) 합의, 처벌과 배상, 분쟁 후 재건과 발전의 분야 등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식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식 교육을 받은 평화 중재자들 및 휴전 감시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엔이 발기하는 평화회담에서 수석 혹은 지도적 평화 중재인들 중 여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목하며,

평화정착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하며 완전한 참여를 증진하려면, 여성의 승진과 권위부여, 그리고 여성단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등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회원국, 원조국, 비정부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에게 촉구하면서,

민간, 군, 경찰 분야의 평화유지작전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

하며, 무력분쟁을 겪은 여성들이 평화유지작전에 협조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받은 학대를 고발할 시 같은 여성들을 상대하는 것이 보다 안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여성 평화유지군의 존재가 현지 여성들이 국군 혹은 안보 병력에 참여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그로인해 모든 사람-특히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그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안보분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결의 1325호(2000년)와 1820호(2008년)의 이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평화유지군을 위한 젠더 교육지침을 개발하고, 또한 결의 1820호(2008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작전길잡이를 제작하는 등 평화유지작전의 민간, 군, 경찰 구성원들을 돕는 평화유지활동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의 노력을 환영하며,

2009년 7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362)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 결의안은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 부록 '무력분쟁 상황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소년병을 모집, 동원한 당사자 리스트'를 확장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무력분쟁 도중 아동 살상 혹은 아동 강간이나 기타 성폭력에 참가한 무력분쟁 당사

자들 리스트까지 포함시키도록 안보리가 2009년 8월 4일자 결의안 1882호(S/RES/1882)에서 내린 결정을 상기하며,

젠더문제에 관한 특별 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on Gender Issues)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무들인 결의 1325호의 이행 모니터링, 유엔 시스템 내부의 성주류학진행,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한 부여 및 성평등 증진에 주목하며, 또한 유엔 시스템 내 이러한 분야들 간의 효과적인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표명하고,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할 안보리의 가장 큰 책임을 재차 확인하며, 또한 무력분쟁이 일반인에게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성폭력 관련 포함)을 계속해서 다룰 의지를 되새기며,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적이며 전적으로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한다. 예를 들어, 적절한 군 징계 조치를 집행하고 지휘책임 원칙을 지지하며, 민간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 절대적인 금지조치에 관해 부대를 교육하며, 성폭력을 부채질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의 정체를 밝히고, 국군과 보안 병력 지원자들을 면밀히 심사해 성폭력을 포함한 국제 인도법,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과 관련되었던 이들을 탈락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4.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리더십을 제공하고, 현존하는 유엔 조율 메커니즘을 강화

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일하며, 특히 정부(군사법부 대표 포함) 및 무력 분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본부와 지방지부 양쪽에서 무력분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동시에, 부처간 협력 제안인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통해 모든 관련 책임자들 간의 협력과 활동 조율을 증진한다.

5. 분쟁 중 성폭행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구성하는 조직들과 더불어 유엔 시스템 내 다른 관련 조직들을 촉구해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의 활동을 지원하며, 모든 관련 책임자들 사이의 협력, 정보공유, 조율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방 지부들 간의 중복 활동을 피하며, 전 조직에 걸친 대응방식을 발전시킨다.
6. 무력분쟁 도중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며 생존자들에게는 사법 접근권을 갖게 하고, 재판과정 동안 권위를 존중 받고, 보호받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하게 국제법에 따라 포괄적인 법률 및 사법 개혁에 지체 없이 착수하도록 각 국가에게 촉구한다.
7.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해 민간인과 군 인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폭행 혐의범을 기소하도록 하며, 그리고 민간 및 군 지도자들이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과 권력을 사용해 성폭력을 예방하도록 보장한다. 여

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포함한다.

8. 무력 분쟁 중 성폭력과 관련된 상황에 전문가를 급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국가 권력기관을 도와 법률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협력하고 현지 정부의 동의하에 활동하는 유엔 파견 전문가들이 일한다. 그리고 유엔 시스템 내부에 현존하는 인적 자원과 자발적 기부를 활용하고, 거기에 더해 법률, 민간 및 군 사법 체계, 중재, 범죄 수사, 안보분야 개혁, 증인 보호, 공정한 재판의 기준, 언론매체와 대국민 접촉활동 (Public Outreach) 분야의 유엔 전문지식을 활용하도록 권한다.

(a) 국가 법률과 사법 관련 공무원들과 관련 정부의 민간 및 군 사법 체계의 인력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죄 목인 행위를 바로 잡는다. 여기에는 국가의 역량 강화와 사법 메커니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포함된다.

(b) 국가가 내세운 대응책 중 결함을 찾아내고, 무력분쟁 중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적 접근방식(범죄에 대한 처벌 증가 희생자에 대한 빠른 대처 사법부 역량 강화 등을 포함)을 장려한다.

(c) 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외적 노력과 자원을 조율하도록 조언을 제공한다.

(d) 결의 1820호(2008년)에서 요청한 조치들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 유엔 작전, 국가팀, 그리고 위에 언급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와 적절히 협조한다.

9. 국가, 관련 유엔 조직 및 시민사회를 장려하여 국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게 한다. 이를 통해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 및 법률 집행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10. 무력분쟁 상황에서 목표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갱신할 때, 강간 혹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계된 규정 기준을 포함할 것을 고려할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 및 기타 관련 유엔 작전과 유엔 기구들 - 특히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 에 요청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제 위원회(위원회 내 모니터링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와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11. 평화유지 관련 법규를 새롭게 만들거나 갱신하는 결의안들이 성폭력 방지와 대응에 관한 조항과, 그에 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조항을 확실히 포함하도록 보장할 의지를 표명한다.
12. 유엔 평화유지작전 지령에 강간 및 다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결정한다. 여기에는 젠더문제자문관과 인권보호단체들 중 여성보호 자문관(Women's Protection advisers)들을 개별적으로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여성보호자문관의 필요성

과 숫자, 역할이 각 유엔 평화유지 작전을 구상할 때 체계적으로 평가되도록 보장한다.

13.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복지 접근성, 사회심리학적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경제 재통합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도록 각 국가들에게 장려한다.

14.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의 관심사나 요구사항에 대해 현지 여성 및 여성 단체들과 토의모임을 갖고, 이를 이용해 무력분쟁 지역에서 정기적 현지 탐사를 보다 잘 활용할 의지를 표명한다.

15.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국가, 지역 지도자들을 장려해 공동체가 성폭력문제에 더더욱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희생자들의 소외와 낙인 행위를 피할 수 있고, 그들의 사회 재통합을 도우며, 범죄 묵인 문화를 종식할 수 있다.

16.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에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 및 중재 과정에 여성참여를 증가시키도록 사무총장, 회원국, 지역 기구 수장들에게 촉구한다.

17. 유엔이 발제하는 모든 평화 협정 의제에 성폭력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며, 또한 평화 과정에 착수할 때부터 성폭력 문제

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 특히 휴전전, 인도적 구호 접근과 인권협정, 휴전과 휴전 모니터링, 무장해제와 사회재통합 및 안보분야개혁 조치, 군안보 병력의 정밀조사, 사법, 배상, 회복 개발 분야가 포함되도록 한다.

18. 사회 재구축에서 여성이 맡는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며, 또한 포괄적인 성인지 접근방식을 활용해 분쟁 후 불안한 상황을 줄이는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역할을 재차 확인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제에서 거론된 나라의 모든 당사자들이 분쟁 후 전략에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이행하도록 평화구축위원회를 촉구한다.

19. 회원국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수의 군과 경찰 여성 인력을 유엔 평화작전에 파견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군과 경찰 인력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20. 파견 전 훈련과 신규 훈련에서 성폭력을 다룰 때 군과 경찰 인력을 위한 교육지침을 포함시킬 수 있게,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부대와 경찰 파견국들에게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이 보장되도록 한다.

21. 유엔 평화유지작전 중 일어나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기위해 쏟아 붓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인과 경찰 인력 파견 국가들을 촉구해 적절한 사전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파

견 전과 파견 현장에서 실시하는 인지도 훈련과, 그러한 사건에 군과 경찰인력이 연루될 경우 전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는 기타 조치들이 포함된다.

22. 각각의 유엔 기관들 내에서 체계적인 성주류화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사무총장이 모든 관련 유엔 조직을 지휘하도록 요청한다. 여기에는 모든 관련 부처 내와 현지에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무력 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를 다룰 때 각각의 범류 내에서 기관들 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23. 유엔 행동 연구소로부터 전략적 기술적 지원을 받아,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와 긴급구호조정관(Emergency Relief Coordinator)에서 촉구하여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모든 관련 책임자들과 상의한 후 성폭력과 투장하기 위한 정부-유엔 포괄적 공동진력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그들이 본부에 제출하는 관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정기적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하게 한다.

24. 안보리에 제출되는 모든 관련 보고서에 최근의 사건 미 공격 패턴, 그리고 무력분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조기경보 지수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보고가 포함될 것을 사무총장이 보장하도록 요청한다. 또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 긴급구호조정관, 인권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여성폭력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그리고

고 유엔 활동 위원장들이 앞서 언급된 특별대표와 협력해 무력분쟁 중 일어나는 성폭력 사례에 대한 추가 브리핑과 문서들을 안보리에 제공하도록 그들을 장려한다.

25. 적절한 경우,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성폭력으로부터 민간인-특히 여성과 아동들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에 대해 개별 평화유지 작전에 관한 사무총장의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6.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포함된 제안들과 더불어 다른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되도록 빨리(3개월 안에) 무력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강간과 기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시스템 내에 효과적인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이를 위해 유엔 시스템 내의 전문 지식과 국가 정부, 지역 기구, NGO의 자문 및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기여를 활용하여, 유엔 기구들이 고안한 대응책에서 나타나는 결점(차이)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구축한다.

27. 결의 1820호(2008년)의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2010년 9월까지 결의 1820호와 본 결의문의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b) 상주조정시스템(Resident Coordination), 인도주의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유엔 국가 팀(United Na-

tions Country Team), 위에 언급된 특별대표와 전문가 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엔 작전 팀이 성폭력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는지를 알려 주는 최신정보

(c) 안보리 의제에 언급된 무력분쟁 상황 중, 강간 및 기타 성폭력 혐의가 있는 무력분쟁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

28. 유엔 혼성 기구(United Nations composite gender entity)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 63/31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3/311)가 만든 과정을 고려하여, 특별대표의 지령(본문조항 4에서 언급)과 전문가 팀의 활동(본문조항 8에서 언급)을 2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적절한 때에 검토할 것을 결정한다.

29.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89호

안전보장이사회

2009년 10월 5일

결의 1889호

2009년 10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 6196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2000년), 1612(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 1888호(2009년)들을 지속적이며 전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며, 그리고 헌장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야 할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큰 책임을 유념하며,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 의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로 표명된 의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과 부가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thereto, 1999), 아동 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과 부가 선택 의정서들(Optional Protocols thereto, 2000)에 대한 국가들의 의무를 상기하며, 또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A/52/231)과 더불어 "2000년 여성: 21세기를 향한 성 평등, 발전 및 평화"(Women 2000: Gende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A/S-23/10/Rev.1)라는 제목으로 열린 유엔 총회 제 23차 특별 회기결과와 문서의 내용 중, 특히 여성과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2009년 9월 16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09/465)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현 결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행동계획서의 개발을 포함한 결의 1325호(2000년)를 국가 차원에서 이행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또한 그러한 이행을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장려하며,

분쟁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모든 평화 과정에 완전하며 동등하고 효과적인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복구중인 사회의 기본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재차 확인하고, 또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분쟁 후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여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중재 과정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포함, 평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또한 중재팀 구성원과 고위 중재자 등의 사결정위치에 여성을 적절하게 임명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성에 대한 극단적이거나 광적인 견해와 여성의 교육 접근성 부족 등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폭력, 협박, 안전 및 법률의 결여, 문화적 차별, 비난 때문에, 분쟁 방지와 해결에 여성이 참여하는 데 여전히 장애물과 과제가 많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또한 여성의 소외가 장기적인 평화, 안보, 화합의 성취를 늦추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특히 신체적 안전, 성과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그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들, 땅과 재산에 대한 권리, 직업 등과 더불어 특히 분쟁 후 평화구축과정에 조기참여를 비롯한 분쟁 후 계획과 의사 결정의 참여 등 분쟁이 끝난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인식하며,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쟁 예방, 분쟁 해결 및 평화구축의 여성 참여를 강화시키는 데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분쟁 후 상황에서 공식 의사 결정과 경제 회복에 종사하기 위한 여성의 역량은 대개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의 빠른 회복 요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 필수적이며, 분쟁 후 평화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력 분쟁 도중과 분쟁 후 상황의 여성은 대개 피해자로만 인식되고 무력분쟁 상황을 다루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는 인식되지 않는 점을 유념하며, 여성 보호뿐만이 아니라 평화구축의 여성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력 분쟁이 여성과 소녀들(피난민과 내부 추방민 여성 포함)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적절하고 빠른 대응, 그리고 여성의 보호와 특히 분쟁 후 평화 구축의 초반을 포함한 평화 과정에 있어 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조치가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증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젠더 문제 관련으로 배당된 유엔 개발 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의 다자기금(Multi Donor Trust Funds)의 사용용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한, 유엔 개발 프로그램(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개척한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유엔의 제안을 환영하며,

특히 현지파견인력을 포함한 유엔의 고위직에 보다 많은 여성을 임명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결의 1325호의 이행에 유엔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본격적인 행보로써 환영하며,

결의 1325호(2000)의 10주년 기념을 준비하여, 유엔 시스템 내부의 활동을 보다 눈에 띄게 하고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유엔 조정위원회(United Nations Steering Committee)의 설립을 환영하며,

결의 1325호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2009-2010년 동안 국제,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벤트(장관 주최 이벤트 포함)를 조직하고, '여성과 평화와 안보'에 관한 노력을 새로이 다지고, 앞으로 결의 1325호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처방법을 확인하도록 관련자들을 장려하며,

1. 회원국들과 국제 지역 기구들에게 회복 과정의 초반부터 정치 및 경제 의사 결정의 여성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히 분쟁 해결, 분쟁 후 재건과 평화구축 등 평화 과정의 모든 절차에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특히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을 증진하여 구호 관리와 재건에 참여시키게 하는 것과, 여성 단체를 강화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려는 여성의 역량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
2.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보호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청한 안보리의 요청을 반복한다.
3.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모든 행위를 강하게 비판한다. 분쟁 의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범죄 목인 행위를 종식하며, 무력분쟁 도중 여성과 소녀들에게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4. 사무총장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특별대표와 특사에 여성을 보다 많이 임명하며, 그리고 유엔의 정치, 평화구축, 평화유지 작전의 여성 참여를 증가시키는 조치(적절한 훈련 포함)를 취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안보리에 제출하는 모든 국가의 보고서들이 무력분쟁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끼치는 영향과,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내용을 확실히 포함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6. 관련 유엔 기구들이 회원국들과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체계적으로 평가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신체적 안전과 의사결정 및 분쟁 후 재건의 참여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전 시스템적 대응을 발전시킨다.
7. 유엔 작전의 명령을 새롭게 만들거나 갱신할 때에는 성평등을 증진하고 분쟁 후 상황에서 여성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는

조향을 포함시킬 의지를 표명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요청해 적절한 경우 유엔 활동에 젠더 문제 자문관과 여성 보호 자문관을 지속적으로 임명하고, 유엔 국가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s)과 협력하여, 기술적인 지원과 보다 잘 조율된 노력을 통해 분쟁 후 여성과 소녀들의 회복에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처하도록 한다.

8. 모든 분쟁 후 평화구축과 회복 과정 및 분야의 성주류화를 보장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한다.

9. 분쟁 후 요구사항 평가와 재건에 여성의 지위향상이 확실히 고려되었고 이후의 자금 지출과 프로그램 활동에 반영되도록 보장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 원조국 및 시민사회에 촉구한다. 여기에는 투명한 분석을 개발하고 분쟁 후 과정 중 여성의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데 배당된 자금을 추적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10. 분쟁 후 상황에 있는 회원국들을 격려해,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사항과 우선순위를 자세히 알아내고, 이러한 요구사항과 우선순위에 답하기 위해 자신들의 법률 체계에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여기에는 보다 많은 신체적 안전 보장과 나아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로는, 교육, 수입 활동, 특히 성 건강과 생식 권리,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접근성, 성인지적 법률 시행과 사법 접근성 및 공공 의사 결정의 모든 수준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을 강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1. 분쟁 후 의사 결정에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하려면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쟁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들, 유엔 기구와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에 촉구한다.
12. 난민수용소와 정착촌의 성격이 민간 인도주의적이라는 점을 존중할 것과, 그러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을 포함한) 민간인을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보장할 것과, 그들이 인도주의적 구호에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13. 무장해제와 사회재통합(Disarmament,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무력분쟁과 분쟁 단체에 연루된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14. 평화구축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와 평화구축지원국(Peacebuilding Support Office)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쟁후 평화구축 과정의 일부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증진하기 위해 자원에 체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동원할 것과, 여성의 전적인 평화과정 참여를 격려할 것을 장려한다.

15. 평화구축 과정의 초반부터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장시키기 위한 필요성을 유엔의 평화구축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무총장의 의제에서 고려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6. 결의 1888호(2009)가 임명하도록 요청한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 간의 노력이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며, 적절하게 조율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7. 6개월 내에 사무총장이 결의 1325호의 이행을 가늠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지표들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이 지표들은 관련 유엔 단체, 기타 국제 및 지역 기구들과 회원국들의 2010년과 그 이후의 결의 1325호 이행에 관한 보고에 쓰일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8. 2007년 10월 24일 발표한 안보리 의장 성명(S/PRST/2007/40)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보고서에 결의 1325호의 이행 진척상황에 대한 검토 내용과, 결의 1325호에 관한 정보를 안보리가 입수하고, 분석하며, 대응책을 취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평가, 유엔 체계, 회원국들, 시민사회간의 조율을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조언, 그리고 유엔 작전 중 여성의 참여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9. 평화구축과 분쟁 후 재건의 여성 참여 및 포함을 다루는 보고서를 앞으로 12개월 내에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보고서는 평화구축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20.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960호

안전보장이사회

2010년 12월 16일

결의 1960호 (2010)

2010년 12월 16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 6435차 회의에서 본 결의를 채택함.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의장의 관련 서명과 더불어 결의 1325호(2000년), 1612호(2005년), 1674호(2006년), 1820호(2008년), 1882호(2009년), 1888호(2009년), 1889호(2009년), 1894호(2009년)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안보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하면서,

2010년 11월 24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10/604)를 환영하며, 그렇지만 무력분쟁 도중 특히 여성과 아동들을 상대로 일어나는 성폭력 문제의 진척상황이 여전히 느리다는 점에 깊이 우려하고, 또한 사무총장 보고서에 나왔듯이 세계 곳곳의 무력분쟁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점을 유념하며,

무력분쟁의 성폭력을 포함해서, 무력분쟁 도중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비난을 되풀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무력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점과, 심지어 일부 상황에서는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변해 소름끼칠 정도로 야만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재차 표명하며,

분쟁에 관련된 모든 국가 및 비국가 단체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금지조항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따를 의무를 충실히 따를 필요성을 되풀이하며,

군과 민간 지도자들이 지휘책임의 원칙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 묵인 행위(impunity)와 싸우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치적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분쟁 도중에는 성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하며,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함과 동시에 집단학살,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및 민간인에게 자행되는 기타 지독한 범죄들을 처벌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상기하며, 이런 점에서, 소수의 성폭력 범죄자들만이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의 시선과 함께 주목하고, 한편으로는 분쟁 도중과 이후 상황에서 국가의 사법제도가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결의 1888호(2009년)에 따라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지원하는 전문가팀의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현지에서 일하는 유엔을 통해, 그리고 현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활

동하는 전문가 팀을 무력 분쟁 중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특히 관련된 상황에 급히 파견해야 할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기여들에 감사하며,

자국민의, 그리고 관련 국제법에 명시된대로 자국민뿐만 아니라 국경 내의 모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무력분쟁 관련 단체들에게는 연루된 민간인들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며,

무력분쟁 도중에는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 민간인들을 위한 전반적인 보호를 여성과 아동에게 제공한다는 점과, 거기에 더해 그들이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까지 제공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무력분쟁 동안 민간인들에게 자행된 과거의 학대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비슷한 학대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쟁을 겪고 있는 사회와 분쟁에서 회복중인 사회가 범죄 묵인 행위를 종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단언하며,

국가, 국제, '혼합'형사 법원 및 법정과,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포함한 사법 재통합 메커니즘 전반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메커니즘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개인의 책임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진실, 화해, 그리고 희생자의 인권까지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제형사재판에 관한 로마규정(Romes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및 특별 국제형사법정의 규정들에 포함된 여러 성폭력 범죄를 상기하면서,

국제 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특히 시골 지역에서의 의료복지 접근성, 사회심리학적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사회경제 재통합 서비스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에게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또한 그러한 서비스에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하고,

성폭력 예방과 대응책 등 평화유지활동이 맡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야 할 충분한 능력과 구체적이고 적절한 안내지침에 관한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의 보고서(A/64/19)에 포함된 제안, 결혼, 조언을 환영하며, 모든 작전 구성원들과 모든 수준의 지휘 책임자들이 자신들이 수행중인 작전의 임무와 관련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고위 작전 책임자들이 민간인 보호(무력분쟁 도중 일어나는 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책을 포함)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이 민간인의 보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 개발의 진전을 환영하며,

공식 평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식교육을 받은 평화 중재자들 및 휴전 감시자들

이 부족하다는 사실. 그리고 유엔이 발의하는 평화회담에서 수석 혹은 지도적 평화 중재인들 중 여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노력을 인정하면서 더욱 분발해주길 격려하며,

민간, 군, 경찰 분야의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하며, 그러한 여성의 존재가 지역 공동체의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신고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0년 11월 24일에 사무총장이 제출한 보고서(S/2010/604)를 고려하며, 그리고 현 결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상황들이 제네바 조약 및 부가 의정서 내의 무력분쟁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과, 이러한 상황에 포함된 비국가 단체들의 합법적 신분을 손상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기 위해 고안된, 혹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서 동원되거나 사주 받은 성폭행은 무력분쟁상황을 엄청나게 악화하거나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 평화와 안보의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면에서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안보리 의제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무력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성폭력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한다.

2. 무력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즉각 적이며 전적으로 그만 둘 것을 재차 요구한다.
3. 사무총장을 격려해 결의 1820호(2008년)와 1888호(2009)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며, 또한 안보리 의제가 다루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보고서에 부록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관련 제재 위원회의 의사 진행과 일치하는 조치들의 포함. 유엔이 보다 많은 목적의식을 갖고 그런 당사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토대로서 이 리스트를 활용할 의지를 표명한다.
4. 사무총장의 보고서 A/64/742-S/2010/181의 문단 175, 176, 178, 180과 일치하는 무력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연례 보고서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기재 및 누락 기준을 현 결의에 따라, 그리고 현 결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5. 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노력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게 요청한다. 여기에는 특히 지휘 체통을 통해 성폭력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명령의 전달, 행동 강령, 군 야전교범 및 기타 동등한 규범의 성폭력 금지조항 등을 포함한다.

6. 안보리 의제에 상정된 무력분쟁에서 강간 및 다른 성폭력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책임 이행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며, 관련 보고서와 브리핑을 통해 안보리에게 갱신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무력분쟁 상황에서 목표 제제를 새로이 채택하거나 갱신할 때, 강간 혹은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관계된 규정 기준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 및 기타 관련 유엔 활동과 유엔 기구들 특히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 에 요청해 관련 유엔 안보리 제제 위원회(위원회 내 모니터링 그룹과 전문가 그룹을 포함)와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8. 무력분쟁 도중과 이후 일어나는 강간과, 결의 1888호(2009년)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상황들을 포함해서, 분쟁 관련 성폭력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보고 조치를 각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이 조치들로 인해 일관성 있고 잘 조정된 현지 접근방식이 보장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과 무력분쟁에 관한 유엔 결의 1612호(2005년)과 1882호(2009)에 따라 이행된 모니터링 및 보호 메커니즘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전적으로 존중함 동시에, 사무총장을 격려해 유엔관련자들, 국가 기관, 시민사회단체,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단체와 협력해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의 사례, 경향, 유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등급별로 분류된 조치들을 포함)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9. 아동과 무력분쟁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와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 간의 노력이 투명하고, 서로 협력하며, 적절하게 조율되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0. 젠더 문제 자문관들의 활동을 환영하며, 결의 1888호(2009년)의 내용을 따라, 평화유지작전에 보다 많은 여성 보호 자문관들이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 결의의 도입문단 8에 따라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조치의 틀을 수립하는 데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11. 사무총장이 공동여 제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평화유지군 성폭력 근절 훈련 교재를 환영하며, 유엔 평화유지작전 준비와 파견을 위한 참고서로서 이 교재를 사용하도록 회원국들을 장려한다.

12.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격려해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13. 명령을 인가하고 갱신할 때 성폭력을 충분히 고려하며, 기술적인 평가 활동에 젠더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할 의지를 표명한다.
14. 분쟁 중 성폭력을 반대하는 유엔 행동(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을 이루는 조직들과 더불어 유엔 체계의 다른 관련 부분들을 격려해, 앞에서 언급된 분쟁 중 성폭력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의 활동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조율을 강화하고 본부와 지방 지부들 간의 중복 활동을 피하며, 전 조직에 걸친 대응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책임자들 사이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15. 회원국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수의 군 경찰 여성 인력을 유엔 평화작전에 파견하도록 하며, 또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도록 모든 군 경찰 인력에 성폭력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16. 유엔 평화 유지군과 인도주의적 구호 인력이 저지르는 성 착취 및 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이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또한 군과 경찰 인력의 파견 전 훈

련과 신규 훈련에 쓰일 성폭력에 관한 길잡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과, 현장에서 성폭력에 대응하는 구체적 상황별 절차를 개발하도록 유엔 활동들을 지원하며, 군과 경찰 파견 국가들에게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어 파견 전과 신규 훈련에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군 경찰용 안내지침을 포함시키도록 사무총장이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17. 결의 1888호(2009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 제공할 것을 분쟁 중 성폭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에게 요청한다.

18. 결의 1820호(2008년)와 1888호(2009년)의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계속해서 안보리에 제출하며, 결의 1820호, 1888호, 그리고 현 결의의 이행에 관한 다음 보고서를 2011년 12월까지 제출해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특히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

- (a) 시기적절하며 윤리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자세한 조율과 전략 계획서
- (b) 본문 문단 8에 언급된 것과 같이 모니터링, 분석, 보고 조치의 이행 진척상황에 대한 정보
- (c) 강간과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무력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또한 안보리 의제가 다루는 무력분쟁 상황에서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짙은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부록으로 첨가.

(d) 상주조정시스템(Resident Coordination), 인도주의지원 조정관(Humanitarian Coordinator), 유엔 국가 팀(United Nations Country Team),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분쟁 중의 성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임명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들이 전문가 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절한 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유엔 작전팀이 성폭력과 관련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최신 정보.

19. 본 사안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을 결정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2106호

안전보장이사회

2013년 6월 24일

결의문 2106호 (2013)

2013년 6월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6984차 회의에서 채택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 1265 (1999), 1296 (2000), 1325 (2000), 1612 (2005), 1674 (2006), 1738 (2006), 1820 (2008), 1882 (2009), 1888 (2009), 1889 (2009), 1894 (2009), 1960 (2010), 1998 (2011), 2068 (2012) 및 그와 관련된 안보리 의장의 모든 성명을 서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계속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며,

2013년 3월 12일 보고서(S/2013/149)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석과 권고사항에 주목하지만, 무력분쟁이나 그 후의 상황에서 성폭력을 막기 위한 결의 1960호 (2010)의 중요한 면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세계 각처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면서,

2013년 4월 11일 런던 G8 외무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분쟁 시 성폭

력 방지선언과 이와 관련하여 맺은 약속을 인정하며.

무력 분쟁시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국가 소유권과 책임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지속적이며 철저한 기소가 무력 분쟁 시 성폭력이 문화적 현상이라거나 불가피한 전쟁의 결과라거나 그다지 대단치 않은 범죄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폭력을 억제하고 방지하는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싸우기 위해 여성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 부여와 양성평등 및 남성과 소년들의 입대가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을 방지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에 중심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2000)와 그 후속 결의문들을 시행하기 위해 계속 지표들을 만들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결의 1325호(2000)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 유엔 여성기구의 노력을 인정하고.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특별히 취약하거나 구체적인 목표가 된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과 소녀들에게도 성폭력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가족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엄청난 2차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남성, 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려하며, 그런 상황에서의 성폭력 행위가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중요한 공헌을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구한 개발과 항구적인 평화 및 안보를 저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자국 영토 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국제법을 바탕으로 부여된 사법권에 따른 주요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무력분쟁 당사자들이 시민보호를 보장할 주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을 존중할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규정과 특설 국제 형사 재판소들의 규정에 다양한 성폭력 범죄가 포함된 것을 상기하며,

심각한 젠더 폭력 행위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르기 쉬운 재래식 무기류의 위험성을 무기 수출국 당사자들이 고려해야 한다는 무기거래조약 조항에 주목하면서,

더욱이 국제 인도법이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 인도, 인권, 난민법을 준수하는 도구로 비-유엔 안전군(non-United Nations Security Forces)에 대한 유엔의 지원을 언급한 인권 상당주의 정책(Human Rights Due Diligence Policy)을 상기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사무총장 보고서에

서 언급된 상황이 제네바 협정과 그 추가 의정서 맥락 내의 무력분쟁인지 아닌지에 관해 이 결의문이 어떤 법적 결정도 하지 않고자 하며, 이 상황들에 연루된 비국가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상태를 예단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1. 성폭력이 전쟁방법이나 전술, 또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사용되거나 의뢰를 받았을 때, 무력분쟁 상황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거나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보 복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점에 관하여 그런 행동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대응하는 조치들이 국제평화와 안보유지에 상당히 공헌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예방대책이나 보호대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2. 성폭력이 인간에 대한 범죄이며 대량학살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더욱이 무력분쟁 시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심각한 성폭력이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회원국들이 그런 문제들을 조사해 그와 같은 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각국 사법권에 기소하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싸우기 위해서 관련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회원국들이 국가 형사법 제정 시 그런 행위들을 기소할 수 있게 모든 범위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도록 권장하며, 무력분쟁 시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이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고 생존자들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3. 여성과 소녀들에게 저지른,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가장 심각한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맞서 벌이는 투쟁이, 국가 재판소의 전문 회의실뿐만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와 특설 재판소, 혼합 재판소의 작업을 통해서도 강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적절한 수단으로, 처벌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투쟁하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한다.
4. 사법적, 비사법적 조치의 모든 범위를 적절히 아우르며,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전환기 사법(transitional justice)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5.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의 성폭력과, 직장에서 여성과 평화 및 안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인정한다. 또한, 이점과 관련하여 중재와 분쟁 후 복구 및 평화구축의 모든 측면에 여성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평화유지와 정치적 권한, 공식성명, 국가방문, 진상조사임무, 국제 조사위원회, 지역단체들과의 협의하고 검토하며 관련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작업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분쟁 시 성폭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적절히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 뜻을 천명한다.
6. 예방과 대응 기반으로 좀 더 시기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단체들에게 무력분쟁 시나 분쟁 후 상황, 그리고 결의문 1888호(2009) 시행과 관련된 다른 상황에서 강간을 포함,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 관련 성폭력에 관한 처리방식을

추적관찰하고 분석하며 보고하는 것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일에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한다.

7.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결의문 1888호에 따라 여성보호 자문단을 더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각각의 유엔 평화유지 및 정치 임무를 기획하고 검토하는 동안, 여성보호 자문단의 요구와 숫자와 역할이 체계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과, 이 전문가들이 알맞게 훈련되고 적절한 시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며, 관련 평화유지, 인도적, 인간의 권리와 정치적 안보 활동들에 대한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분쟁 시 성폭력에 대한 유엔 조치의 역할을 인정하고, 강화된 조정력과 정보공유, 분석 및 이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기획과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8.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s)이 모든 임무 요소 별 정책과, 기획, 시행에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어서 젠더 자문단(Gender Advisors)의 뚜렷한 역할을 인정하며, 인도주의적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유엔 평화유지 및 정치적 임무에 계속 젠더 자문단을 배치하고 모든 적절한 평화유지 및 군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젠더 교육을 보장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구한다.

9.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유엔 조사 위원회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유엔 단체들의 노력이 그런 범죄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성적, 젠더 관련 범죄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10. 모든 성폭력 행위에 관하여, 모든 무력분쟁 당사자들에게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고 완전히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하며, 이 당사자들이 특히 성폭력을 금지하는 명령체계를 통해 분명한 지시를 내릴 것과, 이 지시를 어겼을 경우 따르는 책임 및 행동강령, 군사적, 치안 분야 설명서 및 이와 상응하는 것에서 성폭력 금지를 포함시켜, 성폭력을 막겠다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시행할 것과, 폭력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 때 맞춰 조사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고 시행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더욱이, 모든 무력분쟁 관련 당사자들에게 그런 약속의 기본 틀 안에서 그들이 이행하는 것을 감시하는 유엔 위원들과 함께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는 고위 대표를 적절하게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11.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무력분쟁 당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여성단체와 공식, 비공식 지역사회 대표들을 포함하여, 여성과 시민사회가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12. 중재노력과 휴전, 평화 협정 시 필요할 때마다 언제나, 무력분쟁 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사무총장과 회원국, 지역 단체들 및 적절한 곳에, 전쟁의 방법이나 전술, 또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중재자와 사절들이 여성과, 여성단체 등의 시민사회와, 성폭력 생존자들을 포함하여 성폭력 문제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러한 관심사들이 안보협정의 및 전환기의 사법 매커니즘과 그와 관련된 조치에서 구체적인 평화협정 조항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휴전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정의하고, 휴전 감시 조항을 마련할 때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분쟁 해결 과정의 사면조항에서 성폭력 범죄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13. 적절한 지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또한 결의문 1960호(2010)와 일치하여, 기존의 제재 위원회들이 분쟁 시 성폭력을 저지르고 지시한 사람들에게 선별 제재조치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며, 무력 분쟁 상황에서 선별 제재조치를 적용하거나 갱신할 때, 적절한 곳에, 강간행위나 다른 형태의 심각한 성폭력에 속하는 지정 기준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다.

14. 성폭력을 예방하는 문제에서 유엔 평화유지 대표단의 역할을 인정하며, 이점에 있어서 군대와 경찰을 파견한 나라 대표단들이 성폭력과 젠더 관련 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배치하고 연수시킬 것을 요구하며, 거기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도 확실하게 포함한다. 더욱이 군과 경찰을 파견한 나라들이 평화활동에 모집되고 배치된 여성들의 수를 늘리도록 권장한다.

15. 사무총장에게 유엔요원들의 성적 착취 및 학대에 관해 무관용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노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며, 관련 회원국

들이 그런 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기소를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16. 사무총장과 관련 유엔 단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다루는데 있어서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정부를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한다.

(a) 특히 군대 주둔지와 아주 근접한 곳이나 귀환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군대주둔지 내의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보호방법을 확립함으로써, 그리고 과거 전투원이나 무장단체와 연루되었던 여성과 아동들에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재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비축소, 동원해제, 재통합하는 과정.

(b) 성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안보 분야에서 배제하기 위해 안보분야와 효과적인 심사과정에 더 많은 여성들을 포함시키도록 권장하면서, 안보요원을 적절히 교육시키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보분야 개혁 과정 및 방식.

(c) 성폭력을 다루는 합법적 정책 개혁을 모두 포함하는 사법 부문 개혁방안과, 사법 및 안보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성적, 젠더 관련 폭력 교육 및 이 부분에 전문적인 단계에서 더 많은 여성들을 포함하는 문제와, 무력분쟁이나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 생존자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증인들의 분명한 요구와 보호를 고려한 사법절차.

17. 아동들뿐만 아니라 무장단체와 무장군대로 강제로 납치당한 여성들이 무력분쟁이나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에 특히 취약함을 인정하고, 무력분쟁 당사자들이 관계된 사람들을 즉시 확인하고 그 계급을 박탈할 것을 요구한다.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보다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무력분쟁이나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민간과 군의 사법제도 능력과 법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의문 1888호(2009)에 따라서 타당하게 설치된 유엔 전문가팀의 전문지식을 해당 회원국들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19.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때맞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성과 생식에 대한 건강 및, 심리사회적, 법적, 생계적 지원과 다른 여러 분야의 도움을 포함하여 차별 없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엔 단체들과 기부자들에게 촉구하고,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위에 언급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자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국가 기관과 지역 시민 사회 네트워크에 지원을 요청하며, 로마 규정과 그것을 시행하는 협력단체들이 만든 피해자 신탁기금(Trust Fund for Victims)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국내외 프로그램들을 해당 국가와 기부자들이 지원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성 관련 폭력 대응과 서비스 규정 조정을 위해 재원 할당을 늘리도록 관련 유엔 단체들에게 요구한다.

20. 무력분쟁이나 분쟁 후 상황에서의 성폭력과 여성들의 HIV 감염, HIV와 AIDS의 불균형적인 부담의 연관성을 양성 평등에 지속적인 장애와 문제점으로 주목하며, 무력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HIV와 AIDS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채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 의료제도와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유엔 단체와 회원국, 기부자들이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1. 무력분쟁이나 분쟁 후 상황에서 성폭력에 대해 지역공동체 차원의 보호를 높이고, 재판과 배상금에 접근할 때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 단체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단체들과 네트워크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22. 사무총장에게 여성·평화·안보 결의문 이행에 관해 위원회에 연례 보고서들을 계속 제출하고, 2014년 3월까지 다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3. 이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다.

3.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활동

주요활동	I. 동북아 여성평화 회의 관련 활동
2007	한국여성평화방문단 해외 방문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정신의 구현과 한반도 비핵화·평화 체제 형성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여성회의로서 '2008. 여성6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국여성평화방문단>을 조직하여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전문가, 국회의원에게 협조 요청.
2008 ~ 2012 일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6자 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를 발표하여 6자회담 당사국 정부에게 1325호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모색 • 주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2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공동 주관단체로 참가)
2011. 2.24	국제워크숍 :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개최 기간에 뉴욕시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를 주제로 네덜란드와 미국의 경험, 국제여성단체와 한국 여성단체의 제안을 공유하며 정부, 의회, 시민사회의 연대 모색 • 주최: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피스보트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PISA • 후원: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국회
비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에 참가하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주관단체 및 코디네이터로 활동함

주요활동		II.국회의원과 협력 / 질의서 발송 및 논평 발표
일시	2010. 10	신낙균 의원과 최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1325호 관련 면담
	2010. 11. 02	“한국정부의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이행’에 관련한 질의서” 발송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2010. 11. 4 회신), 통일부, 국방부에 발송.
	2011. 02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 요청 공문 발송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국회의원에게 발송
	2011. 06.2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환영 논평 발표
	2012. 11.27 ~ 12.0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의견서제출 : 여성가족부(2012.11.27), 외교통상부(2012.12.03), 국방부(2013.12.04), 통일부(2013.12.04)에 발송
주요활동		III.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하 1325호 국가행동계획)검토 및 연구
일시	2013. 8. 01	평화여성회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 소위 모임 : 2013년에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이 작성하여 이에 대해 검토함
	2013. 9.10 ~ 9.15	필리핀 방문조사 : 아시아에서 가장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 필리핀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여 필리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주요활동을 진행한 필리핀 1325호 관련 네트워크 (WE ACT 1325) 관계자, 평화과정자문관실 차관, 사회복지개발부 국장, 필리핀여성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 및 간담회 진행, 올랑가포르의 성매매 자활단체 NGO(Buklod) 방문 및 미군기지였던 수빅만 일대 탐방
	2013. 9.26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화통일분야 검토워크숍 : 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의 평화통일분야 내용 검토

주요활동		IV.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일시	2013. 2.19	1차 <1325호네트워크>역량강화 전략워크숍 개최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주제로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을 공유하고, 한국에 적절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 모색
	2013. 3.27	2차 <1325호네트워크>역량강화 전략워크숍 개최 :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초안 검토회의”를 주제로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검토
	2013. 05.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공개토론회 개최 :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림
비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을 받아 주관하였으며, <1325호네트워크>가 주최함.
주요활동		V. <1325호 네트워크> 구성 준비활동
일시	2012. 10.31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네트워크 참여 요청 건” 공문 발송 : 한국정부가 2013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소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1325호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자 여성·시민단체간의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요 단체에게 <1325호 네트워크>참여를 요청함.
주요활동		VI. 국제연대
일시	2012. 3.27 ~ 3.28	‘분쟁과 분쟁 이후 상황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일반 권고문을 위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 참가’ :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 현황과 한국 여성 단체의 제안 발표 * 유엔 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후원
	2012. 10.30	유엔 안보리 1325호 공개토론회(Open Debate)와 병행해서 열리는 워크숍 참가 :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현황과 한국여성단체의 활동 소개 * 무장갈등예방을 위한글로벌파트너십(GPPAC) 주최

일 시	2013. 1.22 ~1.23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E러 닝 훈련과정”에 대한 동료워크숍 (Peer-Review of UN Women E-Learning Training Course on Women, Peace and Security for Asia and the Pacific)” 참가	* 유엔 여성기구 (UN Women)에 서 주최
	2013. 08.05	GPPAC 동북아시아 지역 운영위원회 참가 : 1325호 내용 및 1325호 관련 한국여성단 체의 활동 소개 및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 성회 공동대표가 GPPAC 동북아 Gender Focal Point로 임명됨.	* 무장갈등 예방 을 위한 글로벌과 트너십(GPPAC) 동북아시아
주요활동		Ⅵ. 정부와의 협의	
일 시	2013. 1.25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 1차 검토회의 :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시민사회단체, 학 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 참석	

* 1325호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의미함.

4. <1325호 네트워크> 활동

- <1325호네트워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여성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1325호 이행을 모니터하며, 정부·의회·국제사회와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013년부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음

주요활동	I. <1325호네트워크> 조직활동
일시 2013. 1.1~ 6.10	지속적인 <1325호네트워크> 참가 요청 : 여러 여성·시민단체들에 지속적인 <1325호네트워크> 참가요청을 진행하여 45개의 참가단체로 확대 • 참가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전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여는추진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45개 단체 (2013.06.10 기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13년부터 <1325호네트워크> 사무국으로 활동함

주요활동		II. <1325호네트워크> 회의
일시	2013. 1.16~ 현재 (월1회)	<1325호네트워크> 회의 : <1325호네트워크> 활동,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 정부와 협의, 의회와 협력, 전략워크숍 등에 대해 논의하는 네트워크 내부 회의를 2013년 1월 발족한 후 9월까지 9차례 회의를 개최
주요활동		III. 의견서 발송 및 성명서 발표
일시	2013. 1.17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 발송 : 한국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점을 환영하며,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정부와 여성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발송
	2013. 5.13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1325호 네트워크> 제안서 발송 : 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하기 위한 그룹 구성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안서를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발송
	2013. 8.14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성명서 발표 : 2013년 8월 15일 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우려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성명서 발표
주요활동		IV.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일시	2013. 2.19	1차 <1325호네트워크>역량강화 전략워크숍 개최
	2013. 3.27	2차 <1325호네트워크>역량강화 전략워크숍 개최
	2013. 5.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공개토론회 개최
		* 평화를만드는 여성회의 1325호 관련 활동 IV의 내용과 동일

주요활동		V. 국회의와의 협력
일시	2013. 2.26	국회의원과 면담 :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인재근 의원, 남윤인순 의원과 면담
	2013. 4.10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이행과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남윤인순 의원실, 진성준 의원실, 이자스민 의원실과 공동 개최
주요활동		VI. 정부와의 협의
일시	2013. 3.28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 2차 간담회 :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을 검토하기 위한 2차 간담회 참석
	2013. 8.06~현재 (월1회)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 참가 : <1325호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실무자와 시민사회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8월 6일 첫 모임을 가진 후 월 1회로 현재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 구성 : 총 16명 시민사회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강윤희(여성평화외교포럼 1325부과 위원장),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권인숙(명지대 교수, 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신혜수(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김현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순향(국방대학 PKO센터, 교수), 백영옥(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8명 정부-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한국국제협력단의 과장(또는 담당관 및 팀장)급 인사 8명 * 밑줄표시: <1325호네트워크> 소속단체 관계자

저자 소개

정경란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이며,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협의체' 위원,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동북아 젠더 포컬 포인트로 활동하고 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코디네이터,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조지워싱턴대 객원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남한·북한·일본의 여성 대표들이 모여 역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를 통해 진정한 아시아 평화를 이룩하고자 개최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를 모체로 1997년 3월 28일 창립된 여성평화단체이다. 여성들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폭력과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전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 제언, 남북 여성교류, 갈등해결 교육,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홍보, 성인직접 관점에서 평화연구, 국제연대활동 등을 하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

지은이: 정경란

기획 : 평화로만드는여성회

펴낸날 : 2013년 11월 26일

펴낸곳 : (사단법인)평화를만드는여성회

출판등록 : 2002년 4월 15일 2013-000106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401호

전화 : (02) 929-4846~7

전송 : (02) 929-4843

홈페이지 : <http://www.peacewomen.or.kr>

출력 : (주)연대와 전진

값 13,000원

